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2004. 12

김 현 숙·원 중 학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의 하나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드는 데 주저할 사람은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향후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금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여성노동력의 활용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능력 있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에 관

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책적 제언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 현황에 대해 설명한 다음, 여성노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즉 어떤 요인에 의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결정되고 있는가를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할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보육비용 및 보육시설유형 등 자녀보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다룸으로써 자녀보육이 여성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분석대상화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노동공급함수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었으며,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제언의 도출이 가능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비용은 전일제든 시간제든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전일제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는 탁아모와 어린이집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여성은 탁아모를 어린이집보다 선호하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용만이 아니라 자녀를 보육하는 기관이 자녀의 보육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가정탁아모 제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는데, 가정탁아모 제도 역시 기혼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현재의 탁아모의 이용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이용한 비공식적 탁아의 형태로 그 비용도 천차만별이어서 가정탁아모 제도의 육성과 도입은 바람직하나 상당한 정도의 보조금 지급 없이 가정탁

아모 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현숙 박사와 원종학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원내 김우철 박사, 인천시립대학 이명헌 교수, 건국대학교 이철인 교수,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원고를 꼼꼼히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집필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이은정 연구원과 자료와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신수미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에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특히 자녀보육이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서, 육아 및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영미권 국가들은 EITC를 비롯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 보육료 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현황분석 및 외국의 사례연구의 결과물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혼

재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자녀의 보육비용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현황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보육비용 지출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보육비용을 설명변수로 하는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은 자녀의 보육 및 교육비용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내생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함수접근법(control function approach)을 사용하였으며,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과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다항선택모형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보육비용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어린 자녀의 존재 그 자체가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보육비용 부담도 기혼여성의 취업과 노동공급시간 증대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6세 이상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혼여성의 취업형태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비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보육비용에 대해 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어 전일제든 시간제든 노동시장 참여에 보육비용의 부담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전일제의 경우 탄력성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력성의 수치는 노동시장 참여나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 수치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비용 부담이 기혼여성들이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로시간의 선택보다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탁아모와 어린이집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여성은 탁아모를 어린이집보다 선호하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9세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취업여성은 어린이집과 탁아모를 타 보육 및 교육시설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은 장시간의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나 보육형태를 선호하며, 일하는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탁아모를 방과 후 보육형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에게는 장시간의 보육 및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매우 중요한 여건임을 확인하게 된다.

2. 정책시사점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도 계산하였다. 추정결과와 보육비 지원확대의 모의실험, 보육비 지원의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중·저소득층의 자녀 보육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나타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보육료 보조금 지급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의 보육료 보조금 지원정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보조금을 수령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의 연령이 5세가 넘은 후에도 3년 이상 취업을 계속한다면 여성의 평균임금으로 측정되는 협의의 사회적 편익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자녀 연령별 보육형태에 대한 추정결과로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은 우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 기혼여성을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공급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도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보육시설 유형에 대한 수요분석으로부터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보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탁아모 제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용만이 아니라 자녀를 보육하는 기관이 자녀의 보육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다섯째, 가정탁아모 제도는 기혼여성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탁아모를 고용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의 보육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탁아모의 이용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이용한 비공식

적 탁아의 형태로 그 비용도 천차만별이며 일반적인 보육시설에 비해 평균적인 비용은 매우 낮다. 따라서 가정탁아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가정탁아모의 시장가격이 현행의 일반적인 보육시설과 비슷하거나 높게 책정될 경우, 현재 비공식적 탁아모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탁아모를 통한 보육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보육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는 아무리 보육의 질이 높고 보육시간이 길다고 해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탁아모의 이용에 대한 시장가격이 높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현재 비공식적 탁아모 이용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탁아모 이용제도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가정탁아모 제도의 육성과 도입은 바람직하나 상당한 정도의 보조금의 지급 없이 가정탁아모 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시키기는 어려우며 정부가 가정탁아모에 대한 지원을 기혼여성 일반에게 시행할 경우, 현재의 저렴한 비공식 탁아모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의 수준보다 높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단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에게만 가정탁아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수행한다면 가정탁아모에 대한 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 차

I. 서 론	21
II.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	26
1.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26
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29
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33
4. 산업별 취업구조	35
5. 종사상 지위	38
6. 여성노동공급과 자녀보육	39
7. 소 결	42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44
1.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정책	44
가. 자녀보육 관련 소득공제	44
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45
다. 육아휴직제도	49
라.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	51
2. 다른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52
가. 조세지원제도	52
나. 재정지원제도	56
다. 육아휴가제도	61
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2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66
1. 노동공급 결정요인	66

가. 전통적인 설명	66
나. 여성의 노동공급 : 이론적 설명 및 실증 분석 방법	68
다. 자녀보육비용과 여성노동공급	72
2. 여성노동공급함수 모형	78
가. 모형 I :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과 통제함수접근법	78
나. 모형 II : 다항로짓모형(시간제-전일제)	89
3. 실증분석	92
가. 분석자료의 특성	92
나. 자녀보육비용 회귀식과 변수의 내생성	99
다. 표본선택모형에 따른 횡단면 실증분석(모형 I)	102
라. 전일제와 시간제의 다항로짓모형 실증분석(모형 II)	113
V. 자녀보육관련 정책제안	119
1. 여성노동공급의 보육비용 탄력성	119
2. 자녀보육비용 보조금의 효과 : 모의실험과 비용편익분석	122
3. 취업모의 자녀보육시설 유형에 대한 수요분석	127
VI. 결 론	134
<참고문헌>	139
<부 록> 주요국의 자녀보육 지원제도	148

표 목 차

<표 II-1> OECD 회원국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2002년)	26
<표 II-2> 주요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1990~2002)	27
<표 II-3>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34
<표 II-4> 보육대상 아동 존재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2000년)	41
<표 III-1> 가구원수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47
<표 III-2>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비율의 향후계획	47
<표 III-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예산(2003년, 2004년)	48
<표 III-4>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예산(2003년, 2004년)	49
<표 III-5>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지원사업	51
<표 III-6> 보육과 관련한 조세지원 정책	52
<표 III-7> 각국의 보육관련 재정지원제도	56
<표 III-8>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녀보육 지원제도 요약	65
<표 IV-1> 보육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Blau and Currie (2003))	74
<표 IV-2>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량(노동패널 1998~2002)	93
<표 IV-3>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자 비중(15세 이상 여성인구 대비)	95
<표 IV-4> 우리나라 여성의 주당근로시간	97
<표 IV-5>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임금	98

<표 IV-6>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식(OLS)	100
<표 IV-7>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식 회귀분석(프로빗)	103
<표 IV-8> 자녀연령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식 (통제함수접근법)	105
<표 IV-9> 노동공급함수에 대한 회귀식(2단계)	109
<표 IV-10> 자녀연령별 노동공급함수 회귀식 (도구변수법, 2SLS)	112
<표 IV-11> 시간제와 전일제 참여인원 및 비율과 주당 총노동시간	114
<표 IV-12> 기혼여성의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장참여 (다항로짓: 통제함수접근법)	115
<표 V-1>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보육비용 탄력성	119
<표 V-2> 기혼여성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탄력성	121
<표 V-3>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2001~2002년)	123
<표 V-4> 소득층별 노동시장참여율과 주당 근로시간 (2001~2002년)	124
<표 V-5> 자녀보육료 보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125
<표 V-6> 자녀연령별 유형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	127
<표 V-7> 보육시설과 탁아모 이용 결정식(bivariate probit) ...	128
<표 V-8> 2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유치원 기준)	130
<표 V-9> 3~5세 자녀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어린이집 기준)	130
<표 V-10> 6~9세 자녀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유치원 기준)	132
<부표 1> 소득한도액	164
<부표 2> 스웨덴의 출산육아현금급여금 지급 현황(2002년)	191

<부표 3> 스웨덴의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 지급 현황(2002년) ..	193
<부표 4> 스웨덴의 임신부현금급여금 지급 현황(2002년)	194
<부표 5> 스웨덴의 자녀수당	195
<부표 6> 스웨덴의 자녀간호수당(2003년)	197
<부표 7> 스웨덴의 어린이연금(2003년)	198
<부표 8> 노르웨이의 자녀급여금(2000년)	203
<부표 9> 노르웨이의 유아현금급여금(2000년)	205
<부표 10> 캐나다 자녀조세급여금	220

그림 목 차

[그림 II-1]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8
[그림 II-2]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0
[그림 II-3] 출산율의 추이	30
[그림 II-4] 주요 OCED 국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1
[그림 II-5] 여성의 연령 및 직업별 취업인구 비중(2003)	32
[그림 II-6]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인구 비중(2002)	32
[그림 II-7] 여성의 혼인상태 및 직업별 취업인구 비중(2002년)	33
[그림 II-8]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5
[그림 II-9] 산업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	36
[그림 II-10] 성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37
[그림 II-11] 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38
[그림 II-12] 임금근로자에서 일용·임시직의 비율	39
[그림 II-13] 여성이 본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40
[그림 II-14] 여성의 취업에 관한 견해	41
[그림 IV-1] 후방굴절형 노동공급함수	68
[그림 IV-2] 연령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노동패널 자료)	96
[그림 IV-3] 기혼여성의 연령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노동패널 자료)	96
[그림 IV-4] 기혼여성의 연령별 시간당 임금의 분포 (노동패널 자료)	98
[그림 IV-5] 시간당 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107
[그림 IV-6] 시간당 보육비 지출과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	108
[부도 1] 미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48
[부도 2] 미국 여성의 자녀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49

[부도 3] 미국 성별 시간제근로 비율이 추이	150
[부도 4] 일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62
[부도 5] 혼인상태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163
[부도 6] 영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169
[부도 7] 영국의 자녀 유무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추이	170
[부도 8] 영국의 자녀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추이	171
[부도 9] 영국의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위한 기존 (2003년 4월 이전)의 지원제도	175
[부도 10] 영국의 새 세액공제제도(2003년 4월 이후)하의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위한 지원	176
[부도 11] 영국의 새 세액공제제도(2003년 4월 이후)하의 자녀가 없는 부부를 위한 지원제도	177
[부도 12] 독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82
[부도 13] 독일의 자녀수당 금액 추이(자녀 1명 및 2명)	185
[부도 14] 스웨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87
[부도 15] 스웨덴의 자녀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2002년)	188
[부도 16] 스웨덴의 출산육아현금급여금 수령일수의 추이	190
[부도 17] 스웨덴의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 수령일수의 추이	193
[부도 18] 노르웨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1
[부도 19] 캐나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16
[부도 20] 캐나다의 자녀연령별 여성의 취업률 추이	217
[부도 21] 2002년 7월 ~ 2003년 6월,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221
[부도 22] 1995~1996년과 2003~2004년 사이 동안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연방정부의 자녀급여금 최고수준의 추이	222

I. 서 론

여성의 경제활동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시작된 1963년부터 살펴 보면, 1963년에 283만 5천 명이었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3년에는 939만 7천명으로 약 3.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들 경제활동인구를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63년 37%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에는 48.9%로 40여 년 동안 약 12%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은 인원수로 보았을 때 593만 5천 명에서 1,351만 9천명으로 약 2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참가율로는 78.4%에서 74.6%로 3.8%포인트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1963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공급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여성의 진학률의 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능력 및 의욕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여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성노동공급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개략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여성노동공급이 지니는 특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남성의 노동공급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연구들은 결혼, 출산, 자녀보육,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유지 등과 같은 여

성의 가족 내에서의 재생산(reproduction) 기능과 여성노동으로 인한 소득은 가계의 2차적인 수입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남성노동공급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의 노동공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자녀보육을 지적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시기에 있는 자녀가 있는가? 자신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돌보아 줄 사람은 있는가? 만약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을 시장에서 찾는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이 일을 할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이용 가능한가? 그럴 경우 보육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등과 같은 자녀보육에 관한 내용이,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공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녀보육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부담을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녀보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주로 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자녀보육이 어느 정도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녀 보육비용 및 보육시설 이용 유무, 탁아모 이용 유무 등 자녀보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 정비됨에 따라 자녀보육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금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을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을 제고의 경우 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은 사회에 여러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안이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여성 인력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여성인력의 활용은 노동력 부족문제를 위한 유력한 해결방안에 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능력 있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한 나라의 경제를 위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물론 다른 OECD 국가들과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본문에서도 상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의 단순한 비교로는 제시할 수 없다. 여성의 적정수준 경제활동참가율은 한 나라의 요소생산성, 남성과 여성간의 노동요소의 대체성,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의 재정적

인 부담, 출산을 통한 다음 세대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중요성, 자녀보육의 양과 질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등 보다 거시적인 문제들과 맞물려서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상승해야 적절한지를 평가할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 보고서의 미시적 분석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 제시하듯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결혼과 출산적령기의 여성들이 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은 인적자본의 질이 높은 고학력 여성과 왕성한 참여가 가능한 젊은 연령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총량적인 생산함수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또한, 그 동안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보육비용 및 보육시설 유형 등 자녀보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다룸으로써 자녀보육이 여성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세·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시계열을 통해 살펴보고, 학력별, 산업별, 직종별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및 동향을 살

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보육에 관한 조세·재정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적 모델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보고서에서 분석할 두 개의 모형 및 분석자료인 노동패널을 설명한 후,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V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여성노동공급의 탄력성과 자녀보육비 관련 보조금의 지원정책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설명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의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들인 취업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보육시설 유형에 관한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정부의 보육시설공급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잣대로 이용한다. VI장은 전체의 요약과 정책 제언,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II.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

1.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덴마크나 캐나다의 73.6%, 60.7%에 비해서는 낮으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으며, OECD 회원국들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평균인 49.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OECD 회원국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2002년)

(단위: 천명, %)

국가명	15세 이상 총여성인구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한국	19,042	9,466	49.7
호주	7,969	4,389	55.1
오스트리아	3,528	1,766	50.1
벨기에	4,385	1,895	43.2
캐나다	12,685	7,700	60.7
덴마크	1,814	1,334	73.6
독일	36,192	17,704	48.9
프랑스	24,943	11,930	47.8
헝가리	4,062	1,859	45.8
일본	56,330	27,320	48.5
룩셈부르크	186	79	42.3
멕시코	36,133	13,953	38.6
뉴질랜드	1,578	900	57.0
폴란드	16,259	7,907	48.6
포르투갈	4,554	2,461	54.0
영국	29,925	13,396	44.8
미국	112,984	67,363	59.6

자료: ILO, LABORSTA Labour Statistics Database.

II.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 27

<표 II-2> 주요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1990~2002)

(단위: %)

국가명	1990	1998	1999	2000	2001	2002
호주	61.5	63.9	63.6	65.5	65.8	66.1
벨기에	46.1	53.8	56.0	56.6	54.5	55.4
캐나다	68.3	69.1	69.8	70.5	70.8	71.9
덴마크	77.6	75.1	76.1	75.9	75.0	75.9
프랑스	57.2	60.8	61.4	61.7	61.8	61.7
독일	55.5	62.5	63.0	63.3	64.0	64.4
이탈리아	44.0	43.5	45.5	46.3	47.3	47.9
일본	57.1	59.8	59.5	59.6	60.1	59.7
한국	49.9	50.3	50.8	51.8	52.7	53.4
멕시코	35.7	41.6	40.9	41.2	40.4	41.0
노르웨이	70.7	76.1	76.1	76.5	76.4	76.7
스페인	41.8	49.9	50.9	52.9	51.6	53.7
스웨덴	82.5	75.5	76.0	76.4	77.1	77.1
영국	67.3	67.9	68.4	68.9	69.0	69.3
미국	67.8	70.7	70.7	70.7	70.4	70.1
EU 평균	54.6	58.5	59.5	60.1	60.3	61.0
OECD 평균	56.3	58.9	59.3	59.4	59.4	59.6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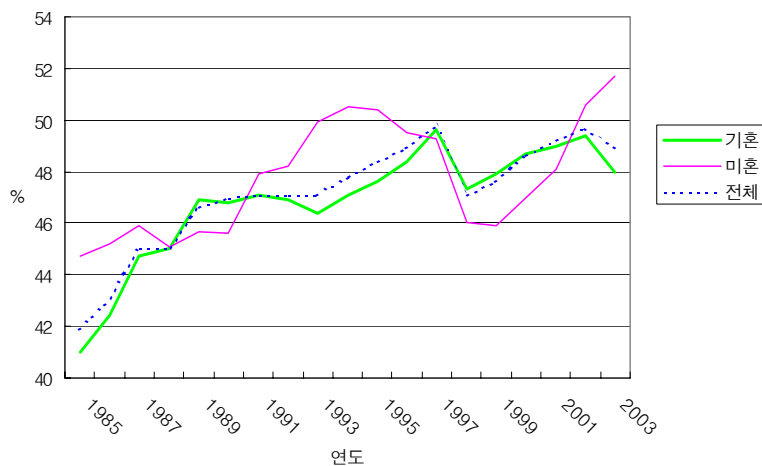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 많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15~64세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표 II-2>),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탈리아, 멕시코와 더불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표 II-1>과 <표 II-2>로부터 우리나라의 여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65세 이상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연금이 지급되므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과거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보면([그림 II-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80년대 후반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경기호황기에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기혼여성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시기인 1998~1999년에는 기혼여성보다 급격하게 하락했다 1999년 이후 다시 급상승함으로써 미혼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경기의 변화에 민감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첫째 진학을 상승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여성이 증가하였다는 점, 둘째 학력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다는 점,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여성노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II-1] 여성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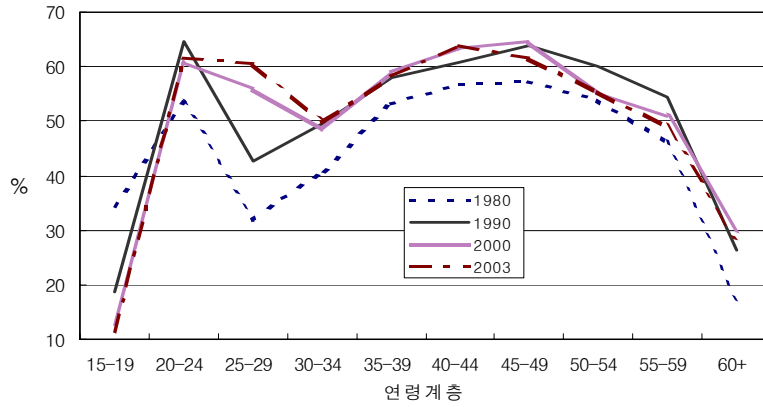
2.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II-2]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20대 중반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줄었다가 30대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형 노동공급곡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00년 들어서면서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인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그림 II-3]), 1)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이 줄어든 점, 2) 1980년대까지 경제적 호황이 이어지면서 1990년대 들어 여성노동력 활용의 요구가 증대된 점, 3)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확보, 보육기관 및 시설의 확충, 모성보호 관련법과 같은 자녀양육을 위한 법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 4) 노동공급자인 여성 자신이 생애소득을 극대화하고자 노동시장 재진입시 소득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력 단절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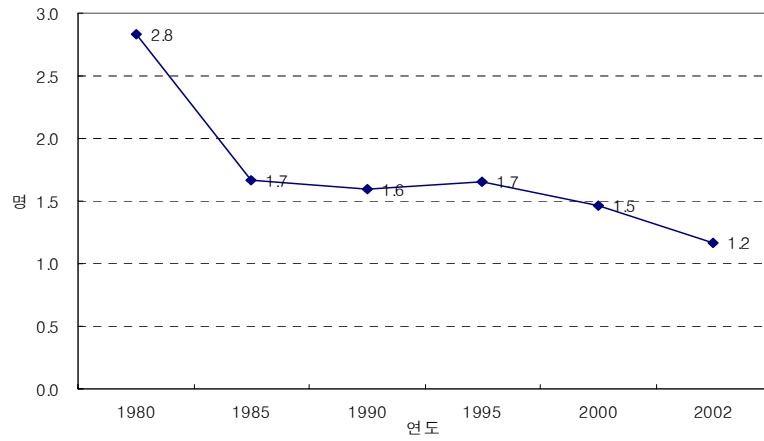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패턴인 M자형은 비교적 경력 단절 현상이 덜한 선진국의 역U자형과 비교된다. [그림 II-4]는 주요 OECD 국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만 여성노동공급곡선이 M자형 곡선을 띠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의 큰 감소 없이 40대를 중심으로 조금씩이지만 점차적인 상승 후 하강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¹⁾.

[그림 II-2]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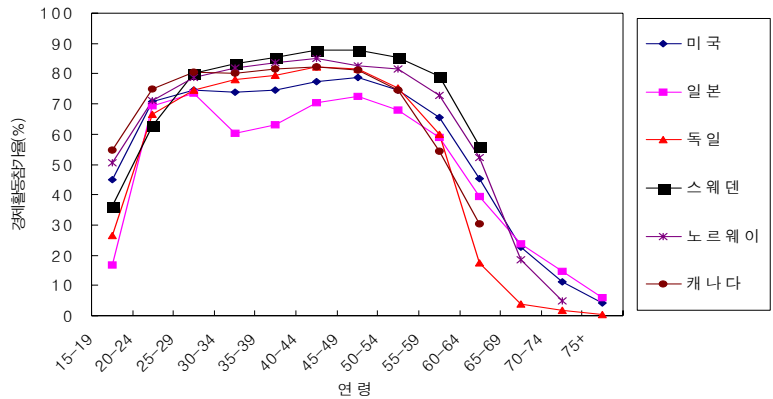
[그림 II-3] 출산율의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1) 각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및 출산, 보육지원정책에 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그림 II-4] 주요 OECD 국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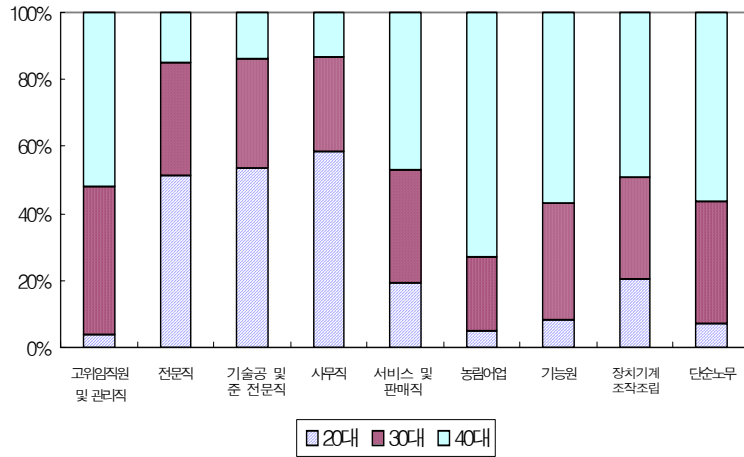


자료 : ILOL, LABORSTA Labour Statistics Database.

한편, 여성의 연령별 직업 비중을 보면([그림 II-5], [그림 II-6]) 20대 여성은 주로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 사무직 임금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반면, 30대와 40대 여성은 주로 서비스 및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원직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직종과 종사상 지위가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경력 단절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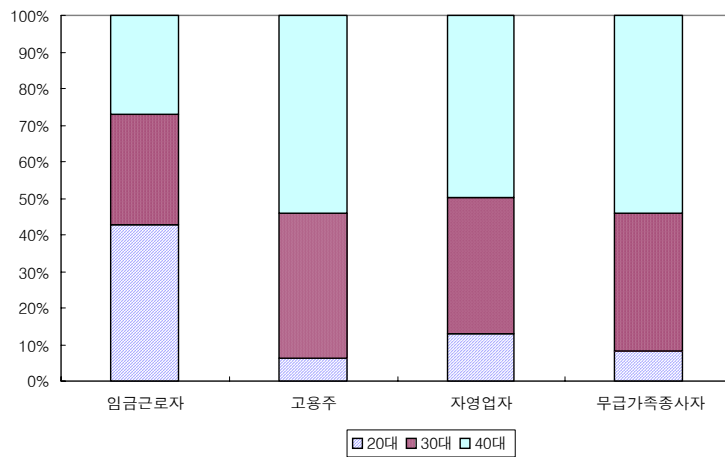
20대 여성과 30, 40대 여성은 혼인 유무에 따라서 대별될 수 있으므로 2002년 기준으로 혼인상태에 따라 직업별 취업인구 비중을 살펴본 것이 [그림 II-7]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은 미혼여성은 기혼여성보다 사무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전문직에 종사할 비중이 높은 반면,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서비스 및 판매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조립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5] 여성의 연령 및 직업별 취업인구 비중(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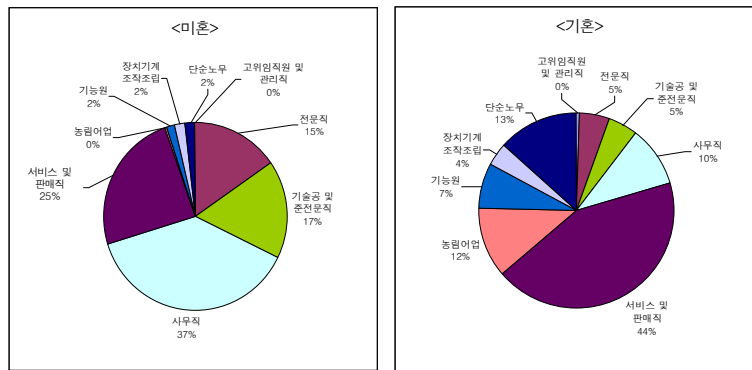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3.

[그림 II-6]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인구 비중(2002)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2.

[그림 II-7] 여성의 혼인상태 및 직업별 취업인구 비중(2002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2.

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앞 절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로 여성의 고학력화를 들었다. 이 절에서는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90년 이후의 학력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 <표 II-3>이다.

먼저 학력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2003년 현재 고졸이 가장 많으며, 대졸, 초등학교 졸, 중졸, 전문대졸의 순서이다. 1990년부터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졸 및 전문대졸의 증가가 두드러져 10여 년 동안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초등졸 및 중졸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고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증가가 두드러진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경우 외환위기로 인해 다른 모든 학력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경제활동 참가인원이 증가하였다는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3>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90	3000	1497	2372	231	640
1995	2457	1479	3321	439	1153
1996	2404	1501	3452	499	1280
1997	2431	1588	3539	605	1380
1998	2191	1412	3466	582	1507
1999	2199	1449	3529	648	1608
2000	2211	1471	3635	733	1751
2001	2154	1433	3782	822	1906
2002	2089	1418	3887	884	2071
2003	1894	1271	3882	950	2351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같은 시기 고등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한 여성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학력별 경제활동인구수만으로는 학력별 경제활동참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림 II-8]에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정도를 학력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문대졸이 가장 높으며, 대졸, 고졸, 중졸 이하의 순으로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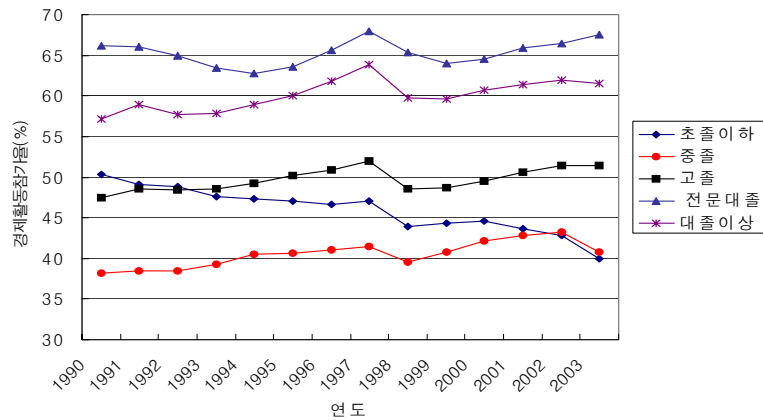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을 보면 먼저, 전문대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졸보다 높다는 점이다. 대졸 이상의 경우 배우자의 수입이 높을 것이라는 점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 2) 이는 대졸 이외의 여성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이른바 실망근로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가 크나, 대졸 이상에서는 경기침체시에 가계에 수입을 늘리고자 이전에는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된다는 부가근로자 효과(added worker effect)가 더욱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문대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졸 여성에 비해 1990년 이후 꾸준히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³⁾.

초등졸을 제외한 다른 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시기별로 유사한데 반해, 초등졸의 경우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초등졸 이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II-8]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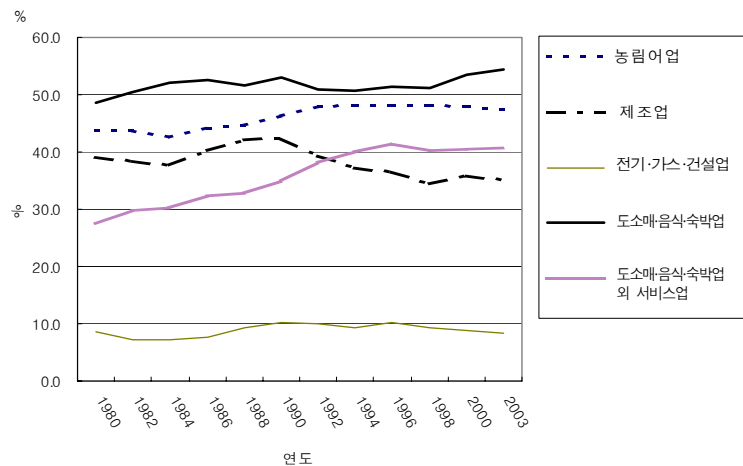
4. 산업별 취업구조

취업자 중 여성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산업별로 살펴 보면([그림 II-9]), 2003년 현재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취업자 중

3) 특히 대졸여성이 자녀의 보육을 위해 취업하지 않고 있다는 유력한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계속하여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외 서비스업, 광공업, 전기·가스·건설업 순으로 3차 산업 및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2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동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199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거나 도소매·음식·숙박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외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추세는 약간 완화되었으나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9] 산업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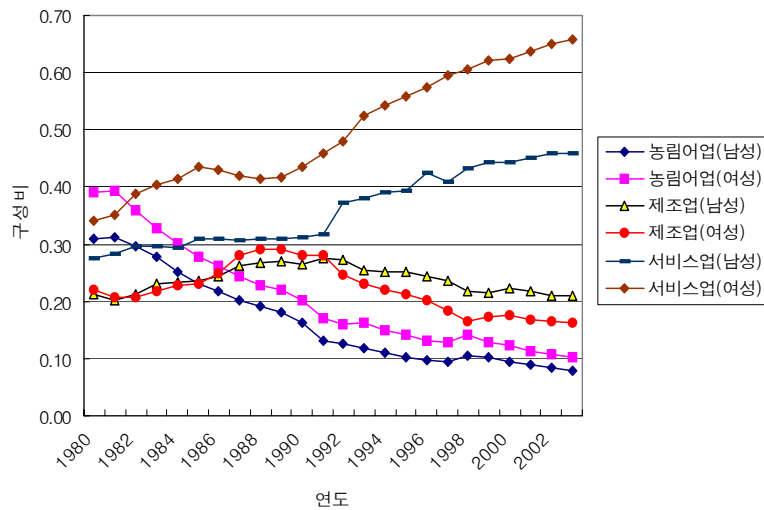


주: 도소매·음식·숙박업 외 서비스업은 운수·창고·통신·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을 포함.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상은 동일 산업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이 비율은 산업의 크기 변화에 따른 전체 취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그림 II-10]에서 각 산업별 종사자 수의 추이를 남

녀별로 살펴보았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녀 모두 농업·농림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져, 여성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에는 남성보다 높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남성보다 5%포인트 정도 낮다. 한편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여성의 비율은 매년 커지고 있어, 노동시장에 신규 진출한 여성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진출함과 동시에 제조업에 종사하던 여성들도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I-10] 성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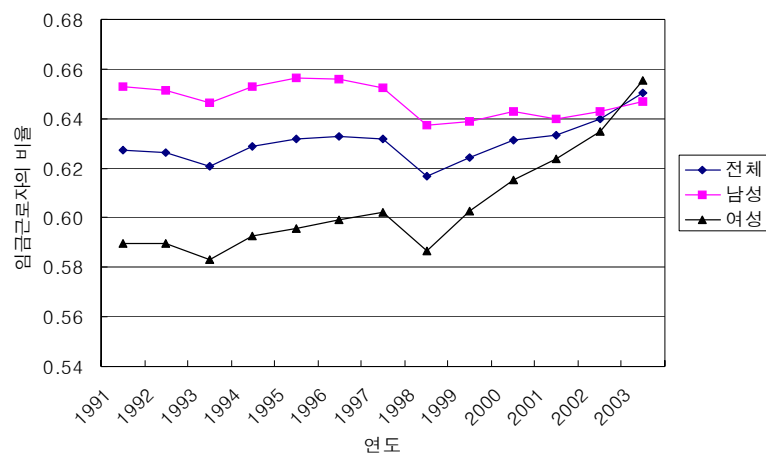


주: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4 KLI노동통계』.

5. 종사상 지위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비임금근로자가 35~38%, 임금근로자가 62~65%를 유지하고 있는 안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한편, 남녀별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II-11]), 남녀 모두 1993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감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997년 이전 수준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9년 이후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남성의 임금근로자 비중을 능가하고 있다.

[그림 II-11] 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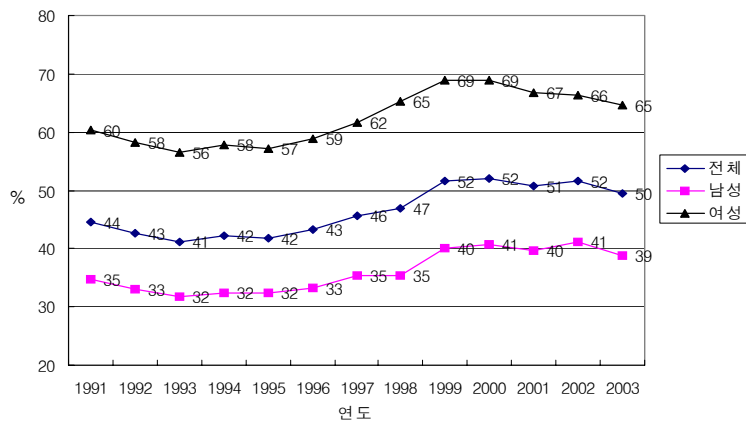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그림 II-12]) 90년대 초기에는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하락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그

II.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 39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65% 이상으로 남성의 2배 가까이 된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65% 이상이 임시, 일용직이라는 사실은 여성 경제적 지위가 매우 취약하며, 이는 앞서 설명한 결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 경력 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때 상용이 아닌 임시, 일용직으로 많이 복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II-12] 임금근로자에서 일용·임시직의 비율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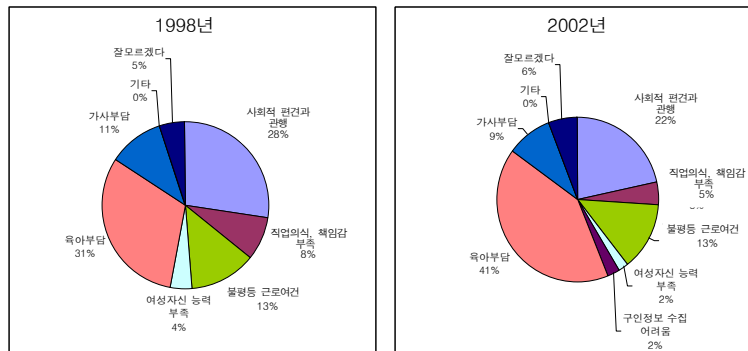
6. 여성노동공급과 자녀보육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 중 하나인 ‘여성이 본 여성취업의 장애요인’([그림 II-13])과 ‘여성의 취업에 관한 견해’([그림 II-14])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경력 단절현상의 주요인이 육아 부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육아 부담’(1998년 31%, 2002년 41%), ‘사회적 편견과 관행’(1998년 28%, 2002년 22%)

순으로 육아부담은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10%나 증가하였다.

여성의 취업에 관한 견해를 보면 1998년과 2002년 모두 ‘가정일 관계없이 계속 취업’이 각각 30.4%와 40.2%로 가장 많음과 동시에 동 기간 사이에 거의 10% 상당의 증가를 보여 여성의 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 전과 자녀성장 후 취업’도 각 동 연도에 27.6%, 26.2%로서 간접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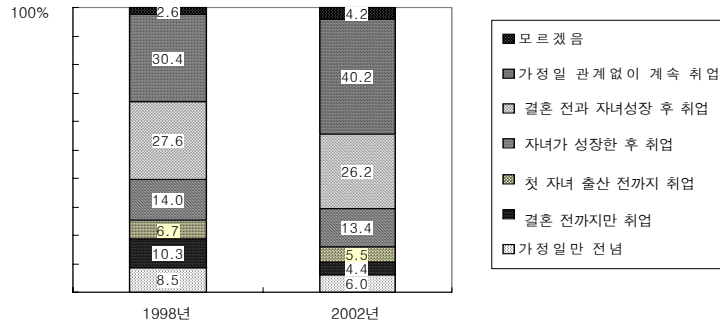
[그림 II-13] 여성이 본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

자녀보육이 여성취업의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기혼여성의 보육대상 자녀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상태의 차이에 의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보육대상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나타낸 <표 II-4>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기혼여성은 보육대상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률로 살펴보아도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육대상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없는 기혼여성보다 약간씩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14] 여성의 취업에 관한 견해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2002

특히 1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 유무는 다른 연령층의 자녀와 비교할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1세 미만의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17.1%, 1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43.1%)의 격차는 26.0%로서 3~5세 자녀의 존재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3~5세 자녀가 있을 경우 33.5%, 3~5세 자녀가 없을 경우 43.3%)의 격차인 9.8%보다 훨씬 크다. 이는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어린 자녀의 존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II-4> 보육대상 아동 존재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2000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5세 이하 있음	3.7	29.7
5세 이하 없음	3	45.5
3~5세 있음	3.9	33.5
3~5세 없음	3	43.3
2세 이하 있음	3.5	23.1
2세 이하 없음	3.1	44.7
1~5세 있음	3.8	31
1~5세 없음	3	44.6
1세 미만 있음	3.5	17.1
1세 미만 없음	3.1	43.1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2003.

7. 소 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 평균과 유사하나 15~64세의 여성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0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59.6%보다 낮은 53.4%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시계열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혼여성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로 인해 그 연령별 특징을 살펴볼 때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에 걸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특징은 결혼으로 인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부여, 출산과 자녀 양육의 보육부담 등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가사에 대한 부담에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취업하겠다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M자형 곡선을 탈피해 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40% 정도의 여성이 육아부담을 취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어 가사노동보다는 자녀의 보육에 대한 책임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는 2000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17.1%로 1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3.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보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얼마나 큰 장애요인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학력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살펴본 결과, 전문대와 대졸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초졸이나 중졸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졸 여성이 대졸여성보다 5%포인트 이상 경

II. 우리나라의 여성노동공급 43

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졸여성의 경우, 배우자인 남편 역시 대졸 이상일 확률이 높아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2차 수입원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보육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도 대졸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비중이 높고, 남성과 비교할 경우에도 서비스업 종사자가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율이 남성의 2배가 넘는 정도로 높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매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II장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전형적인 M자형 노동공급곡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공급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보육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음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 각국의 보육에 관한 지원정책을 살펴본 다음, 선진 각국의 보육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⁴⁾.

1.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정책

가. 자녀보육 관련 소득공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상에서 자녀보육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은 ‘자녀양육비공제’(소득세법 51조 1항의 4)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소득세법 52조 1항의 4호)가 있다.

자녀양육비공제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으로서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 불문)와 배우자 없는 남성 근로자들이 산업 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공

4) 각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및 보다 구체적인 제도에 관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45

제한도금액은 자녀양육비공제가 도입된 1996년부터 줄곧 변함이 없었다.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도 가능할 경우 두 가지 공제 중 유리한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 중 영유아, 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동을 위해 지출한 일정한 교육비에 대하여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공제대상 교육비에는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및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 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

동 공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 도입 당시는 유치원아만을 대상으로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1998년에는 영유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가, 1999년에는 취학전 아동이 추가되었다. 1인당 공제한도액도 1999년 8월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부터는 15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정부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저소득층 부모에 대하여 자녀보육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① 만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②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③ 장애아 보육료 전액 지원, ④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2005년부터 시행 예정)을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층 보

육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만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4년 현재 지원대상을 3개 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1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부자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이고, 2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 수준 이하이며, 3층은 최저생계비의 150% 소득 수준 이하로 각 층은 가구원수에 따라 <표 III-1>과 같이 자세히 나뉠 수 있다. 그러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단가를 0~1세아 25만 7천원, 만 2세아 21만 2천원, 만 3~4세아 13만 1천원으로 하여 지원비율을 지원대상 1층에 대하여 지원단가의 100%, 2층은 지원단가의 60%, 3층은 지원단가의 40%로 하고 있다. 이 지원비율은 향후 <표 III-2>와 같이 수정될 계획이다. 2004년 현재 지원인원은 18만 2천명이다.

둘째,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2004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을 포함하는 1층과 기타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저소득층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원 3인까지는 소득 208만원 이하, 가구원 4인은 소득 223만원 이하, 가구원 5인은 소득 238만원 이하, 가구원 6인은 소득 253만원 이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단가를 지원대상 1층은 13만 1천원, 기타 저소득층은 시설종류에 따라 13만 1천원(농어촌 보육시설), 9만 4천원(도시지역 정부지원시설), 11만원(도시지역 민간보육시설)으로 하여 각 지원단가에 대한 22%의 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지원비율은 향후 2005년에 30%, 2006년에 50%, 2007년에 70%, 2008년에 70%로 변경 적용할 계획이다. 2004년 현재 지원인원은 8만 7천명이다.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47

<표 III-1> 가구원수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이상	
소득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층	101만원 이하	127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3만원 이하	7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3층	126만원 이하	159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03만원 이하	7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자료: 여성부.

<표 III-2>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비율의 향후 계획

소득계층	지원비율(0~4세)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층 (법정저소득층)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계층)	60	80	100	100	100
3층 (평균소득의 50%)	40	60	80	80	80
4층 (평균소득의 50~70%)	-	30	40	50	60
5층 (평균소득의 70~100%)	-	-	20	20	30

자료: 여성부.

셋째, 장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취학전 장애아⁵⁾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보육료 전액이다.

넷째,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2005년부터 시행 예정)은 도시근로가구평균소득⁶⁾ 이하 가구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두 자녀 이상이 이용할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지원액은 만 0~1세아에 대하여 6만원, 만 2세아 5만원, 만 3세 이상아 3만원이다.

5) 장애아 복지카드, 2세 이하 장애진단서와 같은 증빙자료 구비 필요.

6) 2004년 현재 도시근로가구평균소득은 4인가구 기준 318만원임.

이상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003년과 2004년에 충당된 예산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예산(2003년, 2004년)

구 분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총 액	210,164	117,143	273,675	152,444	35,301백만원 증 (30.1%) *보육료단가 5% 인상
-영유아 보육료	118,897	61,191	182,408	93,693	32,502백만원 증 (53.1%) 1층 43,800명 100% 2층 58,400 60% 3층 80,208 40%
-만5세아 보육	86,982	50,903	86,982	53,449	단가 5% 인상
-장애아 무상보육	4,285	5,049	4,285	5,302	단가 5% 인상

자료: 여성부.

현재 아동별 지원제도 외에도 보육시설 지원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시설별 지원은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국공립 법인시설 자체가 직장을 가진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자녀들을 돌본다는 데 1차적인 설립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다는 것이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주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의 구성이 초기 기준과는 다르게 취업을 하지 않은 일반 기혼여성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부는 향후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가구의 소득에 따른 자녀의 보육료 지원제도를 확대해갈 방침이다. 보육시설별 지원액의 2003년과 2004년 예산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예산(2003년, 2004년)

구 분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7,899 (7,170)	181,489 (12,249)	57,706	218,694	24,956백만원 증가 (12.9%↑)
보육시설 기능보강	225	6,587	509	20,821	14,234백만원 증가 (216.1%↑)
보육인프라 구축	12	1,505	17	1,470	2.3% ↓
교재교구비	7,878 (8,908)	3,445 (3,542)	18,908	8,355	민간 8,098→18,410 개소, 영아 450개소, 장애아 48개소 추가 지원(연 100만원)

주: 괄호 안은 2003년 추가경정예산.
자료: 여성부.

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하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1988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도입당시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여성노동자’로 한정하였고 휴가기간 동안 급여가 없는 불완전한 형태였다.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시 ‘여성근로자’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남성근로자’로 확대하였으나, 육아휴직이 여성고용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남녀 모두의 양육책임과 권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못하였다. 육아휴직의 대상자를 ‘남녀근로자’로 명시한 것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였으며, 동 개정으로 휴직기간중의 해고금지와 원직복귀 등이 명시되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1995년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월 8만원(대기업)~12만원(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은 20만원이고, 2001년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을 통해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월 20만원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2004년 3월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현재, 육아휴직 신청자격 대상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당해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반복 육아휴직 신청시(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는 육아휴직 적용이 제외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인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실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서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이용, 추계한 연간 출산 여성 임금근로자수(2002년 6만 2,814명, 2003년 6만 2,771명)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근거로 여성의 산전후 휴가 사용률을 산정하면 2002년에는 36.2%, 2003년은 51.2%였다. 2002년 기준으로 25~3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48.3%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용률 수준은 상용직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이 산전후 휴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률은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2002년 2만 2,711명, 2003년 3만 2,133명)를 기준으로 할 때 2002년에 30.0%, 2003년에 21.2%였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이용 정도는 산전후 휴가 사용정도보다는 덜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

현재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경남 산청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표 III-5>).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주로 셋째 아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하는 기혼여성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보다는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장려금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셋째 자녀로 2001년 3월 이후 출생하였을 경우, 서울시가 인정하는 국공립·민간·직장·가정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실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는 보육시설에 셋째 아이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며, 보육료는 해당 시설에서 서울시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도 2004년부터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셋째 아이부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전시도 2004년 7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셋째 아이부터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한다. 경남 산청군은 2004년부터 둘째 이후 아이에게 매달 12만~18만원의 보육료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지자체의 보육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는 등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상태이다.

<표 III-5>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서울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만 3세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 -시 지정 보육시설에 맡긴 자녀의 보육료 지원	'04.3~'05.2(이후 확대 예정)
인천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셋째 아이로 만 5세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 정액	'04.1~
대전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만 3세 미만 셋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20만~25만 7천원	'04.7~
경남 산청군	둘째 아이 보육료 지원 및 신생아 출산 축하금	-둘째 이후 보육시설 다니는 아이에게 월 12만~18만원 -신생아 출생시 10만원 지급(연 250명 제한)	'04.1~(보육비) '00.7~(출산축하금)

자료: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2. 다른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가. 조세지원제도

보육 및 여성 노동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를 크게 나누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으며, 스웨덴, 독일, 일본은 소득공제가 조세지원의 중심이다. 캐나다는 소득공제와 더불어 세액공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III-6> 보육과 관련한 조세지원 정책

	소득공제	세액공제
미국	○	◎
영국	-	◎
캐나다	○	○
노르웨이	-	-
스웨덴	○	-
독일	◎	○
일본	○	-

주: ◎는 다른 나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행되거나 강도가 클 경우를 표현한 것임.

자녀보육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세액공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자녀 및 부양가족 부양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 등 다양한 형태로 세액공제를 실

시하고 있다.

미국 세액공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대상이 자녀보육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대표적 세액공제제도인 CDCTC의 자격요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DCTC의 수급 자격 요건은 우선 근로소득이 있으며, 13세 미만의 부양가족,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나 기타 부양가족(나이 불문)을 위하여 가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 즉, 동 제도의 대상 가구가 되려면 적어도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은 EITC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로서 EITC 역시 근로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EITC의 경우 제도의 원래 목적이 직접적인 자녀보육 지원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소득 가구, 특히 근로소득이 너무 적어 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CDCTC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자녀보육비용 지원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가구를 위한, 환급 가능하지 않은 세액공제 제도인 CTC는 반드시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세액공제제도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가 있다. 양자 모두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로서 2003년 4월에 도입되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둔 가구를 지원하는 기존의 세제 및 급여(benefit)제도의 몇 가지를 통합한 것으로서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를 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연령이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이민자가 아니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양할 자녀가 있

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은 등록된 자녀 보육자 또는 승인된 보육자로부터의 보육만 포함되고 혈육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가정 내의 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혈육관계에 있는 자가 자녀보육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영국의 경우 비공식적인 탁아모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비공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탁아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지원여부에 대해 다소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는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WTC의 전신격인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가 부양하는 자녀가 있으면서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세액공제는 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회귀분석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논문인 Blundell et al(1999)은 영국의 근로세액공제가 노동공급을 일정 정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 외에도 캐나다와 독일에서도 부분적으로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8년 '환급가능 자녀세액공제'(Refundable Child Tax Credit)를 도입하였는데, 가구소득별로 과세대상을 구분지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최대금액, 중산층 가구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감소된 금액, 고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액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급여금(Child Benefit)을 세액공제 형태로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55

반면,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자녀보육과 관련한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부양자녀의 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는 자녀소득공제와 보육비 및 양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육비/양육비 공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국의 소득공제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의 자녀보육과 관련한 소득공제로는 자녀소득공제와 보육비 소득공제가 있는데, 보육비 소득공제는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자녀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소득세 자녀소득공제금액은 1인당 3,534유로(약 506만원)⁷⁾이고 보육비 소득공제 금액은 1,551유로(약 222만원)이다. 단, 자녀급여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자녀급여금(독일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인적공제대상인 소득이 모두 면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자녀소득공제와 보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만 이상 두 가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직업 기술 수련중이면 부모는 교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더하여 양육비용 소득공제가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연간 1,820NOK(약 32만원)⁸⁾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양육비용 소득공제는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최대 2만 5천NOK(약 435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3만NOK(약 522만원)의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녀보육에 관해 특별한 조세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 1인에 대해 연 38만엔(약 380만원)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7) 2004년 현재 1유로는 약 1,434원 정도임.

8) NOK는 노르웨이의 화폐단위이며, 2004년 현재 1NOK는 174원 정도이다.

나. 재정지원제도

조세지원에 더하여 각국에서는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급여금(benefit)이나 보조금(subsidy), 또는 수당을 통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자녀보육에 관한 재정지원을 크게 나누면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자녀 수당과 자녀의 보육이나 양육에 필요한 수당이나 급여금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육 및 교육비, 의료비, 육아휴가에 따른 수당 및 급여금으로 나눌 수 있다. 각국의 재정지원 제도를 정리하면 <표 III-7>과 같다.

<표 III-7> 각국의 보육관련 재정지원제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동/자녀수당	-	○	○	○	◎	◎	○
보육/교육수당	○	-	-	○	○	○	-
유급 육아/보육휴가	-	○	○	○	◎	◎	○
의료/간호수당	-	-	-	○	◎	◎	○
후견인수당	-	○	-	-	-	-	-
생계수당	-	-	-	-	○	-	-
유아수당	-	-	-	-	-	○	-

주: ◎는 다른 나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행되거나 강도가 클 경우를 표현한 것임.

<표 III-7>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조세지원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자녀보육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각국의 재정지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57

먼저 스웨덴의 보육관련 재정지원제도를 보면, ‘출산육아현금급여’(Parental Cash Benefit for the Birth of a Child), ‘일시육아현금급여’(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을 비롯하여, ‘자녀수당’(Child Allowance), ‘자녀간호수당’(Care Allowance), ‘생계보조금’(Maintenance Support) 등이 있다.

‘출산육아현금급여’은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한 자녀 1인당 총 480일(2002년 전에 출생한 자녀는 450일)에 대하여 주어진다. 480일 중 첫 390일의 출산육아현금급여는 부모의 소득손실과 관련된 것이며 그 최저금액은 1일 120SEK(약 2만원)⁹⁾이다.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모두 1일 60SEK(약 1만원)가 지급된다.

‘일시육아현금급여’은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근로를 잠시 중단하고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육아현금급여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12세 미만이다. 동 급여금은 자녀 1인당 연간 60일 동안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하에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을 쉬고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다.

자녀수당(Child Allowance)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모든 부모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16세가 되는 해의 1/4분기까지 기초자녀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녀수당은 비과세이며 2004년 현재 자녀 1인당 월 950SEK이며, 세 번째 자녀에 대하여 월 254SEK, 네 번째 자녀에 대하여 월 760SEK, 다섯 번째 자녀와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월 950SEK이 대가족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된다.

자녀간호수당(Care Allowance)은 부모가 아프거나 기능적 장애

9) SEK는 Swedish Krona로 2004년 현재 1SEK는 우리나라의 156원 정도임.

를 가진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가 최상의 조건에서 자라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자녀가 16세 미만이고 질병, 학습장애, 기타 다른 기능장애로 인해 최소한 6개월 동안 특별한 보호와 주의를 요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하여 자녀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질병 또는 기능장애가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액은 질병 정도에 따라 전액지급률(full benefit rate)을 기준으로 100%, 75%, 50%, 25%가 지급되며 전액 자녀간호수당은 연간 기초금액의 2.5배로 2002년에는 월 7,896SEK였다. 자녀간호수당은 과세가 되며 연금(pension)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단, 추가비용은 비과세이다.

생계보조금은 1997년 2월 1일에 도입된 자녀양육을 위한 제도로서 함께 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부모를 지원하고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합리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보조금은 이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는 이혼을 하였어도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생계유지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혼한 부모 중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한 쪽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생계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합의나 법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위한 수준이 결정될 때는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전반적인 재정수단이 고려된다. 생계보조금의 최고액은 자녀 1인당 1,173SEK이다.

스웨덴과 같은 북구의 복지국가인 노르웨이도 자녀보육을 위한 많은 재정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제도로는 ‘자녀급여금’(Child Benefit), ‘유아현금급여금’, ‘출산및입양급여금’(Parental and Adoption Benefit), ‘육아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자녀급여금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59

를 부양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자녀가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녀가 18세가 되기 직전의 달까지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노르웨이에서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녀는 자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노르웨이의 자녀는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자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액은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월 829NOK(약 14만원)이며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월 912NOK(약 16만원)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혼부양자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 외에 또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자녀급여에 해당하는 '추가적 자녀급여'(additional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급여금은 월 657NOK(약 11만원)이다.

유아현금급여제도는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급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금은 자녀수에 따라 지급되며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주정부 보조금을 받는 보육원에 전일제 타아를 하지 않는다면 유아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만약 주당 33시간 미만 타아를 한다면 타아 시간만큼 축소된 금액을 받게 된다¹⁰⁾.

출산및입양급여금(Parental and Adoption Benefits)은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에 근거한 급여금제도로써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의 육아휴가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할 자녀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가 기간 동안 일을 쉬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육아휴가금액은, 만약 완전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출산및입양급여금 금액은 육아휴가를 받는 부모의 소득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출산휴가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부모 소득의 한도는 2000년의 경우 29만 4,540NOK(국민보험 기본금액의 6배)이다.

10) 구체적인 금액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출산및입양급여금 수혜 자격이 없는 여성은 일시금 형태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출산 또는 입양을 하는 모든 여성은 국민보험의 한 형태로 보조금 수혜를 받게 되며 보조금 금액은 3만 2,138NOK이다. 보조금 금액은 고정되어 있다.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쌍둥이 출산 또는 2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재정지원제도로는 자녀보육지원금인 ‘자녀보육및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이 있는데, CCDF를 통하여 자녀보육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이고 그 부모 중 한 명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재학중 또는 훈련중이거나 보호 서비스(protective service)가 필요한 상태여야 한다.

일본의 보육에 관한 재정지원제도는 주로 수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제도가 있다. 먼저 아동수당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녀가 9살이 될 때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둘째 아이까지는 월 5천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 이다. 아동부양수당은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지적장애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자녀급여금’(Child Benefit)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여부나 보조금 또는 수당을 위한 자산 조사와 관련이 없다.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자녀급여 금액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주당 16.50파운드, 그 다음 자녀 각각에 대하여 주당 11.05파운드이다.

‘후견인 수당’(Guardian’s Allowance)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를 돌보는 자, 즉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급여금이다. 부모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61

중 한 쪽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를 돌보는 자도 후견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견인은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부모의 행방을 알지 못하거나 자녀의 부모가 이혼했거나(일정한 조건이 추가됨) 자녀의 생존한 나머지 부모가 최소한 2년 이상 수감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 병원에 억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견인 수당도 자녀급여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여부나 보조금 또는 수당을 위한 자산 조사와 관계 없이 자격 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급여금(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자녀급여금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급된다. 자녀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의 나이는 자녀가 고용되지 않은 상태이면 21세까지이나 재학중이거나 직업기술 수련중일 경우는 27세까지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단, 자녀가 18세가 넘어 연간 6,902.44유로가 넘는 자녀 자신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급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 육아휴가제도

자녀보육과 관련한 조세재정정책과 더불어 여성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육아휴가제도가 있다. II장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노동공급은 M자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 번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경력에 단절이 발생하여 다시 취업을 할 때는 비정규직 중심의 취업을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출산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자녀의 육아와 직업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성노동활용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육아휴가제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육아휴가제도를 국가별로 개략하면 대체로 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기간이 길고, 휴가중 제공되는 유급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표 III-8>). 육아휴직에 관한 각국의 동향을 보면,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되고 있고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에게도 육아휴가를 허용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경력단절을 완화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에 복귀하게 할 수 있는 노동기술이나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에도 다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고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육아휴직제도와 여성의 취업률을 분석한 Ruhm(1998)의 연구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는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지면 노동공급의 질이 떨어지거나 기혼여성의 향후 직업경력에 손상을 입게 되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한 후 받게 되는 임금이 감소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저숙련 기혼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덴마크에 대한 보고서인 Gupta-Smith(2002)는 육아휴직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기혼여성의 임금은 매우 급진적으로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을 따라잡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표 II-2>의 주요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각국 여성 노동공급곡선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미 선진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63

각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노동공급곡선 형태 역시 역U자로 출산 및 보육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구미 선진 각국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육관련 지원제도를 조세지원제도와 재정지원제도,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주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 조세지원제도가 주된 지원정책이었으며, 2) 유럽 국가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구 국가에서는 다양한 재정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3) 육아휴직제도가 그 기간이나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지원제도를 한국과 비교하기 위해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III-8>과 같다.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제도는 북유럽국가나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 비해 취약하다. 우선 소득공제의 한도액도 높은 편이 아니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근로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자녀의 보육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표 III-2> 참조) 그 지원정도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동수당, 급여금 등 자녀수당은 현재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구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에게는 5만원을, 셋째 자녀에게는 7만원을 만 5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가제도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어 스웨덴, 노르웨이보다는 짧으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는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유급으로 제공하는 것과 비교된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한 각국의 지원제도에 관한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근로를 전제로 한 세액공제제도와 근로를 전제로 한 보육료 지원의 확대(미국의 경우¹¹⁾)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근로세액공제 제도는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취업을 전제로 한 자녀의 보육료 지원은 소득효과를 통한 여성노동에 대한 구축효과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역시 여성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IV장의 실증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전제로 한 경우의 보육료 지원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근로세액공제나 취업모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그 제도의 효과와 탄력성에 있어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11) 한 예로 미국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는 소득층을 나누어 저소득층의 부모가 모두 전일제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 한해 실 보육료의 30~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III. OECD 국가들의 보육지원 정책 65

<표 III-8>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녀보육 지원제도 요약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한국
경쟁가율(1)	남성	82.2%	84.6%	83.9%	78.0%	80.8%	82.9%	83.2%	77.9%
	여성	69.7%	59.9%	69.2%	64.5%	76.9%	75.9%	73.0%	52.8%
여성노동공급패턴		역U자형	M자형	역U자형	역U자형	역U자형	역U자형	역U자형	M자형
보육비용 지원형태		세액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지원제도 육아보조금	소득공제 아동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육아휴가급여(고용보험)	세액공제 자녀급여금 후견인수당	소득공제 자녀급여금	육아원급여금(출산(일시) 자녀수당 자녀간호수당 생계보조금	소득공제 자녀급여금 유아급여금 육아보조금	조세급여금(세액공제) 자녀특별수당 육아휴가급여(고용보험)	소득공제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금
자녀수당(2)	지급대상 연령	-	6세 이하	16세 미만(재학 18세까지, 근로·훈련 17세까지)	18세 미만(자녀가 고용 안 되면 21세까지, 재학·훈련 중이면 27세까지)	16세 되는 1/4분기까지	18세 미만	18세 미만	만 5세 이하 **2006년 이후 출생
	한도액	-	자녀수 월액(명) (엔) 1~2 3이상	자녀수 주액(파운드) 첫째 16.5 둘째 이상 11.05	자녀수 금액(명) (인당 유로) 1~3 154 4이상 179	자녀수 월액 1 950SEK 2 1,900SEK 3 2,850SEK 4 3,800SEK 5 4,750SEK 6 이상(각각) 950SEK	자녀수 월액(NOK) 첫, 둘째 829 셋, 넷째 912	자녀수 연액(명) (달러) 1 2,632 2 5,055 3 7,400	둘째(매월 5만원)와 셋째 자녀(매월 7만원)
	수령자격(3)	-	• 근로자 가구 소득 536만 엔까지 • 자영업 가구 소득 377만 엔까지	가구소득과 무관	가구소득과 무관	가구소득과 무관	가구소득과 무관	가구순소득 80,247달러 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육아휴가	기간	남여 불문 12주	1년	26주(여) 1주or2주(남)	14주(여)	남여 불문 480일	42주/52주(수입 100% / 80% 상한)	17주	남여 불문 1년(1세 미만 영아, 3개월 출산휴가 포함)
	급여	무급	유급	유급	유급	유급	유급	유급	무급
	자격	• 연간 1,250시간 근로	• 고용기간 1년이상	• 26주간 근로 • 그중 8주의 평균주간소득 국가보험 부담금 저소득제한선 이상	• 12주간 사회보험 가입	• 모든 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	• 최소 6개월 연금대상 근로소득	• 600시간 근로	•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 OECD Employment Outlook(2004)의 2003년 자료로 1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캐나다는 2003년 7월~2004년 7월 기준임.
 3) 일본의 경우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임.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1. 노동공급 결정요인

가. 전통적인 설명

전통적인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경제주체인 개인이 일을 하여 얻는 수익으로부터의 효용과 일을 함으로써 잃게 되는 여가로부터의 효용을 비교하여 일을 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큰 경우 일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설명은 의사결정주체로 개인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개인의 행동원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각 개인이 누리는 효용(utility)은 그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과 그 재화를 얻기 위해 투입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이 경우 각자의 효용함수를 (1)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U_i = U_i(C_i, H_i)$$

여기서, U는 효용, C는 소비, H는 노동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W^* 를 의중임금(reservation wage)라고 한다면, W^* 에서 각 개인은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완전히 무차별하게 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2) U_i(W_i^*, H) = U_i(Y_0, 0)$$

(2)식에서 Y_0 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나타낸다. 위 식으로부터 각 개인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질임금과 여가로부터의 효용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의 효용함수에서 (3)식과 같은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3) L = L(W,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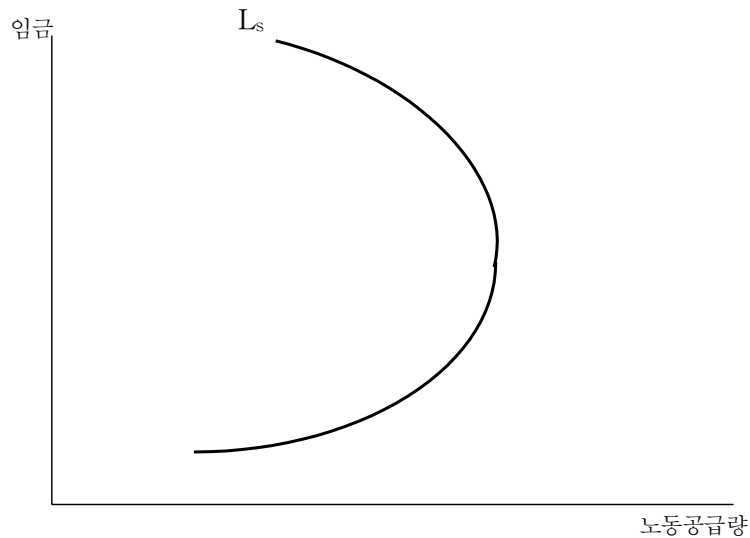
여기서 L 은 노동공급을, W 는 실질임금, Z 는 기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나타낸다.

각 개인의 노동공급은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증가하나,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노동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보다 자신의 여가(leisure)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 그 결과 실질임금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노동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곡선은 후방으로 굽게 된다(backward bending labor supply curve)¹²⁾.

그러나 개인의 수입-여가 선택에 따라 노동공급을 결정한다는 이상의 모델은 임금이나 수입의 수준에 따라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정도가 다른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동공급이 전적으로 개인의 이유에 의하지 않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제약을 지니고 있다.

12)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면 일을 더욱 많이하여 더욱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함께 일정수입이 확보되었으므로 여유를 즐기려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동시에 나타난다. 통상 어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하게 되므로 노동공급곡선은 뒤로 굽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림 IV-1] 후방굴절형 노동공급함수



나. 여성의 노동공급 : 이론적 설명 및 실증 분석 방법

앞의 개인의 노동공급모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금,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금과 노동자 개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저한의 임금인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다. 시장임금은 각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경력,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의중임금은 개인이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남성의 경우 의중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시장임금 결정요인과 거의 동일하므로 남성의 노동공급은 안정적이며 예측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의중임금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생산(reproduction)과 관련되기 때문에 양자간에 괴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남성의 노동공급에 비해 복잡다기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예

측가능성도 대단히 낮다.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이론적 모델의 효시로는 Becker(1965)의 시간배분모델(time allocation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여가(leisure)와 노동(labor)에 더하여 가정 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home production)한다는 3가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정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는 자녀보육도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생산활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분석할 때 가정 내 생산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임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는 적게 나타난다.

물론 시장임금이 상승하면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적으나,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임금이 대한 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로 상반되는 분석결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여성 노동공급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과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Killingsworth(1983)는 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선행연구를 1세대 연구와 2세대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1세대 연구들은 주로 197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로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추정치들을 OLS로 추정한 결과들이다. 1세대 연구의 대표적인 여성노동공급함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H = W\alpha + X\beta + R\gamma + \epsilon$$

여기서 W 는 실질임금, X 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벡터, R 는 외생소득(exogenous income), ϵ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 식은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증분석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 절의 신고전학과 노동공급모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중임금이 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보다 높으면 개인은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 시장임금이 약간 변화하여도 노동공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임금의 조그만 변화도 노동시장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4)식은 설령 그것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정확히 추정한다고 하여도 여성 전체를 표본으로 한 추정은 불가능하다¹³⁾. 1970년대 중반까지의 1세대 연구들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진행되었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위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여성 전체를 표본으로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여성에 한정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의중임금이 관찰되지 않는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 관찰되는 변수에 의해서만 노동시간이 결정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4)식은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를 야기한다.

임금과 노동공급 모델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 문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소위 제2세대 연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¹⁴⁾. 그들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13) 같은 능력을 가진 여성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은 일을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의중임금이 낮다는 사실과, 같은 의중임금이라면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전체 여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OLS로 추정된 β 는 전체표본을 대표하는 진정한 값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중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시장으로부터 제시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임금결정요인이나 노동시간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모수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각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임금 및 노동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인 것이다.

2세대 연구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공급함수와 행동함수(behavioral function)를 추정하는 방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어떻게 자료가 생성되었는가? 즉, 일을 하고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2) 비취업자의 노동공급은 조그만 임금 및 외생소득의 변화에 비탄력적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여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Heckman(1979)은 이러한 선택편의 문제를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 두 개의 방정식을 식별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Heckman이 제시한 방법¹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전 표본을 대상으로 probit 추정을 통하여 일을 할 확률을 구하는 선택방정식을 추정한다. 이 선택방정식 추정으로 통해 얻어진 계수들을 사용하여 선택항¹⁶⁾(selectivity term) λ 를 구한다. 선택방정식의 추정을 통해 얻어진 선택항을 두 번째 방정식에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써 선택편수편의를 수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과 노동시간에 관한 선택편의 문제를 수정한 축약(reduced) 방정식이 추정되면, 노동시간 방정식에 추정된 임금을 설명변수로 넣어 추정함으로써 노동공급에 관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을 추정할 수

14) 선택편의 문제에 관한 논의 및 추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illingsworth (1983), Heckman-MaCurdy(1985), Wales-Woodland(1980)를 참조하기 바람.

15) Heckit이라고도 한다.

16) 선택항에 대해 Inverse Mills' Ratio, 또는 hazard ratio라고도 한다.

있다. 이와 같은 추정방법은 연립방정식 모델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와 내생성이라는 두 개의 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Heckman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을 할 때 임금과 노동시간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임금과 노동시간이 동시에 결정된다면 노동시간 방정식에 실제 임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둘째, 임금 방정식과 노동시간 방정식이 완벽하게 상관을 갖지 않으려면 임금 방정식에는 노동시간 방정식에 들어가지 않았던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¹⁷⁾.

최근에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노동공급결정이론에서 가족 내 배우자간의 비교우위나 교섭력(bargaining power) 등에 따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결정된다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의사결정에 있어 남성이장의 노동공급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지며, 그 외 가계의 특성이나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기혼여성이 노동공급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위에 소개한 일반적인 노동공급이론, Heckman으로 대표되는 표본선택이론, 가족단위의 노동공급결정이론 중 Heckman의 표본선택이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 분석을 전개한다.

다. 자녀보육비용과 여성노동공급

자녀보육이 여성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보육비용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하락시키는

17) 통상적으로 이러한 변수로 거주지역에 관한 변수가 많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거주지역의 경우 노동시간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지역간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임금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73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자의 관계에 관한 Gelbach(200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무료 공공 유치원 수와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single mother)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연구한 Chevalier-Viitanen(2002)의 연구도 공적인 자녀보육 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자녀보육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이에는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상의 사실은 미국과 영국 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크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자료나 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분석모델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요인 이외에 여성의 교육수준, 소득, 기능 정도에 따라라도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각각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혼인 상태 여부에 따라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다른가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자녀의 나이가 적을수록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많은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자녀보육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베이를 한 Blau-Currie (2003)의 결과를 <표 IV-1>에 제시하였다.

한편, Gelbach(2002)와 Chevalier-Viitanen(2002)은 자녀보육과 여성노동공급간의 인과관계를 Granger 인과관계 테스트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양자 모두 자녀보육이 여성노동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표 IV-1> 보육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Blau and Currie(2003))

연구자	데이터	모집단	고용	보육비용	방법론	추정결과(탄력성)
Anderson and Levine (2000)	SIPP 1990~1993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binary): 경제활동참가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기혼 <13 : -0.30 미혼 <13 : -0.47 기혼 <6 : -0.46 미혼 <6 : -0.58
Baum(2002)	NLSY 1988~1994	1988~1994 사이에 출산을 한 여성	출산후 직장복귀	시간당 총 보육지출	Discrete time logit hazard	저소득층 : -0.59 기타 : -0.02
Blau and Robins(1991)	NLSY 1982~1986	6세 미만 어린이	이항(binary): 지난 4주 동안 고용	보육시간당 총 보육비용	Probit; standard	0.04
Connelly(1992)	SIPP 1984	기혼,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 경제활동참가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0.2
Connelly and Kimmel (2000)	SIPP 1992~1993 (data for 1994)	6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비경제활동인구	가장 어린 자녀의 주된 보 육에 대한 시간당 지출	Ordered probit on FT, PT, OLE	기혼 : 전일제 : -0.71, 시간제 : -0.08 미혼 : 전일제 : -1.22, 시간제 : -0.37
Connelly and Kimmel (2000)	SIPP 1992~1993 (data for 1994)	미혼,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경제활동 참가	가장 어린 자녀의 주된 보 육에 대한 시간당 지출	Probit; standard	-1.03
U.S. GAO(1994b)	NCCS 1990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 경제활동 참가	주당 총 보육비용	Probit; standard	저소득층 : -0.50 저소득에 가까운 층 : -0.34 비저소득층 : -0.19
Han and Waldfogel (2001)	CPS 1991~1994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고용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 용(SIPP에서 계산)	Probit; standard	기혼 : -0.30 미혼 : -0.50

<표 IV-1>의 계속

연구자	데이터	모집단	고용	보육비용	방법론	추정결과(탄력성)
Hotz and Kilburn (1994)	NLS72, 1986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고용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1.26
Kimmel(1998)	SIPP 1987	13세 미만 어린이	이항: 전월 취업	어머니의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standard	기혼: -0.92 미혼: -0.22
Powell(1997)	Canadian NCCS	기혼, 6세 미만 어린이	이항: 고용	근로와 관련된 어머니의 시간당 총 가족지출	Probit; standard	-0.38
Ribar(1992)	SIPP 1984	15세 미만 어린이	고용	시간당 총보육비용	Probit	-0.74
Blau and Hagy(1998)	NCCS 1990	6세 미만 어린이	고용	보육시설 제공자 조사에 의한 질 조정 지역별 보육비용	Multinomial logit	-0.2
Blau and Robins(1988)	EOPP 1980	기혼, 14세 미만 어린이	고용	지역별 주 평균 보육 지출	Multinomial logit	-0.34
Fronstin and Wissoker (1995)	NCCS 1990	6세 미만 어린이	고용	보육시설 제공자 조사에 의한 지역별 평균 보육비용	binary logit	저소득지역: -0.45 고소득지역: 0.06
Michalopoulos and Robins(2000)	Canadian and U.S. NCCS	기혼, 5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비경제활동인구	시간당 총보육지출	Multinomial logit	-0.156
Michalopoulos and Robins(2002)	Canadian and U.S. NCCS	미혼, 5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비경제활동인구	시간당 총보육지출	Multinomial logit	-0.259
Powell(2002)	Canadian NCCS	기혼, 6세 미만 어린이	고용	가장 어린 자녀의 주된 보육에 대한 시간당 지출	Multinomial logit	Center user: -1.40 Non-relative user: -3.60 Relative user: -0.80
Ribar(1995)	SIPP 1984	기혼, 15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시간당 총보육비용	structural multinomial	-0.09
Tekin(2002)	NSAF 1997	미혼, 13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시간제	시간당 총보육비용	Multinomial logit	전일제: -0.15 시간제: -0.07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전일제 직업(full time job)을 택할 것인가 시간제 직업(part time job)을 가질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녀보육을 포함한 가정 내 생산활동이 남성보다 여성에 더 적합하다고 하는 비교우위로 인해 여성의 취업형태 결정은 성역할(gender role)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어린 여성의 경우 전일제 직장보다는 시간제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Falzone(2000)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막내가 어릴수록,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직장을 선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요인에 더하여 세제, 육아휴가와 출산휴가, 자녀보육비용 역시 경제활동참가와 더불어 전일제, 시간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업이 시간제 근로자를 원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일정 근무시간대에 고객이 집중하는 서비스업과 같이 시간에 따라 근무의 부담이 다를 경우,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한정하여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량이나 정도가 다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를 원하게 된다.

둘째, 전일제 정규직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을 보호받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른 비용이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이 든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의 업무에 관해서는 전일제 정규직을 고용하나 그렇지 않은 업무에 관해서는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를 원하게 된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적인 근로자가 개인이나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 기업은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77

어떠한 요인이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EU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Tijden(2002)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공급측의 요인 즉 성역할(gender role)이 가장 강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요측 요인 가운데서는 세 번째 요인, 즉 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제공하는 요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보육관련 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표 IV-1>에 나타난 것처럼 주로 노동시간 참여여부,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Connelly(1992)는 노동시간 참여여부에 대한 시간당 자녀보육비용의 영향을 2SLS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이 글은 자녀의 보육관련 비용이 여성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보육비용의 내생성을 통제하는데 추정치(fitted value)를 사용하는 Connelly(1992)와 다른 주요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선진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법인 통제함수추정치(control function estimator)를 이용하여 이항선택모형에서 일치추정치의 도출을 보장한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가장 큰 장점으로 Wooldridge(2001)와 Lewbel(2004)가 소개한 이항선택모형이나 다항선택모형에서 내생적인 설명변수를 취급하는 통제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자녀보육비용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성노동공급함수 추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황윤재·최강식(1999), 황수경(2002, 2003), 장지연·김지경(2001) 등이다. 그런데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해 분석하고는 있으나 자녀의 보육비 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과 근로시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은 국내 최초로 자녀의 보육비 부담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여성노동공급함수 모형

가. 모형 I: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과 통제함수접근법 (Control Function Approach)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모형 I 은 전통적인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기초로 한다. Heckman의 모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참여식과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노동공급방정식으로 구성된다. 노동공급시간은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만 관측되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의 표본만으로 모형을 구성하면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간에는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노동공급시간의 결정이 이를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Heckman의 모형을 한국에 준모수추정법(semiparametric estimation)의 형태로 응용한 논문인 황윤재·최강식(1999)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에서 모수추정(parametric estimation)과 준모수추정을 통해 각각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임금(로그 시간당임금)의 탄력성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황윤재·최강식(1999)은 최우추정법(MaximumLikelihood Estimation)과 2단계 추정법이 교란항에 대한 특정한 분포를 가정한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Whang(1997)의 추정법을 이용하여 준모수적으로 2단계 추정을 하였다. 한편 황수경(2002)은 노동공급함수까지 논의를 확장하지 않고 로짓(logit)모형을 통해 가구주기별, 연령범주별, 학력범주별로 노동시장 참여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보육관련 변수인 보육시설 이용유무, 탁아모 이용여부, 탁아 및 보육비용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저자가 파악하고 있는 한 아직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다.

이 글의 첫 번째 모형은 여성의 노동공급함수 추정의 고전적인 방법인 Heckman의 2단계 모형에 기초한 것으로 자녀 보육관련 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공급시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보육관련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또한 시간당 임금의 내생성(endogeneity)을 교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2단계인 노동공급함수 추정시 도구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 Method)도 이용하였다.

1)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결정식

자녀를 보육하는 대표적인 기혼여성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기혼여성의 효용극대화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ax U &= U(C, t_l, Q_{care}) \\ &\{c, t_e, Q_{care}\} \\ \text{s.t.} \\ Q_{care} &= Q_{care}(t_m, t_i : Z) \\ Q'_{care1} > 0, Q'_{care2} > 0, Q''_{care1} < 0, Q''_{care2} < 0, & Q'_{care1} - Q'_{care2} > 0 \\ C + P_{cc}t_i &\leq wt_w + V_i, \\ t_m + t_w + t_l &= 1 \\ t_m + t_i &< 1 \end{aligned}$$

대표적인 기혼여성은 일반재화에 대한 소비 C , 여가시간 t_l , 자녀 보육 Q_{care} 로부터 효용을 얻으며 자녀보육은 어머니가 자녀보육에 투여하는 시간 t_m , 시설에서 자녀를 보육하는 시간 t_i , 어린 자녀의 수나 자녀의 나이 등과 같은 변수인 Z 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혼여성은 자신의 재화에 대한 소비와 시간당 자녀의 보육비용인

P_{cc} 와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시간을 곱한 자녀의 보육비용을 자신의 예산제약하에 지출하게 된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임금을 얻게 되므로 기혼여성의 예산제약은 자신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가 여부에 따라 타가구원 소득 V 나 본인의 소득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 소득이 된다. 기혼여성은 시간을 자녀보육에 필요한 시간, 근로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어머니 자신이 보육하는 시간과 시설에 보내는 시간의 합은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단위시간보다 작다. 마지막 시간제약식은 기혼여성이 자신의 근로시간 t_w 만큼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는 가정 즉 $t_w = t_i$ 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기혼여성의 여가시간 $t_l > 0$ 조건을 충족시킨다.

제약하의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으로부터 다음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frac{U_l}{U_c} = w = \frac{U_Q}{U_c} (Q'_{care1} - Q'_{care2}) + P_{CC}$$

위 식에서 첫 번째 등식은 여가와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의 상대적인 비율이 시장에서 얻는 임금과 같은 수준에서 여가 시간과 근로시간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등식은 자신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얻게 되는 편익과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얻는 편익간의 차이에 자녀를 돌봄으로써 얻는 효용과 재화의 소비로 인한 효용간의 상대비율을 곱한 값과 시장에서의 자녀보육의 시간당 비용을 더한 값이 임금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자신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보육시설에 보내는 시간을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를 기혼여성 자신이 직접 돌봄에 따라 얻는 편익이 보육시설에 자녀의 보육을 위탁하는 경우

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보육비용이 낮아야 위 1계 조건의 균형식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보육에 기혼여성 자신이 투여하는 시간당 편익이 클수록 보육료의 시장가격이 낮아야 균형을 이루게 된다. 위의 1계 조건과 기혼여성의 시간제약식인 $t_m + t_w + t_l = 1$, $t_m + t_l < 1$ 과 예산제약식으로부터 결정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t_w > 0$)와 근로시간은 타 가구원 소득,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질, 여가에 대한 가치, 노동시장 참여시 자녀보육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총괄한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의 산출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보육비용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를 용이하게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U(C, t_l, Q_{care}) = \alpha_1 \ln C + \alpha_2 \ln t_l + (1 - \alpha_1 - \alpha_2) \ln Q_{care}$$

$$Q_{care} = Z t_m^{1/2} t_l^{1/2}$$

효용함수는 로그선형함수로 가정하였고, 자녀보육함수는 콥 더글러스 CRS(Constant Return to Scale)함수를 가정하였다. 위의 콥 더글러스 형태의 자녀보육에 대한 함수는 자녀보육함수의 1계미분과 2계미분의 성질을 모두 충족한다. 위의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1계 조건을 구하고 4개의 제약식을 이용하면 $\frac{\partial t_m}{\partial P_{cc}} > 0$, $\frac{\partial t_l}{\partial P_{cc}} < 0$, $\frac{\partial C}{\partial P_{cc}} < 0$, $\frac{\partial t_w}{\partial P_{cc}} < 0$ 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자녀의 보육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혼여성은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대신 자신의 여가시간과 근로시간을 감소시킨다. 또한 자녀의 보육비용 증가는 주어진 예산제약하에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 기혼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교육 수준, 연령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를 높여 오히려 경제활동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임금 직종에 종사할 기회가 많아져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여성의 연령을 포함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이 연령에 따라 M곡선을 띠는 사실을 감안하려는 것이다. 즉 출산 이전과 아이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집중된 시기의 낮은 참여율을 연령변수를 통해 반영한다.¹⁸⁾

기혼여성이 속한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기혼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타 가구원의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2세 이하의 자녀유무, 3~5세 자녀유무, 6~18세 자녀유무, 기혼여성 자신이 가구주인지 여부, 부모와의 동거여부, 서울거주여부를 포함하였다. 타 가구원 소득은 가계 전체소득 중 기혼여성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것으로 타 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가계 전체의 소득효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의 수는 보살핌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변수로서 도입된다. 이와 더불어 집중적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만 2세 이하의 영아나 3~5세의 유아를 가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2세 이하, 3~5세의 영유아 존재유무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으며, 6세에서 성인이 되기 전의 청소년인 18세 사이의 자녀유무도 더미변

18)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혹은 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률은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 M자 곡선을 나타내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역U자형의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IV-2]와 이에 대한 설명을 참조.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83

수로 추가하였다. 5세 이하의 자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의 존재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이 가구주인지 여부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인 기혼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 의무도 일차적으로 지게 되므로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의 동거여부 역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 본인의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는 노인을 보필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어린 자녀를 보살피 주는 탁아의 임무를 기혼여성의 부모가 대행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서울에 사는지 여부는 여성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거나 높은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보육과 관련된 변수로서는 보육시설¹⁹⁾에 자녀를 보내는지 여부와 탁아모²⁰⁾의 존재유무, 보육비용, 탁아모 지불비용을 들 수 있다.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자녀를 대신 돌봐줄 탁아모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시설이나 탁아모의 존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비와 탁아모 비용의 크기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Jaumotte(2003)는 OECD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 보육 및 탁아 비용에 대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탄력성은 개인별로 상당한

19) 보육시설은 탁아소, 어린이집,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보충학습학원, 예체능학원, 기타 개인레슨 등을 포함한다.

20) 탁아모는 자녀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거 혹은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 동거 혹은 비동거하는 타인을 말한다.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교육수준, 가계소득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특히 저소득, 비숙련 기혼여성의 경우 탄력성이 크며 영유아를 둔 경우 비용에 대한 탄력성이 더욱 크다고 하였다. 보육시설 이용비와 탁아모 비용이 클수록 기혼여성의 노동참여가 저조하다면 보육비 및 탁아모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식의 설명변수로 보육비용을 이용할 때 보육비용이 외생적인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는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보육료의 시장가격을 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외생적인 변수로 고려하여 설명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료가 가계의 보육비 지출이라면 보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이나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외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국의 문헌에 대한 서베이 논문인 Blau & Currie(2003)의 내용을 요약한 <표 IV-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계의 보육비 지출을 보육비용의 변수로 이용한 경우와 지역별 보육비용 단가를 이용한 경우가 자녀보육비용과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혼재되어 있고,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가는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신뢰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가계의 보육비 지출을 변수로 사용하므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있는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항선택모형에서 내생적인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있으면 일반적인 프로빗(probit)모형이나 로짓(logit)모형으로 일치 추정치(consistent estimators)를 구할 수 없으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지 않는 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모형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2SLS기법을 이용한다 해도 추정치의 일치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내생성이 있는 연속적인 설명변수인 보육비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선택모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제함수접근법(control function approach)을 이용해야 한다. 통제함수접근법은 Lewbel(2004)이 자신의 논문에서 소개한 내생성이 있는 연속설명변수를 가진 이항선택모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 소개한 두 가지 방법²¹⁾ 중의 하나로서 Wooldridge(2001)가 소개한 방법과 매우 유사하며 현재 내생성을 지닌 연속적 설명변수를 가진 이항선택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Wooldridge(2001)가 통제함수접근법을 소개하기 위해 이용한 모형을 본 연구의 모형에 맞게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5) \tilde{y}_1 = z_1\delta_1 + \beta_1 y_2 + u_1, \quad y_1 = D(\tilde{y}_1 > 0)$$

$$(6) y_2 = z_1\delta_{21} + z_2\delta_{22} + v_2 = z\delta_2 + v_2$$

$$[u_1, v_2] \sim BN, \text{Var}(u_1) = 1, \text{Var}(v_2) = \tau_2^2, \eta_1 = \text{Cov}(v_2, u_1)$$

여기서 y_1 은 노동시장 참여여부(1 혹은 0), y_2 ²²⁾는 자녀보육비용, z 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외생적인

21) 다른 하나는 아주 외생적인 설명변수(very exogenous regressor)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Lewbel(2004) 참조.

22) y_2 변수에 대한 제약적인 가정은 y_2 가 연속적인 변수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크게 없다. y_2 가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s)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 등의 문제 때문에 교란항 u_1 과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y_2 가 y_1 과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 등에 위의 통제함수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보육비용이 모든 표본에서 관측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보육비용 회귀식의 잔차항을 계산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 y_2 변수 자체를 통제함수접근법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y_1^* 를 y_2 구조방정식의 오른쪽 항의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y_1 이 y_2 의 구조방정식의 오른쪽 항의 변수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제함수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명변수를 나타내며, 실증분석시에는 2세 이하 자녀유무, 3~5세 자녀유무, 6~18세 자녀유무, 타 가구원 소득, 교육수준, 연령, 서울 거주여부, 부모동거여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 가구주 여부를 z 변수로 사용하였다.

u_1 과 v_2 의 정규분포가정과 교란항 u_1 의 분산이 1이라는 가정으로부터 다음의 관계식이 도출된다.

$$u_1 = \theta_1 v_2 + e_1, \theta_1 = \frac{\eta_1}{\tau_2^2}$$

여기서 $e_1 \perp z, v_2, e_1 \sim N(0, 1 - \rho_1^2), \rho_1 = Corr(v_2, u_1)$ 이다. 따라서 위의 u_1 과 v_2 의 관계식을 식 (1)에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P(y_1 = 1 | z, y_2, v_2) = \Phi [(z_1 \delta_1 + \beta_1 y_2 + \theta_1 v_2) / (1 - \rho_1^2)^{1/2}]$$

위의 식에서 v_2 를 알 수 없으므로 식 (2)에서 OLS를 통해 잔차항 $\hat{v}_2 = y_2 - z\hat{\delta}_2$ 을 구하여 v_2 대신 사용한다.

2)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방정식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노동공급량(시간)은 위의 효용극대화의 시간제약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일하는 시간 t_w , 여가에 이용하는 시간 t_l , 자녀양육에 할당하는 시간인 t_m 의 합이 일정하다는 제약하에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인 $\frac{U_l}{U_c} = w = \frac{U_Q}{U_c} (Q'_{care1} - Q'_{care2}) + P_{CC}$ 와 기혼여성의 효용극대화의 시간제약식들 그리고 예산제약식으로부터 도출된다.

위의 다섯 개의 연립방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노동시간에 대한 함수식에서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선 시장임금 w 를

들 수 있다. 임금의 상승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서로 상반된 효과를 통해 노동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임금의 상승은 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여가와 가사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작용하여 노동공급시간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임금의 상승은 여가와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상대적으로 비싼 여가와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공급시간을 증대시키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기혼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량의 변화 외에도 증가된 소득으로 여가시간을 늘리고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등 여가와 가사,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사노동이나 양육이 열등재는 아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에 대한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의 증가가 가사나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은 노동공급시간과 여가간의 대체성 외에 노동공급량과 가사 및 양육, 가사 및 양육과 여가간의 대체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 외에 노동시간은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보육 및 교육시설에 자녀보육 및 교육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간의 차이와 보육비용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여성노동공급의 설명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 Killingsworth and Heckman(1986)의 서베이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노동의 임금탄력성 추정치는 연구마다 매우 다양하다. 특히 Robinson and Tomes(1985), Blundell and Walker(1982)는 비보상(uncompensated) 임금탄력성, 보상(compensated) 임금탄력성 모두 음(-)의 계수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간당 임금변수나 경력변수의 내생성 논란 등 여성의 노동공급은 단순한 OLS로 추정하기에는 부적합한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실증분석의 통계학적 기법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모형 I 은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설명변수들에 여성의 임금 외에 보육과 관련된 변수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노동공급함수식을 구성하였다. 노동시장 참여식에 이용한 설명변수는 노동공급함수에서도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서울거주 여부는 식별의 문제로 인해 노동공급함수 추정식에는 제외하였다. 또한 시간당 임금이 노동시간과 갖는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해 도구변수법을 이용하고 이를 OLS 추정치와 비교하였다.

3) 표본선택모형

위의 노동시장 참여식과 노동공급함수식을 결합하여 표본선택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²³⁾.

$$(7) \quad \tilde{Y} = \tilde{X}\gamma + \epsilon \\ D_i = 1 [(z_i\delta_1 + \beta_1 y_{2i} + \theta_1 v_{2i}) / (1 - \rho_1^2)^{1/2}] > 0]$$

여기서 이항선택은 1단계의 노동참여식인 식 (6)의

$P(y_1 = 1 | z, y_2, v_2) = \Phi [(z_i\delta_1 + \beta_1 y_{2i} + \theta_1 v_{2i}) / (1 - \rho_1^2)^{1/2}]$ 에 의해 결정된다. 위 모형에서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노동공급시간의 크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란항 v_2 와 ϵ 는 독립적이지 않다.

$Y = \tilde{Y}D$ 와 $X = \tilde{X}D$ 를 정의하여 위의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23) 이는 황윤재·최강식(1999)에서 서술된 표본선택모형을 통제함수접근법을 도입하면서 재구성한 것이다.

$$(8) \quad Y = X'\gamma + D\epsilon \\ = X'\gamma + Dg(z_1\delta_1 + \beta_1 y_2 + \theta_1 v_2 / (1 - \rho_1^2)^{1/2}) + \xi$$

여기서 $\xi = D(\epsilon - g(z_1\delta_1 + \beta_1 y_2 + \theta_1 v_2 / (1 - \rho_1^2)^{1/2}))$ 이다. 위의 모형에서 $[\gamma, (\delta, \beta, \theta)]$ 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가장 먼저 \hat{v}_2 를 구한다. \hat{v}_2 는 $y_2 = z_1\delta_{21} + z_2\delta_{22} + v_2$ 의 회귀식의 잔차를 사용한다. 그 다음은 전통적인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선 교란항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최우추정법을 통해 (δ, β, θ) 에 대한 프로빗(probit) 추정치를 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g(\delta_1 z_1 + \beta_2 y_2 + \theta_1 v_2 / (1 - \rho_1^2)^{1/2}) = \\ \sigma_{12} \frac{\phi(g(\delta_1 z_1 + \beta_1 y_2 + \theta_1 v_2 / (1 - \rho_1^2)^{1/2}))}{\Phi(\delta_1 z_1 + \beta_1 y_2 + \theta_1 v_2 / (1 - \rho_1^2)^{1/2})}$$

라는 점을 이용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hat{\delta}, \hat{\beta}, \hat{\theta})$ 와 $\hat{\rho}$ 을 이용하여 위의 Mills' ratio의 역수를 구해 식 (8)에 대입하고 도구변수법을 이용해 γ 에 대한 추정치, $\hat{\gamma}$ 과 $\hat{\sigma}$ 을 구한다²⁴. $\hat{\sigma}$ 은 표본선택의 편의를 나타내주는 계수로 $\hat{\sigma} = 0$ 에 대한 검정을 통해 표본선택의 편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모형 II: 다항로짓모형(시간제-전일제)

모형 II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을 전일제-시간제-미취업

24) 위의 표본선택모형과 달리 두 방정식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Non-selection two part 모형도 존재한다. 표본선택모형과 two part 모형의 장단점 비교는 Manning, Duan and Rogers(1987) 참조.

의 세 가지로 나누어 여성의 가사부담과 이를 위한 시간배분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남성과는 달리 기혼여성이 가사와 양육에 상당한 시간을 배분하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Ⅱ는 자녀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모형Ⅰ과 비교할 때 모형Ⅱ는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참여시간을 동시에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추정치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형태를 전일제(f), 시간제(p), 미취업(n)으로 구분하면 관측되는 형태에 따라 다음의 더미변수를 정의할 수 있다.

$$D_{fi} = \begin{cases} 1 & \text{if } Work = \text{full time} \\ 0 & \text{otherwise} \end{cases}$$

$$D_{pi} = \begin{cases} 1 & \text{if } Work = \text{part time} \\ 0 & \text{otherwise} \end{cases}$$

$$D_{ni} = \begin{cases} 1 & \text{if } Work = \text{no participation} \\ 0 & \text{otherwise} \end{cases}$$

기혼여성들의 (간접)효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_{ki} = S_{ki} + u_{ki}$$

$S = \{S_{ki}\}$ 는 관측된 변수들의 함수이며 교란항은 관측되지 않은 확률적 부분이다. 위의 노동공급형태의 더미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은 S로 구성되며 기혼여성 개인이 각각의 노동공급형태

를 선택하는 경우, 이는 개인이 그 상태에서부터 가장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 i 가 현재의 상태 k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P_{ki} &= Pr [V_{ki} > V_{ji}, \text{ for } j \neq k, j = f, p, n] \\ &= Pr [S_{ki} - S_{ji} > u_{ji} - u_{ki}, \text{ for } j \neq k] \end{aligned}$$

잔차항에 대해 Weibull 분포를 가정하면 그 차인 $(u_{ji} - u_{ki})$ 는 로지스틱 분포를 띠고 효용함수가 선형함수이면 다항로짓모형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형태 선택에 대한 확률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다항로짓모형에서도 통제함수접근법으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있는 경우에 일치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Wooldridge(2003)는 이항선택모형에서 통제함수접근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다항로짓모형에 확장하는 논의는 특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통제함수접근법은 OLS를 통해 추출한 잔차를 원래 모형에 설명변수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형이 이항선택이든 다항선택이든 관계가 없다. 단 z 값을 위해 계수의 신뢰구간을 Bootstrapping 등을 통해 새롭게 추정해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선형모형에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2SLS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기혼여성 개인이 취업형태 k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P_{ki} = \frac{\exp(\delta_k z_{ki} + \beta_k y_{ki} + \theta_k v_2)}{\exp(\delta_f z_{fi} + \beta_f y_{fi} + \theta_f v_2) + \exp(\delta_p z_{pi} + \beta_p y_{pi} + \theta_p v_2) + \exp(\delta_n z_{ni} + \beta_n y_{ni} + \theta_n v_2)}$$

여기서 각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식 (5), 식 (6)과 동일하다.

3. 실증분석

가. 분석자료의 특성

모형 I 과 모형 II 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자료(1998~2002년)를 이용하였다. 모형 I 과 모형 II 의 횡단면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의 5개연도 자료를 풀링(pooling)하였다. 모형에 이용한 변수들과 변수의 기본값들은 <표 IV-2>와 같다.

노동패널 자료의 특성이 우리나라 전체 기혼여성의 노동 및 보육 자료를 대표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변수들을 거시통계와 비교함으로써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모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표본편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15세 이상 여성인구에서 취업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여성의 취업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의 15세 이상의 여성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의 경우(사별 및 이혼을 포함), 2000년에는 47.0%, 2002년에는 48.4%로 <표 IV-3>에 나타난 전체 여성의 취업자 비중과 크게 차이가 없다. 노동패널의 풀링 자료를 사용한 경우, 여성의 취업자 비중(15세 이상 여성인구 대비)은 40.1%이고, 이 중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중은 40.5%로 (<표 IV-2> 참조) 전체여성, 기혼여성 모두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93

<표 IV-2>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량
(노동패널 1998~2002)

	기혼여성			
	전체표본	노동시장참여	노동시장참여 & 보육시설이용	노동시장비참여 & 보육시설이용
관측치수	23,215	9,195	3,228	4,664
2세 이하 자녀유무	0.122 (0.328)	0.073 (0.260)	0.126 (0.332)	0.255 (0.436)
3~5세 자녀유무	0.141 (0.348)	0.110 (0.314)	0.234 (0.423)	0.344 (0.475)
6~18세 자녀유무	0.446 (0.497)	0.505 (0.500)	0.828 (0.377)	0.700 (0.458)
가구원 소득(원)	1,782,728 (2,052,347)	1,931,762 (2,040,981)	2,334,089 (2,626,213)	2,108,976 (2,070,003)
타 가구원 소득(원)	1,572,688 (2,136,052)	1,370,824 (1,775,002)	1,710,798 (2,157,166)	2,108,976 (2,070,003)
교육연수	9.066 (4.623)	9.548 (4.118)	11.270 (3.284)	10.515 (4.242)
연령	46.916 (15.289)	44.413 (10.950)	38.650 (7.734)	39.832 (15.769)
서울 거주 여부	0.240 (0.427)	0.222 (0.416)	0.231 (0.422)	0.232 (0.422)
부모 동거 여부	0.159 (0.365)	0.128 (0.334)	0.146 (0.353)	0.193 (0.395)
가구주 여부	0.124 (0.330)	0.140 (0.347)	0.063 (0.243)	0.032 (0.175)
초등3년 이하 자녀수	1.019 (0.812)	0.897 (0.800)	1.472 (0.558)	1.561 (0.591)

<표 IV-2>의 계속

	기혼여성			
	전체표본	노동시장참여	노동시장참여 & 보육시설이용	노동시장비참여 & 보육시설이용
고용과 보육 변수				
노동시장 참여	0.405 (0.491)			
주당 근로시간 (시간)	21.19 (29.40)	52.29 (22.45)	50.88 (21.11)	
시간당 임금(원)	3,517 (10665.1)	3,535.92 (10747.8)	4,268.59 (11688.1)	
경력(연수)	1.453 (4.706)	2.912 (6.495)	1.632 (3.254)	0.213 (1.473)
자녀 1인당 보육비 용(만원)	10.580 (15.426)	11.179 (16.593)	11.148 (16.546)	10.157 (14.362)
2세 이하 자녀 보육비용(만원)	1.512 (5.659)	4.351 (9.906)	5.385 (10.767)	0.858 (3.315)
3~5세 이하 자녀 보육비용(만원)	9.608 (8.349)	10.960 (7.684)	11.420 (7.501)	9.736 (8.561)
6~18세 이하 자녀 보육비용(만원)	11.553 (17.757)	11.727 (20.694)	12.077 (20.899)	12.130 (15.386)
시간당 자녀 보육비 용(만원)	0.208 (0.393)	0.220 (0.384)	0.234 (0.393)	0.230 (0.421)
2세 이하 시간당 자녀보육비용(만원)	0.167 (0.274)	0.139 (0.175)	0.141 (0.175)	0.223 (0.393)
3~5세 이하 시간당 자녀 보육비용(만원)	0.154 (0.178)	0.130 (0.132)	0.137 (0.132)	0.166 (0.199)
6~18세 이하 시간당 자녀 교육 비용(만원)	0.560 (0.660)	0.550 (0.705)	0.556 (0.705)	0.575 (0.632)
가구당 탁아모 비용 (만원)	0.640 (7.421)	1.194 (9.654)	3.384 (17.194)	0.716 (9.971)
탁아모(더미)	0.033 (0.178)	0.046 (0.210)	0.078 (0.269)	0.031 (0.174)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자료: 노동패널 1998~2002 폴링.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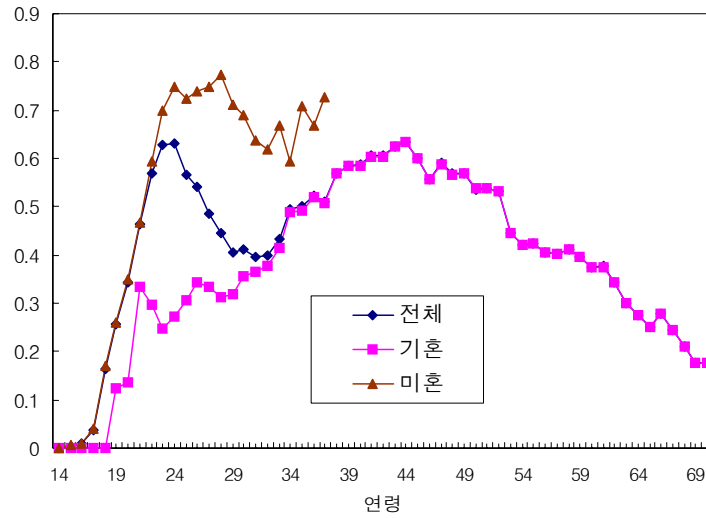
<표 IV-3>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자 비중(15세 이상 여성인구 대비)
(단위 : 천명,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A: 취업자수	8,090	8,337	8,769	8,991	9,225	9,108
B: 15세 이상 인구(여성)	18,223	18,451	18,664	18,859	19,042	19,220
(A/B)*100	44.4	44.4	47.0	47.7	48.4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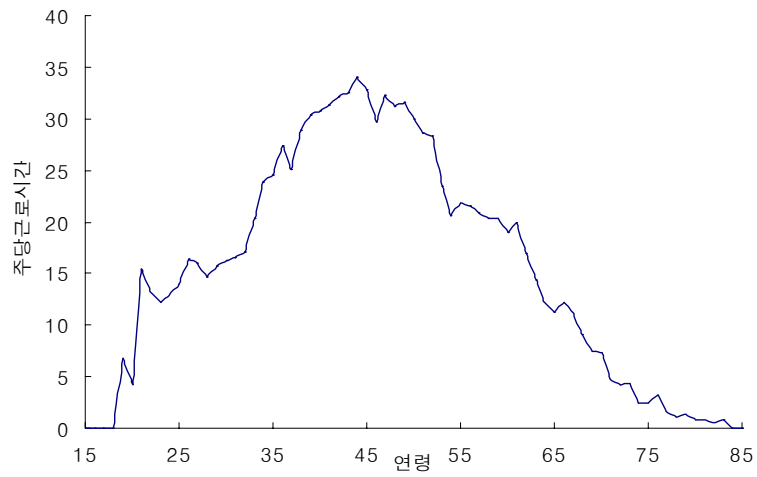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3.

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그림 IV-2]와 같다. 이는 [그림 II-2]의 전체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슷한 M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여성 중 미혼여성을 제외한 기혼여성의 15세 이상 기혼여성 인구 대비 경제활동참가자수를 연령별로 그려보면 역U자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출산연령 근처에 있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감소하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 20대 중후반까지 높은 참가율을 보이다 30대 이후 약간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혼과 미혼여성을 합한 전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림 II-2]와 마찬가지로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미혼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과 연이은 출산을 통해 M자형의 저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2]의 M자형 곡선의 저점에 해당하는 연령은 30대 초반으로 [그림 II-2]의 우리나라 전체여성의 노동참여율의 2000년 혹은 2003년의 저점을 형성하는 연령과 유사하다.

[그림 IV-2] 연령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노동패널 자료)



[그림 IV-3] 기혼여성의 연령별 주당근로시간 분포(노동패널 자료)



IV. 여성노동공급과 보육 및 교육 비용 97

기혼여성의 주당근로시간의 연령별 분포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 분포와 큰 차이가 없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연령대에서 평균 주당근로시간도 높게 나타나므로 40대 중반 정도에서 근로시간이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감소하게 된다.

거시통계자료상의 여성의 주당 근로시간과 노동패널 자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 우리나라 여성의 주당근로시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여성	48.9	47.3	46.2	45.6	45.0
전체여성(노동패널)	52.50	52.28	51.65	49.72	50.37
기혼여성(노동패널)	53.67	53.24	52.40	50.59	5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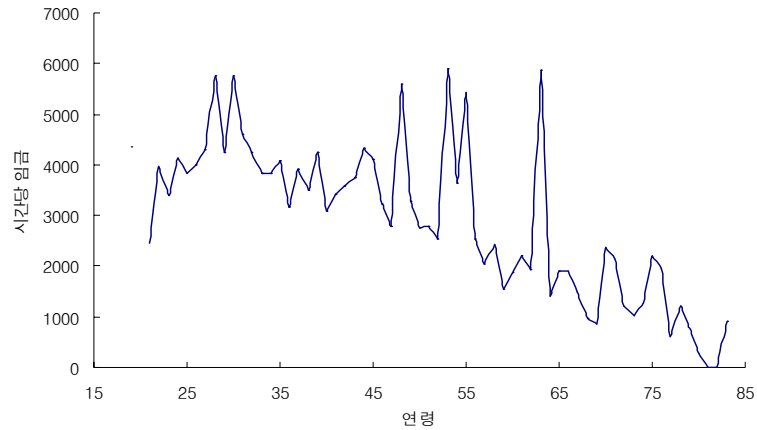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데이터, 1998~2002.

<표 IV-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여성의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노동패널 자료의 표본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와 KLI 통계자료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동패널 자료의 여성은 그런 제한이 없으므로 평균값이 5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의 분포는 [그림 IV-4]에 잘 나타나 있다.

노동패널 자료상의 기혼여성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3,536원으로 전체 거시통계자료상의 여성 임금에 비해 낮다. 여성의 월평균임금에 대해 거시통계자료와 노동패널 자료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IV-5>와 같다.

[그림 IV-4] 기혼여성의 연령별 시간당 임금의 분포(노동패널 자료)



<표 IV-5>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임금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여성	804,343	866,570	954,292	1,015,178	1,112,457
전체여성(노동패널)	630,704	426,944	390,575	962,030	805,834
기혼여성(노동패널)	582,748	411,645	383,707	950,015	749,664

자료: 통계청, KOSIS 임금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자료, 1998~2002.

전체여성의 월평균 임금을 추산할 때 그 기준이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동패널 자료는 자영업자의 임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통계대상을 가진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1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체여성의 월평균 임금에 비해 노동패널 자료의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패널의 여성임금자료는 거시통계자료의 표본으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패널상의 시간당 임금의 연령별 변화는 [그림 IV-4]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다가 30대에서 40대에 걸쳐 감소하고 45~55세 사이에 다시 높은 임금을 받다가 55세 이후로는 감소추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패널 자료상의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변수 중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은 전체통계에 비해 약간 낮지만 연령별 추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주당근로시간은 전체여성의 평균이 노동패널 자료의 평균보다 5시간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전체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작게는 4만원에서 크게는 55만원까지 노동패널 월평균 임금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노동패널 자료의 노동공급 관련 변수는 경제활동참여율을 제외하고는 전체 여성관련 노동통계치와 비교하여 볼 때 월평균 임금수준은 낮고, 노동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 표본선택의 편의를 일정정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대체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육관련 변수들이 가장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고, 여성의 노동관련 자료 역시 풍부한 노동패널은 미시자료를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나. 자녀보육비용 회귀식과 변수의 내생성

프로빗이나 로짓모형 같이 피설명변수가 0 혹은 1의 값을 갖는 모형에서 내생적인 설명변수가 존재할 때에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2SLS 추정치를 사용하여 일치추정치를 구할 수 없고, 내생적인 변수를 외생적인 설명변수에 회귀시킨 잔차항을 첨가하여 내생성 여부를 검사하고 내생성을 통제하여 프로빗 혹은 로짓모형을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 가구의 총지출 등과 상관관계가 크므로 변수의 외생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보육료 단가 자료가 존재하면 이를 보육비용변수로 사용할 수 있고, 변수의 내생성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1998~2002년에 걸쳐 시군구별 보육 및 교육시설의 시장가격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 가계의 보육비 지출을 보육비용의 변수로 사용하였다²⁵⁾. 따라서 자녀의 시간당

<표 IV-6> 자녀보육비용의 추정식(OLS)

	계수(t 값)	
2세 이하 자녀유무	-0.096**	(-8.47)
3~5세 자녀유무	-0.044**	(-4.60)
6~18세 자녀유무	0.093**	(8.26)
가구소득	0.0002**	(8.93)
어머니 학력	0.012**	(8.40)
어머니 연령	0.003**	(5.50)
서울 거주 여부	0.014	(1.64)
가구주	-0.039	(-1.95)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004	(-0.54)
부모 동거여부	0.024*	(2.10)
탁아모 유무	-0.032**	(-2.62)
상수	-0.102**	(-3.20)

adj. $R^2=0.16$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25) 지역별 보육시설의 보육료 단가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면 몇 개의 지역별 더미만 가지고는 적절한 추정치를 구할 수 없으며,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면 추정치를 과대 해석할 수 있다.

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OLS 회귀식을 구성하여 그 잔차항을 노동시장 참여식에 첨가하여 변수가 외생적인지 여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²⁶⁾.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 지출회귀식의 추정결과는 <표 IV-6>과 같다.

위의 <표 IV-6>에서 알 수 있듯이 6~18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시간당 보육 혹은 교육비용은 매우 큰 반면, 5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시간당 보육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IV-2>의 노동패널 자료에 대한 기본통계치의 자녀보육비용을 확인해도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가구원 전체소득이 높고,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육비용 지출이 증가하며,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육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보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탁아모가 있는 경우에도 보육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아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탁아모 지불비용의 평균값이 매우 낮고 표준편차는 큰 편이어서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탁아모 비용의 평균값이 매우 낮은 것은 동거하는 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할 경우 개인에 따라 탁아모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용돈 정도의 수준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그 표준편차가 큰 것은 동시에 공식적인 탁아모 고용을 통해 높은 탁아모 비용을 지불하는

26) 보육비용이 관찰되는 표본에 한해 추정을 하면 자료가 절단(censored)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료의 절단으로부터 오는 문제점들을 고려하기 위해 1)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보육비용을 표본선택모형 2단계로 구성하여 표본편의를 교정하고 보육비용을 추정 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시설 이용을 연립 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 model)으로 구성하고 이로부터 구한 Inverse Mills Ratio를 보육비용에 추가하여 OLS로 추정 3) OLS 이외에도 Tobit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OLS의 추정결과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OLS의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경우도 혼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아모 비용을 보육비용에 포함할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계의 보육비용변수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식적인 보육과 비공식적인 탁아모 이용간의 대체성을 포착하기 어려워 탁아모 비용을 보육비용에 가산하지는 않았다. 대신 탁아모의 이용과 보육시설 이용, 탁아모의 이용과 보육비용간의 대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탁아모 이용여부를 보육비용에 대한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보육비용의 외생성 검정을 위해 위의 OLS 회귀식으로부터 교란항의 잔차를 구하여 노동시장 참여식의 변수로 사용하게 된다.

다. 표본선택모형에 따른 횡단면 실증분석(모형 I)

표본선택모형인 모형 I의 1단계인 노동시장 참여식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보육비용이 내생적인가 여부이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식의 $\hat{\theta}$ 값이 0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또한 \hat{u}_2 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육비용의 계수값과 표준오차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1단계 노동시장 참여식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당 보육비용은 잔차항을 포함한 경우, 그 계수값이 유의성이 없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고, 보육비용의 잔차인 \hat{u}_2 의 계수는 0이 아니나 그 유의성도 낮다. 반면 자녀보육비용을 외생변수라고 가정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의적인 양(+)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다. 두 모형에서 보육비용의 부호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나 유의성은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hausman 검정 결과 $\chi^2(10) = 1.23$ 으로 보육비용을 외생변수로 간주하고 사용한 경우와 통제함수접근법 사이에는 계수값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식 회귀분석(프로빗)

	내생변수 취급 (통제함수접근법)		외생변수 취급	
	계수	(z 값)	계수	(z 값)
2세 이하 자녀유무	-0.400**	(-5.40)	-0.383**	(-5.29)
3~5세 자녀유무	-0.160**	(-2.59)	-0.154*	(-2.50)
6~18세 자녀유무	0.022	(0.29)	-0.001	(-0.02)
타 가구원 소득	-0.0004**	(-4.18)	-0.0004**	(-4.15)
어머니 학력	0.019	(1.90)	0.016	(1.71)
어머니 연령	0.791**	(2.96)	0.786**	(2.96)
연령 ²	-0.023*	(-2.49)	-0.023*	(-2.49)
연령 ³	0.0003*	(2.20)	0.0003*	(2.19)
연령 ⁴	-1.51e-06*	(-2.07)	-1.49e-6*	(-2.06)
서울거주여부	-0.063	(-1.16)	-0.071	(-1.32)
부모동거여부	0.159*	(2.20)	0.154*	(2.14)
가구주	0.410**	(3.44)	0.419**	(3.53)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062	(-1.23)	-0.060	(-1.19)
시간당 보육비용	-0.241	(-0.81)	0.071	(0.77)
\hat{u}_2 (보육비용 잔차)	0.290	(1.11)	-	
상수	-9.971**	(-3.60)	-9.913**	(-3.60)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그 외에 5세 이하의 자녀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강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6세 이상의 자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본인을 제외한 타 가구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상당히 유의하게 기혼여성은 취업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가계소득이 높으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부가적인 가계소득 대신 가사, 육아, 여가 등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령은 4차함수 형태로 가정할 경우 일정한 나이까지는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효과가 노동시장참여에 주는 순수한 효과만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은 30대 후반에 가장 활발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가구주이면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담하기에 노동시장 참여확률이 매우 높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비유의적이긴 하나 비서울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노동시장 참여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수도 유의성은 떨어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나이별로 분류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자녀의 보육비용이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8> 자녀연령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식(통제함수접근법)

	자녀 2세 이하		자녀 3~5세		자녀 6~18세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타 가구원 소득	-0.0007	(-0.84)	-0.0001	(-0.44)	-0.0006**	(-3.21)
어머니 학력	0.079	(1.07)	0.057**	(2.84)	-0.004	(-0.25)
어머니 연령	0.988	(0.17)	0.882	(1.28)	1.109	(1.48)
연령 ²	-0.040	(-0.16)	-0.029	(-1.20)	-0.031	(-1.29)
연령 ³	0.0008	(0.18)	0.0004	(1.19)	0.0004	(1.13)
연령 ⁴	-5.94e-06	(-0.21)	-2.48e-06	(-1.23)	-1.77e-06	(-1.05)
서울거주 여부	0.172	(0.48)	-0.001	(-0.01)	-0.045	(-0.50)
부모동거 여부	0.869	(0.87)	0.195	(1.39)	0.167	(1.34)
가구주	2.679	(0.28)	0.185	(0.67)	0.512*	(2.19)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208	(0.68)	-0.109	(-1.41)	-0.211**	(-3.14)
보육비용	-3.986*	(-2.05)	-3.040**	(-4.80)	0.166	(0.77)
$\hat{\mu}$	4.293**	(2.58)	2.101**	(3.82)	-0.070	(-0.39)
상수	-10.466	(-0.19)	-10.475	(-1.48)	-13.671	(-1.6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전체표본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계수값들의 유의성은 떨어진다. 타 가구원 소득은 6세 이상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만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타 가구원 소득의 유의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5세 이하 자녀의 존재 자체가 노동시장 참여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가적인 변수인 타 가구원 소득은 별반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순

수한 자녀의 존재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율 결정력이 떨어지고 그 외의 변수 중 타 가구원 소득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은 오직 3~5세의 자녀가 있을 때만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용의 경우는 2세 이하와 3~5세의 경우에 전체표본을 이용한 경우와 달리 음(-)의 유의한 계수값을 보여 5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당 보육비용이 클수록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6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육비용의 계수값이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직접 보육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의 보육비용 증가에 따른 한계비효용이 크기 때문에 보살핌이 덜 필요한 자녀를 둔 경우에 비해 보육비용이 노동시장참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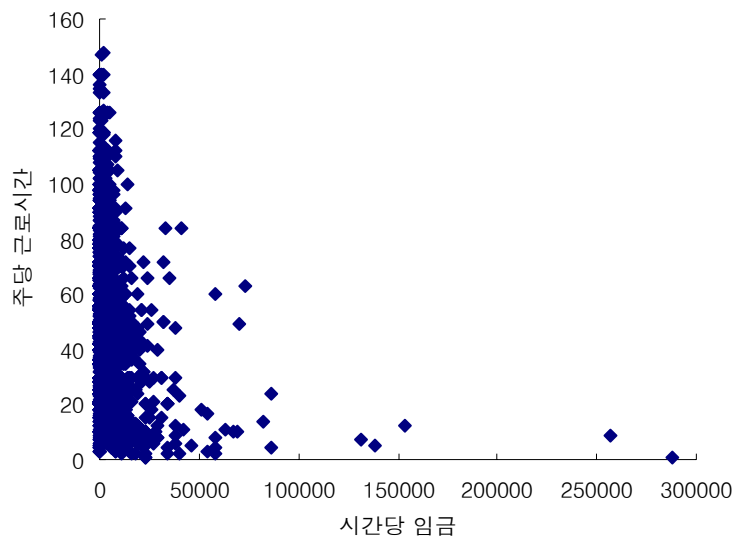
표본선택모형의 2단계인 노동공급시간에 대한 함수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표본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편의가 유의한가이다.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결과 중 하나인 Cogan(1980)은 노동시장의 경력이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표본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소추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Mroz(1985) 역시 표본의 편의는 주로 경력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표본선택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정치가 일치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Mroz(1985)는 노동공급함수식에 노동시장 참여식의 추정치를 추가하면 경력을 노동공급함수식의 설명변수로 달리 부가할 필요가 없으며, 표본의 편의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둘째, 노동공급시간 함수식에서 피설명변수인 시간당임금이 총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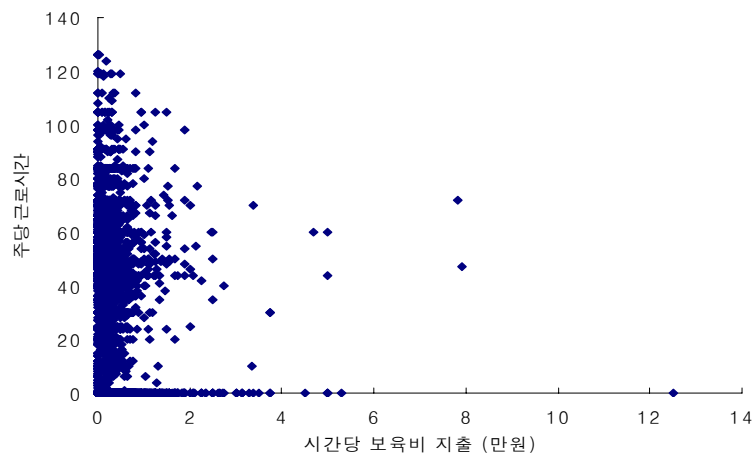
간임금소득/총연간 노동시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교란항 u_i 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근로시간이라는 피설명변수를 근로시간이 분모에 포함된 로그 시간당 임금이라는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총 연간노동시간에 관측오차가 크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당 로그임금 변수를 대체할 외생적인 도구변수가 필요하다. [그림 IV-5]는 시간당 임금과 주당 근로시간의 노동패널 자료를 한 평면에 그린 것으로 주당근로시간이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0으로 나타난 경우도 존재하고 시간당 임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IV-5]만으로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으며 시간당 임금의 내생성으로 인해 두 변수를 한 평면에 그려본 것만으로는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림 IV-5] 시간당 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셋째, 자녀의 보육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외생적인 설명변수인가 여부이다.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 지출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으로부터 두 변수간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다. 특히 보육비용이 노동공급시간의 외생적 설명변수가 아니라면 [그림 IV-6]으로부터 정확한 상관관계를 포착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보육비용의 외생성 여부를 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림 IV-6] 시간당 보육비 지출과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



첫 번째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경력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경력변수를 도구변수로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모형의 설명력이나 다른 변수의 계수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경력변수가 내생적이라는 것을 본 논문의 분석결과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제 표본의 선택성이 편의를 주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 참여식에 대한 추정치와 이 추정치를 고려한 2단계 노동공급함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9> 노동공급함수에 대한 회귀식(2단계)

	도구변수법		OLS		외생변수취급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log(시간당 임금) 도구변수: 서울거주 여부	-2.502	(-0.64)	3.763**	(36.01)	2.301	(0.85)
$\hat{\lambda}$	-52.085	(-1.29)	1.153	(0.07)	-67.782	(-1.60)
2세 미만 자녀유무	-7.230**	(-2.66)	-5.361**	(-2.70)	-0.459	(-0.21)
3~5세 미만 자녀유무	-2.148	(-1.32)	-1.177	(-1.02)	-2.032	(-1.73)
6~18세 미만 자녀유무	3.824*	(2.47)	3.085*	(2.55)	2.418	(1.83)
타 가구원 소득	-0.012*	(-1.99)	-0.003	(-1.42)	-0.0000 2	(-0.00)
어머니 학력	-0.117	(-0.17)	-0.934**	(-6.25)	-0.518	(-1.21)
어머니 연령	2.244**	(2.83)	2.733**	(5.00)	-0.414	(-0.45)
연령 ²	-0.024**	(-2.85)	-0.030**	(-5.25)	0.0024	(0.25)
가구주	9.861	(1.17)	-2.855	(-1.39)	-2.270	(-0.81)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5.738**	(-2.53)	-7.609**	(-5.25)	4.612	(1.51)
보육비용	-39.799* *	(-3.16)	-22.129* *	(-4.97)		
보육비용					-1.796	(-0.70)
상수	24.815	(0.70)	-16.220	(-0.89)	62.470	(1.64)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우선 표본의 선택성을 고려한 부분인 $\hat{\lambda}$ 에 대한 t값 혹은 F test를 통해 표본의 편의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유의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Cogan(1980)이 언급한 경력변수로 인한 과소추정문제나 Mroz(1985)가 제기한 표본편의에 대한 고려는 노동공급함수 추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그 시간당 임금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세 이하의 자녀유무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타 가구원 소득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수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6세 이상의 자녀의 존재는 오히려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핵심이 되는 보육비용의 회귀식에서 도출된 보육비용의 추정치(fitted value)는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IV-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육비용이 여성의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과는 달리 보육비용이 노동공급시간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8>의 표본선택모형 2단계 추정의 결과는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한 황윤재·최강식(1999)과 유사하다. 물론 황윤재·최강식(1999)은 자녀의 보육비용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윤재·최강식(1999)은 논문의 모수추정법 부분에서 표본의 선택성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하에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의 노동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타 가구원의 소득과 8세 미만의 아이의 존재 유무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음(-)의 영향을 유의적으로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문제인 로그임금변수의 내생성은 <표 IV-8>의 OLS와 도구변수법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이 지방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지만 주당근로시간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서울거주 더미변수를 로그 시간당 임금의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OLS 결과와 다르다. OLS 회귀분석에

서는 로그 시간당 임금이 노동공급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나머지 변수들은 그 부호가 정성적으로는 도구변수법(IV)에 의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의 내생성을 무시하고 OLS 모형을 사용하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이 시간당 임금에 대해 양(+의 탄력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임금이 증가할 때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내생성을 교정한 도구변수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성의 노동공급시간은 자신의 임금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세 번째로 보육비용의 외생성에 대한 검증은 도구변수법과 보육비용을 외생변수로 사용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육비용을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로그 시간당 임금 대신 서울거주여부 더미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결과, 모든 변수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Hausman 검정의 결과 $\chi^2(9) = 3461.1$ 로 보육비용을 내생변수로 처리한 경우와 계수값이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보육비용이 근로시간의 설명변수로서 외생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노동공급의 설명변수인 로그 시간당 임금과 보육비 지출이 모두 내생적인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도구

27) IV와 OLS 계수들간의 차이가 체계적인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Hausman test를 시행한 결과 $\chi^2(11) = 2.32$ 으로 두 회귀추정식의 계수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H_0)을 기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로그 시간당임금과 교육수준은 도구변수법을 사용한 경우 그 계수의 유의성과 부호가 변화하였다. 비록 전체 변수들의 계수가 체계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로그 시간당 임금의 내생성을 교정한 도구변수법을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량이 임금의 변화에 유의적이지 않음을 보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수법과 2SLS를 이용하여 교정한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을 통해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당 임금은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자녀의 나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0> 자녀연령별 노동공급함수 회귀식(도구변수법, 2SLS)

	자녀 2세 이하	자녀 3~5세	자녀 6~18세
	계수 (t 값)	계수 (t 값)	계수 (t 값)
log(시간당 임금)	4.423 (1.95)	3.987* (2.21)	-0.542 (-0.08)
λ	-58.129 (-0.75)	-38.552 (-0.99)	-72.363 (-1.10)
타 가구원 소득	0.005 (0.50)	0.0007 (0.27)	-0.011 (-0.81)
어머니 학력	-1.746** (-2.72)	-0.849* (-2.06)	-0.451 (-0.44)
어머니 연령	-0.158 (-0.11)	0.801 (0.81)	1.078 (1.09)
연령 ²	-0.002 (-0.18)	-0.009 (-0.86)	-0.013 (-1.20)
부모 동거 여부	3.427 (1.44)	-0.463 (-0.22)	2.051 (0.99)
가구주	-5.565 (-1.11)	-5.826 (-1.06)	2.332 (0.20)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808 (0.67)	0.152 (0.08)	-4.599* (-1.99)
보육비용	-32.466* (-2.23)	-27.681* (-2.05)	-18.461 (-1.73)
상수	75.309 (0.87)	29.781 (0.75)	63.451 (1.08)

주: λ 는 각 회귀식마다 자녀의 나이에 따른 표본의 추출에 따라 달리 계산된 것임.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2SLS 추정을 통해 보육비용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이하 자녀의 경우는 보육비용의 증가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6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음(-)의 계수값을 보이기는 하나,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로그 시간당 임금은 5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선택의 편이에 대한 교정항인 λ 의 계수값과 t 값으로부터 자녀의 전 연령에 걸쳐 표본선택의 편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식에 대한 추정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계수값들의 유의성도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비용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유의적으로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공급 시간 증대 양자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라. 전일제와 시간제의 다항로짓모형 실증분석(모형 II)

여성의 직업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용주가 초과근로시간을 제외하고는 노동시간을 직접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혼여성이 남성이나 미혼여성에 비해 가사와 양육에 대한 시간 배분을 자신의 일차적인 의무로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제 노동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된 시장에서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성노동의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두 번째 모형이다.

실증분석의 자료는 위 모형 I 의 경우와 같이 1998~2002년의 5개연도에 걸친 노동패널 자료이다. 다항로짓모형에서도 <표 IV-2>의 변수들이 동일하게 사용되며 그 외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전일제, 시간제로 분류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여성의 노동시간참여형태와 고용형태에 대한 변수의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표 IV-11> 시간제와 전일제 참여인원 및 비율과 주당 총노동시간

	전체 sample	1998	1999	2000	2001	2002
미취업	17,585 (75.75)	4,252 (81.91)	2,726 (58.36)	3,814 (85.02)	3,532 (78.06)	3,261 (75.10)
시간제	949 (4.09)	217 (4.18)	285 (6.10)	105 (2.34)	163 (3.62)	178 (4.10)
주당노동시간	34.45 (18.15)	36.92 (19.02)	30.66 (17.12)	35.70 (18.42)	36.73 (17.56)	34.68 (18.24)
전일제	4,681 (20.16)	722 (14.91)	1,660 (35.54)	567 (12.64)	815 (18.32)	903 (20.80)
주당노동시간	53.17 (17.74)	51.19 (19.71)	57.79 (20.79)	52.19 (14.95)	49.80 (16.05)	49.96 (14.2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자료: 노동패널

노동패널의 전일제와 시간제의 비율은 노동시간과도 관련이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의 평균 주당 총 노동시간은 34.45시간이며, 전일제는 53.17시간으로 주당 총 노동시간은 시간제가 약 20시간 정도 더 적다. 그러나 노동시장 참여율인 39.6%에 비해 시간제와 전일제를 합한 참여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 1999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참여인원을 시간제와 전일제로 나누어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노동패널 자료에는 개별문항으로 본인이 미취업상태인지, 취업했다면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 표시하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에 대한 답변에 의거하여 다항로짓모형을 구성하였고, 이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를 다 합쳐 전체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율과 비교해보면 전일제와 시간제를 합친 취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고용형태 중 전일제나 시간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노동패널상의 서로 다른 문항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참여율을 계산하는 것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근

<표 IV-12> 기혼여성의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장참여
(다항로짓 : 통제함수접근법)

	시간제		전일제	
	계수	(z 값)	계수	(z 값)
2세 이하 자녀유무	-0.697*	(-2.17)	-0.572**	(-3.25)
3~5세 자녀유무	-0.189	(-0.77)	-0.329*	(-2.27)
6~18세 자녀유무	0.718*	(2.17)	0.254	(1.37)
타 가구원 소득	-0.006**	(-5.57)	-0.002**	(-4.57)
어머니 학력	0.024	(0.57)	0.188**	(7.64)
어머니 연령	3.013	(1.38)	2.176*	(2.39)
연령 ²	-0.107	(-1.33)	-0.075*	(-2.27)
연령 ³	0.002	(1.29)	0.001*	(2.17)
연령 ⁴	-9.39e-06	(-1.27)	-6.17e-06*	(-2.09)
서울 거주 여부	0.458*	(2.25)	0.113	(0.93)
부모 동거 여부	-0.205	(-0.63)	0.111	(0.64)
가구주	-0.647	(-1.06)	0.504*	(2.04)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015	(-0.07)	-0.275*	(-2.28)
보육비용	-3.569**	(-3.37)	-4.207**	(-6.55)
\hat{u}_2	4.005**	(4.03)	4.277**	(7.37)
상수	-33.474	(-1.54)	-25.662**	(-2.83)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별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기
는 하나, 전일제와 시간제를 구분하는 근로시간의 임계점을 정하기
가 어렵고 노동시간에 대해 아예 대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간제와 전일제의 고용형태를 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표 IV-6>
의 노동시장참여식에서 이용한 설명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항
로짓모형을 회귀분석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에 가족구성과 관련된 변수들
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의 경우 보살핌이 필요
한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혼여성이 전일제로 시장
에 참여하는 확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6세에서 18세 사이의 보살핌
이 덜 필요한 자녀는 나이 어린 자녀에 비해 기혼여성에게 상대적
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율을 비
유의적으로나마 증가시킨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수도 기
혼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편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기혼여성 자신의 소득이 가계의
1차적인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일제 노동을 선호하게 된
다. 타 가구원의 소득 역시 전일제 노동참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는 증
가하며 연령은 4차함수로 추정할 때 노동시장참여 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30대 후반에 전일제 참여가 정점을 이루게 된다.

통제함수접근법을 다항선택모형에 이용한 위의 분석에서 보육비
용이 크면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
간당 보육비용이 높을수록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가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hat{\beta}_2$ 역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보육비용
이 외생적인 변수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시간제 노동의 경우 가족 관련 변수들은 전일제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만 계수들의 유의성은 작다. 2세 이하의 경우는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으나, 3~5세 자녀가 있으면 기혼여성의 시간제 노동시장 참여율은 감소하나 그 유의성은 떨어진다. 즉 집중적인 양육서비스가 요구되는 영유아가 있는 기혼여성은 전일제 노동은 매우 꺼리나 시간제 노동시장 참여는 전일제 노동참여만큼 저조하지는 않다. 6세 이상의 자녀 존재는 유의적으로 시간제 노동참여율을 증가시킨다. 보육비용변수는 전일제 노동참여에 비해 시간제 노동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다. 타 가구원 소득은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기혼여성은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가적인 소득보다는 여가나 자녀보육을 선호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개별특성 중 교육수준은 시간제 노동참여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수경(2003)과 일치하는 결론으로 시간제 노동은 교육수준과 큰 관계가 없는 단순노동형태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시간제 노동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이 가구주인지 여부는 시간제 노동참여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혼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변수, 교육수준, 보육관련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만 시간제 노동시장 참여는 위의 변수들에 다소 둔감하게 반응한다. 기혼여성의 경우 시간제 노동과 미취업간에 뚜렷한 선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의 존재도 시간제 노동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

서 시간제 노동은 단절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의 보육비용은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완화가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는 영유아의 존재와 보육비용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전일제 노동참여 비율이 높아지므로 질 높은 여성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양육부담과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거시적인 생산성의 차원에서 남성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일제 노동참여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전일제의 경우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증가하며,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시간제 모두 남편을 중심으로 한 타 가구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소득층이 아닌 중·저소득층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며, 중·저소득층의 고학력 여성들이 전일제 시장에 참여하여 가계의 생계비를 벌거나 2차적인 수입원인 경우에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V. 자녀보육관련 정책제안

1. 여성노동공급의 보육비용 탄력성

IV장의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 노동시장 참여식의 계수로부터 구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시간당 보육비용에 대한 탄력성은 다음의 <표 V-1>로 요약할 수 있다.

<표 V-1>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보육비용 탄력성

전체표본	노동시장 참여식(프로빗)			시간제/전일제(다항로짓)		
	2세 이하	3~5세	6~18세	미취업	시간제	전일제
-0.04 (-0.81)	-0.442* (-2.05)	-0.484** (-4.66)	0.064 (0.77)	0.094** (3.99)	-0.59** (-3.37)	-0.69** (-6.55)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괄호 안은 z값.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보육비용의 전체표본 탄력성은 -0.04로서 비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세 이하와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그 탄력성 수치는 각각 -0.442, -0.484로 다소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는 커져 보육시설의 이용비가 비싼 경우, 보육비용의 증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의 보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²⁸⁾. 2세 이하의

보육비용 탄력성이 3~5세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2세 이하 자녀의 보육은 보육비 외에 탁아모에 대한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회귀분석 결과는 보육비용만을 포함한 것으로 2세 이하의 자녀에게 수반되는 총 보육비용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탄력성이 3~5세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6세 이상의 자녀 보육비용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간투자의 한계가치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며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에게 필요한 보육 및 교육의 내용이나 질은 어머니가 수행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원 등의 시설에 자녀를 보냄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시간제와 전일제 참여의 다항로짓모형의 경우, 전일제의 보육비용 탄력성은 -0.69로 유의한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제 역시 탄력성이 -0.59로 보육비용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형태 모두 보육비용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전일제의 보육비용 탄력성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탄력성 수치결과는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전일제의 경우가 시간제 노동의 경우보다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Jaumotte(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본선택모형의 2단계인 노동공급에 대한 보육비용의 탄력성은 <표 V-2>와 같다.

28) 이는 Jaumotte(2003)의 분석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이 크다는 OECD 국가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표 V-2> 기혼여성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

노동공급시간			
전체표본	2세 이하	3~5세	6~18세
-0.102** (-3.16)	-0.312* (-2.22)	-0.119* (-2.04)	-0.127 (-1.73)

괄호 안은 z값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은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음(-)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만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 수치는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보육비용 탄력성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즉 자녀의 보육비용은 여성의 취업결정에 보다 탄력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의 탄력성 추정수치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정부의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2세 이하의 자녀 혹은 3~5세 사이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6세 이상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성이 이차적인 소득원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므로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은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집중되는 것이 여성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시간제나 전일제 모두 자녀의 시간당 보육비용부담이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일제 노동참여자에 대해 보육비용의 탄력성이 더 크므로 시간제와 전일

제 중 전일제 취업모에게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를 클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한 보육비용 탄력성도 2세 이하의 경우 크게 나타나고 3~5세의 경우도 -0.119로 나타나고 있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자녀보육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취업률이 증가하고, 노동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타 가구원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녀보육비용 보조금의 효과 : 모의실험과 비용편익분석

현재 정부는 2008년까지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자녀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표 III-2>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04년에는 1층, 2층, 3층에게 각각 지원단가의 100%, 60%, 40%를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확대하여 2008년에는 1층부터 5층까지 각각 지원단가의 100%, 100%, 80%, 60%, 30%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5세 자녀의 경우 법정저소득층은 1층에 한하여 2004년 기준으로 13만 1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자녀보육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 중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2001년과 2002년 표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노동패널 중 2001~2002년 두 해의 표본을 이용하여 위의 소득계층에 따른 층별 분류를 시도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비 지원 단가를 산정하였다. 참고로 2001년과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층별 소득에 대한 구분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원 수별 월평균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다음과 같다.

<표 V-3> 최저생계비와 평균소득(2001~2002년)

(단위: 원)

		3인	4인	5인	6인
2001년	1층	790,000	875,000	958,000	1,042,000
	2층	950,000	1,050,000	1,150,000	1,250,000
	평균소득	1,192,615	1,412,487	1,554,365	1,853,889
2002년	1층	833,000	917,000	1,000,000	1,083,000
	2층	1,000,000	1,110,000	1,200,000	1,300,000
	평균소득	1,336,070	1,479,583	1,696,128	1,780,755

자료: 여성부

각 소득수준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2005년과 2008년 수준으로 확대될 때 자녀연령별로 기혼여성의 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률과 주당근로시간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2001년과 2002년 가구 소득에 근거한 지원비율과 본문에서 구한 탄력성 수치를 통해 살펴 본다. 소득계층 1과 2는 2001년과 2002년 각각의 기준을 사용하였고, 3, 4, 5층은 2001년과 2002년 도시근로가구의 평균소득의 50%, 70%, 100%를 계산하여 노동패널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층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각 소득계층과 자녀연령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 주당근로시간, 시간제 및 전일제 참여율을 노동패널의 2001년과 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였는데 소득층별 평균값은 다음의 <표 V-4>와 같다.

<표 V-4>에서 알 수 있듯이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모든 1~5층까지의 전 소득층에서 노동시장참여율과 주당근로시간 모두 현저히 감소한다.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2세 이하 자녀보다는 덜 하지만 노동시장참여율과 주당 근로시간이 전체 노동패널 층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모의실험을 위해 그 다음으로는 각 소득층별 자녀보육비용의 평균값을 구한다. 여기에 각 층별 정

부의 2001년과 2002년의 보육료 지원단가를 자녀 연령별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참여식, 노동공급시간, 시간제와 전일제의 다항로짓 회귀식으로부터 구한 탄력성 수치들을 이용하여 2005년과 2008년 지원계획을 실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표 V-4> 소득층별 노동시장참여율과 주당 근로시간(2001~2002년)

소득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기혼여성 노동시장참여율 (전체 평균)	0.393	0.448	0.388	0.409	0.458
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0.216	0.222	0.127	0.196	0.229
3~5세 자녀를 둔 경우	0.306	0.277	0.246	0.256	0.326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 (시간) (전체 평균)	19.73	24.61	20.05	21.36	23.98
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9.818	12.079	7.4366	9.5888	10.151
3~5세 자녀를 둔 경우	13.387	15.964	12.425	11.181	15.566

자료: 여성부

<표 V-5>로부터 노동시장 참여율, 주당근로시간, 시간제 혹은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비율은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실행계획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동시장참여율은 약 6~51%정도 증가하고, 주당근로시간은 4~36% 증가하며, 시간제 노동참여는 8~17%, 전일제 노동참여는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실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노동시장참여율은 6~68%, 주당근로시간은 2~48%,

<표 V-5> 자녀보육료 보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자녀연령	소득 2층	소득 3층	소득 4층	소득 5층
2005년 지원기준	노동시장 참여	2세 이하	0.222 →0.250	0.127 →0.192	0.196 →0.226	-
		3~5세	0.278 →0.302	0.246 →0.282	0.256 →0.271	-
	주당 근로시간	2세 이하	12.079 →13.135	7.437 →10.131	9.589 →0.633	-
		3~5세	15.964 →16.496	12.425 →14.142	11.181 →11.646	-
	시간제	전연령	0.0345 →0.0389	0.0452 →0.0531	0.0549 →0.0593	-
	전일제	전연령	0.1703 →0.1755	0.1877 →0.1969	0.1751 →0.1803	-
2008년 지원기준	노동시장 참여	2세 이하	0.222 →0.268	0.127 →0.213	0.196 →0.257	0.229 →0.248
		3~5세	0.278 →0.318	0.246 →0.294	0.256 →0.286	0.326 →0.345
	주당 근로시간	2세 이하	12.079 →13.839	7.437 →11.030	9.589 →11.678	10.151 →10.744
		3~5세	15.964 →16.851	12.425 →14.715	11.181 →12.110	15.566 →15.913
	시간제	전연령	0.0345 →0.0419	0.0452 →0.0557	0.0549 →0.0637	0.0527 →0.0560
	전일제	전연령	0.1703 →0.1789	0.1877 →0.2000	0.1751 →0.1854	0.2121 →0.2160

시간제 노동참여는 6~23%, 전일제 노동참여는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층에 변화가 없는 것은 소득1층의 경우에는 2002년에 이미 지원단가의 100%가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상의 시뮬레이션은 자녀보육료 보조금 혜택의 증가가 기

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주당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과 행태 (behaviour)를 향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미 도출된 탄력성에 의해 계산된 것이므로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보육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예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보육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 전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노동패널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5세까지의 자녀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이상 더 일하는 경우, 2005년의 보육료 지원하에서는 보육료 보조금 지급은 약 12억 5천만원이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로 인한 평균소득의 증가액²⁹⁾은 14억 6천만원이 된다. 2008년 지원기준으로 할 경우, 보육료 지원의 비용은 24억 9천만원이며, 평균소득의 증가는 31억 5천만원이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보육료 자료로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단순 계산해 보면³⁰⁾ 소득 1층을 제외한 다른 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용은 2005년 지원기준으로 926억원이며, 그로 인한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와 평균소득의 증가는 1,083억원이다. 2008년 지원기준으로 비용은 1,845억원이며, 편익은 2,335억원이 된다. 따라서 자녀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기

29) 자녀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편익은 단순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로 인한 평균소득의 증가 외에 다른 간접적인 사회적 후생의 증가도 포함해야 하나, 간접적인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수량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평균소득의 증가를 보조금 지급의 편익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편익을 최소한도의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30) 비용-편익은 소득층별 평균소득, 보육료 지원액, 노동시장참여율 증가분 등을 전부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며, 논의의 간결화를 위해 자세한 계산 과정 및 중간 단계의 결과는 생략하나, 이를 원하는 독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자녀가 5세 이상의 연령에 접어든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협의의 의미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3. 취업모의 자녀보육시설 유형에 대한 수요분석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노동시장 참여의 결정과 보육시설 이용을 동시에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어떤 종류의 보육시설을 선호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시설의 유형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기타, 비공식적인 탁아모의 이용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는 공식적인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을 제외한 놀이방, 탁아방 등의 기타 시설을 의미한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탁아모에 대한 이용이 일정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탁아모로 대표되는 비공식적인 보육과 다른 공식적인 보육 및 교육시설간의 대체성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6> 자녀연령별 유형별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

	자녀 2세 이하		자녀 3~5세		자녀 6~9세	
	이용자 수	%	이용자 수	%	이용자 수	%
어린이집	51	2.44	386	15.23	51	1.64
유치원	12	0.58	521	20.56	123	3.97
학원	10	0.48	439	17.32	1,752	56.48
기타	1,765	84.61	1,200	39.46	990	31.91
탁아모	248	11.89	188	7.42	186	6.00
합계	2,086		2,534		3,102	

자료: 노동패널.

<표 V-7> 보육시설과 탁아모 이용 결정식(bivariate probit)

	보육시설		탁아모	
	계수	(z 값)	계수	(z 값)
2세 이하 자녀유무	-0.481**	(-5.83)	0.360**	(4.12)
3~5세 자녀유무	0.638**	(8.66)	-0.027	(-0.35)
6~9세 자녀유무	0.361**	(4.15)	-0.094	(-1.04)
10~18세 자녀유무	-0.049	(-0.75)	-0.205**	(-2.70)
가구원 소득	0.001**	(6.89)	0.0003**	(3.06)
어머니 학력	0.032**	(3.36)	0.034**	(3.51)
어머니 연령	0.008**	(2.63)	0.013**	(4.16)
서울 거주 여부	-0.121*	(-2.21)	0.143*	(2.38)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190**	(3.20)	0.002	(0.03)
가구주	0.175	(1.38)	0.362**	(2.88)
부모 동거 여부	0.030	(0.40)	0.683**	(9.60)
상수	-0.384	(-1.80)	-2.471**	(-10.75)
rho			-0.358	

주: $\chi^2(1) = 87.1974$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우선 비공식적인 탁아모의 이용여부가 다른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과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이 어린 자녀를 둔 경우, 탁아모 이용과 보육 및 교육시설의 이용여부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가정하에 bivariate probit 모형으로 두 식을 추정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보육시설은 3~9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경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2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탁아모는 이와 반대로 2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많이 이용되고 있고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탁아모의 이용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소득이 높

을수록 보육시설의 이용도나 탁아모 이용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나 연령 또한 보육시설과 탁아모 이용에 모두 양(+)¹⁾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거주 여부 더미변수는 보육시설에는 음(-)의 계수값을, 탁아모 이용에는 양(+)²⁾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거주 기혼여성이 탁아모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반대로 비서울거주 기혼여성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보육시설보다는 탁아모 이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가 많으면 탁아모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탁아모 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하는 부모가 탁아모의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보육시설 이용은 부모 동거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탁아모 사이의 상관성(correlation) 계수인 ρ 의 값은 -0.358이고, $\rho = 0$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증의 $\chi^2(1) = 87.1974$ 로 나타나 보육시설과 탁아모 이용간에 강한 대체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탁아모를 또 다른 하나의 대체 보육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자녀의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7>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나 탁아모 이용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나 가구주인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탁아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아모와 어린이집간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2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이 어린이집보다는 탁아모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 V-8> 2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유치원 기준)

	어린이집	학원	기타 시설	탁아모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가구원소득	-0.001 (-0.77)	-0.007 (-1.84)	-0.002 (-1.26)	-0.0002 (-0.13)
어머니 학력	0.136 (0.97)	0.093 (0.48)	0.064 (0.51)	0.178 (1.39)
어머니 연령	0.036 (0.72)	0.0005 (0.01)	-0.004 (-0.09)	0.042 (0.91)
서울 거주 여부	-0.376 (-0.49)	0.785 (0.84)	-0.336 (-0.50)	0.023 (0.03)
부모 동거 여부	21.248** (28.0)	-8.324 (-0.00)	22.467** (29.08)	23.390** (29.86)
가구주	20.449** (26.7)	-9.384 (-0.00)	21.322** (27.26)	20.846** (25.60)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208 (-0.42)	0.614 (0.91)	-0.324 (-0.74)	-0.790 (-1.74)
어머니취업 여부	1.584* (2.27)	1.044 (1.16)	-0.817 (-1.31)	1.257* (1.97)
상수	-1.575 (-0.52)	-1.863 (-0.44)	5.349 (1.96)	-0.240 (-0.09)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표 V-9> 3~5세 자녀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어린이집 기준)

	유치원	학원	기타 시설	탁아모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가구원 소득	0.0002 (0.65)	0.0002 (0.51)	0.00002 (0.06)	0.0004 (1.24)
어머니 학력	0.055 (1.93)	0.268 (0.88)	-0.007 (-0.27)	0.029 (0.83)
어머니 연령	0.022* (2.20)	0.004 (0.36)	0.003 (0.32)	0.028* (2.35)
서울 거주 여부	0.792** (4.49)	0.450* (2.39)	0.614** (3.72)	0.672** (2.95)
부모 동거 여부	0.504* (2.10)	0.053 (0.20)	0.121 (0.53)	1.442** (5.43)
가구주	-0.332 (-0.76)	-0.798 (-1.45)	-0.798 (-1.86)	0.462 (1.00)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201 (1.63)	0.223 (1.74)	0.230* (2.08)	0.591** (3.75)
어머니 취업 여부	-0.528* (-3.69) *	-0.916* (-5.93) *	0.923** (-7.11)	0.465* (2.46)
상수	-1.528* (-2.35)	-0.508 (-0.74)	0.718 (1.21)	-3.937** (4.61)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에 취업여성은 탁아모와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 시간의 보육이 필요한 취업여성들은 유치원에 비해 탁아모나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와 달리 3~5세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은 탁아모를 어린이집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학원은 유치원보다도 선호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세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차적인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원 중 일부가 장시간의 보육을 담당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단시간의 예체능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업중인 기혼여성들이 장시간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탁아모나 어린이집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가구의 총소득이 높으면 비유의적이거나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나 탁아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보육비용이 어린이집 보육비용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을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정시간의 보육은 유치원에서 수행하고 그 나머지는 같이 동거하는 부모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탁아모의 많은 수가 동거하는 부모이므로 부모가 동거하는 경우, 탁아모의 이용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3~5세 사이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의 기혼여성이 취업한 경우, 비공식적인 탁아모의 이용이나 어린이집을 주요한 보육시설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당 보육비용이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싸고, 동시에 장시간의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녀의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설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탁아모에 대한 지원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탁아모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비공식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비용도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향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공식화된 가정탁아모 제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정탁아모의 이용비용이 비싼 경우, 현재와 같은 비공식적 탁아모제도가 수행하는 보육의 역할을 대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가정탁아모 제도의 육성으로 인한 효과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표 V-10> 6~9세 자녀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유치원 기준)

	어린이집	학원	기타 시설	탁아모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계수 (z 값)
가구원소득	0.0004 (0.35)	0.0008 (1.31)	-0.003* * (-4.42)	-0.0001 (-0.19)
어머니 학력	-0.089 (-1.25)	0.025 (0.63)	-0.011 (-0.26)	0.021 (0.44)
어머니 연령	-0.015 (-0.61)	0.026 (1.90)	0.024 (1.68)	0.042* (2.54)
서울 거주 여부	-0.524 (-1.13)	-0.013 (-0.06)	-0.191 (-0.82)	0.285 (1.03)
부모 동거 여부	0.652 (1.06)	0.569 (1.43)	0.803* (2.00)	2.080** (4.88)
가구주	-0.994 (-0.89)	-0.907 (-1.95)	-0.596 (-1.27)	0.145 (0.27)
초등3학년 이하 자녀수	0.004 (0.02)	-0.127 (-0.82)	-0.156 (-0.97)	0.403* (2.12)
어머니 취업 여부	0.997** (2.81)	0.429* (2.11)	0.353 (1.68)	1.059** (4.14)
상수	0.193 (0.12)	1.213 (1.37)	1.944* (2.13)	-3.063** (-2.76)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는 5% 유의수준에서 계수값이 유의함을 의미.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6~9세 사이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역시 탁아모나 어린이집을 다른 시설보다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이들은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탁아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방과후 보육을 담당해 줄 시설이 취업모에게는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탁아모나 어린이집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책임 있는 방과후 교육(afterschool) 프로그램이 기혼여성의 취업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여성들은 자녀의 나이를 막론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모두 어린이집이나 탁아모를 자녀의 보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탁아모를 보다 공식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기존 보육시설의 보육시간 연장 등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비용에 대한 탄력성이 자녀가 어릴수록 크게 나타나므로 가정탁아모 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할 경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탁아모비용을 현행의 비공식적 탁아모 제도의 비용수준으로 낮추어 줄 때만이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에 효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VI. 결 론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에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특히 자녀보육이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여부와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서 육아 및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II장의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III장에서 각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현황분석 및 외국의 사례연구의 결과물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혼재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자녀의 보육비용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현황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후 보육비용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축약형(reduced form) 방정식으로 구성하였다. 추

정과정에서 자녀의 보육 및 교육비용의 내생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함수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 모형과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다항선택모형을 구성하였다. 추정된 탄성치를 기준으로 가상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도 계산하였다.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의 1단계인 노동시장참여식과 시간제와 전일제 선택의 다항선택모형에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통제함수접근법을 이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자녀의 보육비용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어린 자녀의 존재 자체가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보육비용 부담도 기혼여성의 취업과 노동공급시간 증대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정 결과로부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6세 이상 특히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형태를 구분하여 볼 때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시장 참여의 경우, 모두 보육비용에 대해 유의적인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어 전일제든 시간제든 노동시장 참여에 보육비용의 부담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전일제의 경우 탄력성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력성의 수치는 노동시장 참여나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

의 탄력성 수치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비용부담이 기혼여성들의 근로시간 선택보다는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저소득층의 자녀 보육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나타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보육료 보조금 지급이 <표 V-5>에 제시하였듯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탁아모와 어린이집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여성은 탁아모를 어린이집보다 선호하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9세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취업여성은 어린이집과 탁아모를 타 보육 및 교육시설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은 장시간의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나 보육형태를 선호하며, 일하는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탁아모를 방과후 보육형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취업모에게는 장시간의 보육 및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매우 중요한 여건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 기혼여성을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공급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도 방과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유형에 대한 수요분석으로부터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보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탁아모 제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용만이 아니라 자녀를 보육하는 기관이 자녀의 보육시간을 늘려 주는 것이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가정탁아모 제도는 기혼여성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탁아모를 고용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의 보육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탁아모의 이용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이용한 비공식적 탁아의 형태로 그 비용도 천차만별이며 일반적인 보육시설에 비해 평균적인 비용은 매우 낮다. 따라서 가정탁아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가정탁아모의 시장가격이 현행의 일반적인 보육시설과 비슷하거나 높게 책정될 경우, 현재 비공식적 탁아모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탁아모를 통한 보육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보육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제도는 아무리 보육의 질이나 보육시간이 길다고 해도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탁아모의 이용에 대한 시장가격이 높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현재 비공식적 탁아모 이용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탁아모 이용제도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가정탁아모 제도의 육성과 도입은 바람직하나 상당한 정도의 보조금의 지급 없이 가정탁아모 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하기는 어려우며 정부가 가정탁아모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경우, 현재의 저렴한 비공식탁아모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의 수준보다 높이는 어려울 수도 있다.

자녀의 보육비 지출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향후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체 저소득층에 확대되는 경우와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만 지급될 때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전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가구의 소득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를 전제로 한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둘째, 자녀 보육지원제도의 하나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근로세 역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되기 전에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모의 실험이 필요한데 모의실험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과 도입 후의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초과수요 혹은 초과공급의 여부를 보육시설 형태별로 분석하는 접근이 본 논문의 분석에 더해진다면 전반적인 보육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 『여성인력과 생산성』, 2001년도 제2회 한국생산성학회 정책 세미나 발표논문, 2000.
- _____,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2001.
- 김미경, 주재선, 『고령화 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김우영,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취업률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_____,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김지경, 『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김지경 외,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 선진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mimeo, 2004.
-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성지미·차은영,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2001.
- 성호영·김민경,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성립, 『미취업 여성의 미취업 원인에 대한 연구: 자발적 미취업과 비자발적 미취업 여성의 차이』,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철인, 『고용효율성 재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11.

- 장지연·김지경,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장지연·부가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장지연·호정화,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 한도숙,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0.
- 현진권, 『보육제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4. 8.
- 황수경,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2-01, 한국노동연구원, 2002.
- _____,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황윤재·최강식,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비모수적 접근-』, 『계량경제학보』, 제10권, 제1호, 1999, pp. 35~69.

American Business Collaboration for Quality Dependent Care, *Credit Where Credit is Due: Lower Your Taxes or Increase Your Refund to Help Your Family*, 2003, <http://www.abcdependentcare.com/docs/tax-credit-book-2003.pdf>.

Arellano M. and Cemfi, Discrete Choices with Panel Data, *Investigaciones Economicas*, Vol. 27(3), 2003, pp. 423~458.

Arellano M. and B. Honore, "Panel Data Models: Some Recent Development," in *Handbook of Econometrics*, Vol. 5, Ch. 53, J.J. Heckman and E. Leamer eds., 2001.

- Becker, G.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Vol. 75, 1965, pp. 493~517.
- Bertelsmann Foundation, *International Reform Monitor*, April 2000, Oct. 2000, April 2001, Oct. 2001, April 2002, 2003, <http://www.reformmonitor.org>.
- BlauDavid and Janet Currie, Preschool, Day Care and After School Care : Who's Minding Kids?, *Working Paper*, 2003.
- Blundeli and Walker, Modelling the Joint Determination of Household Labour Supplies and Commodity Demands, *Economic Journal*, Vol. 92, 1982, pp. 351~364.
- Blundell, Richard, Alan Duncan, Julian McCrae and Costas Meghir, Evaluating In-Work Benefit Reform :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in the UK,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llege London, 1999.
- Browning M., Children and Household Economic Behaviour,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0, 1992, pp. 1434~1475.
- Bureau of Labor Statistics, *Women in the Labor Force: A Databook*, Feb. 2004, <http://www.bls.gov/cps/wlf-databook.pdf>.
- Canada Revenue Agency, *Canada Child Tax Benefit Payment Amounts*, http://www.cra-arc.gc.ca/benefits/cctb_payments-e.pdf.
- Cantor, D, Waldfogel, J., Kerwin, J., Mckinley Wright, M., Levin, K, Rauch, J., Hagecty, T., and Stapleton-Kndela,

M., *Balancing the needs of families and employers: Family and Medical Leave Surveys*, Rockville, MD: Westat 2001.

Carrasco R., Binary Choice with Binary Endogenous Regressors in Panel Data : Estimating the Effect of Fertility on Female Labour Participation, *Working Paper 9805*, Universitat Pompeu Fabra, Barcelona, 1998.

Chamberlain, Gary, "Panel Data," in *Handbook of Econometrics*, Vol.2, Ch.22, Z. Griliches and M.D. Intriligator eds., 1984.

Chevalier, A. and T. K. Viitanen,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November, 2002, pp. 915~918.

Cogan J., Married Women's Labor Supply : a Comparison of Alternative Estimation Procedures, in J.P. Smith, ed. *Female Labor Supp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 90~118.

Connelly, R.,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1), 1992, pp. 83~90.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Enhancing Choice and Support for Parents*, Jan. 2003, http://www.hm_treasury.gov.uk/media/120/3A/worklife_balance0103_chap1to3.pdf.

_____, *Maternity Rights: Babies due on or after 6 April 2003, A Guide for Employer and Employees*, Jan. 2003,

- [http://www.dti.gov.uk/er/individual/mat rights-pl958.pdf](http://www.dti.gov.uk/er/individual/mat%20rights-pl958.pdf).
- _____, *Parental Leave: A Short Guide for Employer and Employees*, Feb. 2004, <http://www.dti.gov.uk/er/parental.pdf>.
- _____, *Flexible working - the right to request and the duty to consider: guidance for employers and employees (PL520)*, Feb. 2003, <http://www.dti.gov.uk/er/individual/flexwork-pl520.pdf>.
- Europa Missoc, *Comparative Tables on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Economic Area*, 2003,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missoc/2003/d_part9_en.htm.
- _____, *Family Benefit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Mossoc-info No. 1, 2002, http://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2002/germany_en.pdf.
- Falzone, J. S., "Labor Market Decisions of Married Women: With Emphasis on "Part-time" Employment,"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Vol. 6, No. 4, 2000, pp. 662~671.
-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Annual Economic Report for 2004*, 2004, <http://www.bmwi.de/Redaktion/Inhalte/Pdf/jwb-2004-en,property=pdf>.
- Gelbach, J. B.,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1, 2002, pp. 307~322.
- Gupta, D. and N. Smith, Children and Career Interruptions :

the Family Gap in Denmark, *Economica*, vol. 69, Issue 276, 2002, pp. 609~629.

Heckman, J. J.,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4), 1974, pp. 679~694.

Heckman, J. J., "Effects of Child-Care Programs on Women's Work Effor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Supplement, 1974, pp. 153~161.

Heckman, J.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979, pp. 153~161.

Heckman, J. J. and T. MaCurdy, "Labor Econometrics," in Z. Griliches and M. Intriligator eds, *Handbook of Econometrics*, Vol. 3, 1985.

Heymann, J., *The Widening Gap: Why America's Working Families are in Jeopardy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New York: Basic Books, 2000.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Employment Insurance and Maternity, Parental and Sickness Benefits*, <http://www.hrsdc.gc.ca/en/ei/types/special.shtml>.

ILO, *Laborsta Internet*, <http://laborsta.ilo.org>.

Jaumotte 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76, OECD, 2003

Inland Revenue, *Claiming Guardian's Allowance*, Guardian's Allowance Notes Booklet, 2003, http://www.dss.gov.uk/advisers/claimforms/bg1_notes_apr03.pdf.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he New Tax Credits*, Briefing Note No. 35, 2003, <http://www.ifs.org.uk/bns/bn35.pdf>.
- Killingsworth, M. R., *Labor Supp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Killingsworth, M. R. and J. J. Heckman, "Female labor supply: a survey,"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I, O. Ashenfelter and R. Layard (eds.), Amsterdam: North-Holland, 1986, pp. 102~204.
- Lewbel, Arthur, "Simple Estimators For Hard Problems : Endogeneity in Discrete Choice Related Models", *Working Paper*, Boston College, 2004.
- Manning, W. G., Duan, N. and W.H. Rogers, "Monte Carlo Evidence on the Choice Between Sample Selection and Two-Part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35, 1987, pp. 59~83.
-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The Rights of Parents of Small Children in Norway*, Handbook Q-0867 E, English 2000, <http://odin.dep.no/bfd/engelsk/publ/handbooks/004071-120005/dok-bn.html>.
- Mroz, T., "The Sensitivity of an Empirical Model of Married Women's Hours of Work to Economic and Statistical Assumptions," *Econometrica* 55, 1987, pp. 765~799.
- National Academies Press, *Working Families and Growing Kids: Car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2003, <http://www.books.nap.edu>.
- National Child Benefit, *The National Child Benefit-Progress*

Report: 2002, Jul. 2003, http://www.nationalchildbenefit.ca/ncb/NCB-2003/ncb-report_2002_e.pdf.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http://www.rfv.se/english/pdf/sfb03e.pdf>.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Statistical Annex*, 2004, <http://www.oecd.org/dataoecd/42/55/32494755.pdf>.

Robinson C. and N. Tomes, More on the Labor Supply of Canadian Wome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8, 1985, pp. 156~163.

Rosenzweig and Wolpin, Life-Cyc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 Causal Inferences from Household Model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8, No. 2, 1980, pp. 328~348.

Ross Phillips, K., *Who knows about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Projec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2002b.

Ruhm, C. J.,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Issue 1, 1998, pp. 285~317.

Sawhill, I., and Thomas, A., *A Tax Proposal for Working Families with Children* (Welfare Reform and Beyond Brief no. 3),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1.

Sleebos J.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 Facts and Policy Response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 OECD, 2003.

- Smeeding, T.M., Ross Phillips, K., and O'Connor, M., *The EITC: Expectation, Knowledge, Use, and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JCPR Working Paper), Chicago: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2000.
- Social Security Online,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2002, <http://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2002-2003/asia/japan.pdf>.
- Statistics Canada, *Benefiting from Extended Parental Leave*, The Daily, Mar. 21, 2003, <http://www.statcan.ca/Daily/English/030321/d030321b.htm>.
- Statistics Canada, *Women in Canada: Work chapter updates 2003*, Mar. 2004,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9F0133XIE/89F0133XIE_2003000.pdf.
- Statistics Sweden,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04*, 2004, <http://www.scb.se/templates/tableOrChart...75855.as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2003 - Demographic Trends*, http://www.undp.org/hdr2003/indicator/pdf/hdr03_table_5.pdf.
- Wales, T. and A. D. Woodland, "Sample Selectivity and the Estimation of Labor Supply Function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1, 1980, pp. 437~468.
- Wang Y.J. and W.K. Andrews,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57, 1993, pp. 277~318.
- Wooldridge, Jeffrey,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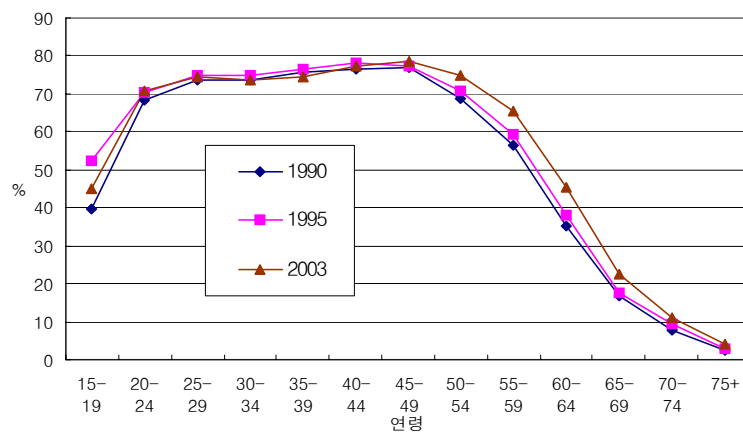
<부록> 주요국의 자녀보육 지원제도

1. 미 국

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미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부도 1]), 30대 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줄어들기는 하나 30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여 50대에 감소하는 ‘고원형’ 혹은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시기에 따라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40대 후반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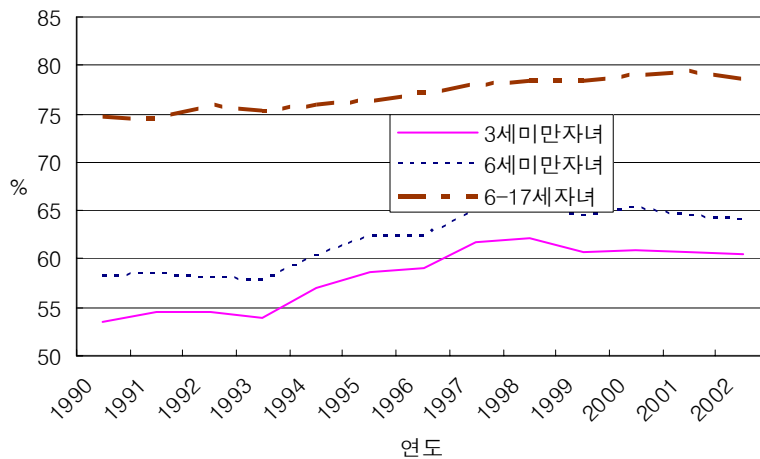
[부도 1] 미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한편 [부도 2]를 통하여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녀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3세 미만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7세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다. 이는 어린 자녀의 보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3세 미만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7세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 동안 자녀 보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정도는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도 2] 미국 여성의 자녀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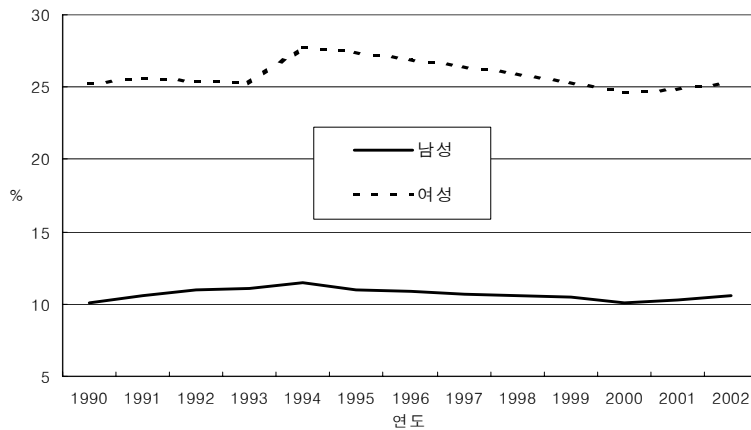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Women in the Labor Force: A Data Book*, Feb. 2004.

미국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시

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다. 2002년의 경우 전체 근로 여성 중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의 비율은 25.3%로 남성이 10.6%인 것과 비교된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이 남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에 조금 다가섰다([부도 3]).

[부도 3] 미국 성별 시간제근로 비율의 추이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Women in the Labor Force: A Data Book*, Feb. 2004.

나. 자녀보육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 자녀및부양가족부양 세액공제와 부양가족 부양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1954년부터 세법을 통한 근로자 부모의 자녀보육비용 세금감면제도가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자녀및부양가족부양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와 ‘고용주수혜 부양가족 부양지원프로그램(Employer-provided 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

DCAP'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제도들은 그 혜택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혜택이 미치는 가구의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CDCTC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13세 미만의 부양가족,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나 기타 부양가족(나이 불문)을 위하여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의 세대만 적용 가능하다. 즉, 동 제도의 대상가구가 되려면 적어도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다른 배우자는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또 보육비용은 반드시 근로와 관련되어야 한다. 즉, 보육비용을 위하여 근로를 하거나 구직중이어야 한다.

2004년 기준으로 CDCTC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녀보육비용의 총액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3천달러,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6천달러이다. 한 세대당 자녀보육비용의 35%를 세액 공제할 수 있고, 이 비율은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20%까지 감소한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명의 자녀는 1,050달러, 2명 이상의 자녀는 2,100달러이다. 따라서 자녀보육비용으로 1년에 자녀 1인당 3천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실제 자녀보육비용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1999년의 경우 한 가구 평균 자녀보육비용은 주당 76달러, 연간으로 3,952달러였다.

CDCTC의 세액공제액은 기본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는 세대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9년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은 보육비용은 620만 가구에 26억 7,500만달러로 가구당 평균 세액공제액은 430달러였다. 동 제도의 세액공제가 환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1만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역진적인 것이었다. 가장 낮은 5분위 소득층 위의 소득층 대

부분에 대하여는 누진적이었다. 1997년의 데이터를 통해 동 제도로 인한 세액공제의 가구소득별 구성을 보면, 연간 조정총소득 2만달러 미만의 가구가 10%, 2만달러 이상~5만달러 미만 소득을 가지는 가구가 42%, 5만달러를 넘는 소득의 가구가 48%였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부양가족 지원제도인 DCAP는 CDCTC와는 조금 다르다. DCAP는 자녀를 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주관하에 동 근로자가 자녀보육비용을 위하여 5천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 또는 주(州)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인 부모와 그 고용주는 자녀보육비용을 위한 근로자의 면세소득에 대하여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의료보장(Medicare) 세금인 사회보장세(Payroll Taxes)도 면제받는다. 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전소득은 근로자인 부모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는 동안 반드시 자녀보육비용에 쓰여야 한다. 단, 근로소득이 적어 세부담이 없는 근로자 부모의 경우에는 동 제도에 의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DCAP 프로그램 연도를 1~12월의 1년 단위로 운영하나 개시 월은 변경 가능하다. 근로자인 부모는 동 제도의 프로그램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녀보육을 위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세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인 부모가 각 프로그램 연도 내에 면세된 세전소득을 자녀보육비용을 위하여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고용주에게 건네진다. 근로자인 부모는 프로그램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자녀보육비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DCAP로 근로자 부모에게 제공되는 면세소득의 유형은 현금보상, 바우처(vouchers), 일반 보육시설 또는 직장내 보육시설의 규정에 정한 유형과 같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고용주는 반드시 DCAP를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한다면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는 혜택 일체의 한 부분으로서 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격요건과 자녀보육 또는 부양가족 부양비용은 CDCTC의 경우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DCAP의 대상이 되는 자녀보육 또는 부양가족 부양비용은 보육기관, 직장내 탁아소, 가정내 보육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조부모, 삼촌, 숙모, 나이가 많은 어린이라도 스스로 세법상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자녀보육자가 될 수 있다. 2000년의 경우 동 제도에 들어간 연방정부 비용의 총액은 거의 1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같은 자녀보육비용으로 CDCTC와 DCAP를 모두 적용받을 수는 없다. CDCTC와 DCAP 중 어느 쪽이 지원혜택이 큰가는 가구소득과 한계세율에 따라 다르다. DCAP는 제한된 수의 고용주로부터 제공되고 그 지원혜택이 비교적 고소득층 가구일 때 CDCTC의 지원혜택보다 크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가구의 수가 CDCTC의 경우보다 적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이다. EITC가 하나의 직접적인 자녀보육 지원정책은 아니지만 저소득 가구, 특히 근로소득이 너무 적어 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CDCTC나 DCAP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자녀보육 비용 지원책이 되고 있다.

EITC는 197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세 번의 제도상의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86년의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제정으로 1987년부터 EITC 세액공제액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었다. 이어 1990년의 다원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제정으로 1991년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단계적으로 EITC 세액공제액이 50% 이상 증가하였고, 자녀 1명 이상을 둔 가구를 위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며, EITC는 더 이상 연방정부의 대부분의 보조금지급대상가구 가계수입조사 대상에 고려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993년의 다원예산조정법에 의하여 EITC 세액공제액은 199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또 50% 이상 증가하였고, 자녀가 없으면서 25세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적은 규모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도입되었다.

1999년을 기준으로 EITC에 들어간 연간총비용은 약 300억달러였으며 이 중 약 260억달러가 소득이 너무 적어 세 부담이 없는 자에게 환급된 것이었다. 가구당 평균세액공제액은 1,500달러였다. 몇 개 주에서는 주 나름대로의 EITC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은 연방정부의 세액공제율을 따르고 있다.

EITC에 대한 연구로서 대상 가구의 EITC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정도를 조사하여 그것이 가구의 특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한 Ross Phillips(2002b)의 연구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계 부모들은 그 밖의 저소득층 부모들보다 EITC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정도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EITC가 자녀보육 비용을 위하여 적용된 정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Smeeding 외(2000)는 EITC 대상 가구들이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극히 소수의 가구만이 자녀보육에 돈을 지출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단, 이 연구에는 일부 자녀보육비용을 교육의 범주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자녀를 가진 가구를 위한, 환급가능하지 않은 세액공제제도로 2001년 이전까지는 세부담이 없는 가구의 경우 환급이 되지 않았다. 2001년 법개정으로 향후 10년간 CTC의 세액공제액이 100% 증가(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이 500달러에서 1천달러로 증가)되었고 세부담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Sawhill과 Thomas(2001)의 분석에 의하면 2001년의 경우 CTC로 인한 저소득 가구당 평균 연간 환급액은 540달러였다. 이러한 최근의 제도변화로 인하여 연간소득이 3만 5천달러를 넘는 대부분의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되나 주로 연간소득이 1만~3만 5천달러인 가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ITC와 마찬가지로 CTC도 세액공제된 금액이 바로 자녀보육비용으로 연계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구들은 CTC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가족휴가제도

미국은 휴가에 대한 정책을 주로 고용주의 재량에 맡겨왔기 때문에 가족휴가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많은 공공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1993년에 ‘가족및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출산휴가법이 적용되었다.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휴가(Family Leave)란 자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일반적인 여성의 출산휴가 외에도 아버지인 남성의 출산휴가, 아픈 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휴가, 자녀양육처를 구하기 위한 휴가를 포함한다.

1993년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몇 개 주에서만 가족휴가법이 있어서 해당 주의 일부 부모에게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었다. 이들 주의 가족휴가법은 주에 따라 법의 시행일자, 휴가 실시 대상 기업의 유형과 규모, 휴가기간, 가족휴가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재직임기 및 근로시간이 다양했다.

또한 1993년 이전까지 장애인 출산여성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한 유급임시휴가를 쓸 권리를 규정한 ‘임시장애보장법’(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laws)이 있는 주들도 있었다. 이들 주에서 고용주는 보통 6주(인공분만의 경우 8주) 동안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비용을 보상받았다. 1978년에 ‘임신장애인법’(pregnancy Disability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는 출산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이를 기업과 주정부가 우선으로 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가족및의료휴가법(FMLA)’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에서 실시된 가족휴가법 또는 ‘장애인출산휴가법’의 수와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재직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쓸 권리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시간제 여성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근로자의 수는 그보다도 더 적었고 이 경우도 시간제 근로자와 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더욱 적었다.

1993년 FMLA가 제정되면서 여성 및 남성의 출산휴가 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전 시간 근로자 거의 대부분(약 95%)이 재직이 보장되는 가족휴가, 즉, 여성 및 남성의 출산휴가, 신생아나 입양자녀를 위한 육아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휴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과거 1년간 1,250

시간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나 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가족휴가를 얻을 수 있는 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Cantor 외(2001)의 분석에 의하면, FMLA로 인한 가족의료휴가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자는 전체 민간기업 근로자의 약 60%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약 25%는 근로시간 또는 근로경력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실질적인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망라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에 대한 가족의료휴가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자의 비율은 약 75%이나, 이 가운데 약 60%만이 실질적인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MLA는 그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넓지 못하다는 점 외에 규정한 휴가기간이 12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규정한 휴가가 무급휴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FMLA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휴가의 기간도 더 길고 일반적으로 휴가기간 동안 최소한의 일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료휴가의 적용 대상자가 되는 여성은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휴가 사용과 더욱 긴 휴가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출산 전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가가 무급인 것은 여성이 가족휴가를 얻거나 필요한 만큼의 휴가를 얻는 데 장애가 된다고 나타났다.

휴가의 적용 대상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무급이며 그 기간도 짧은 상황에서 미국의 출산여성들이 다른 나라들의 출산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빨리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어찌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에서는 출산여성의 5%만이 출

산 후 3개월 이내에 직장에 복귀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은 출산 여성의 3분의 1이 3개월 이내에 직장에 복귀하고 있다. 출산여성의 반 정도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은 스웨덴이 15개월 이내, 독일이 24개월 이상, 영국이 36개월 이상인 데 비하여 미국은 4~6개월 이내이다.

청년층에대한국가추적조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의 데이터를 통해 보면 출산휴가의 적용대상 범위와 사용은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졸 미만의 학력을 소지한 출산여성의 경우 다른 출산여성보다 고용유지가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쓸 권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고 유급휴가를 받을 가능성도 적으면서 출산 후 6주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FMLA에 대한 조사 결과, FMLA에 근거하여 12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출산여성과 남성(아버지)들이 12주의 휴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의 피고용인에 관한 Westat조사(Westat Survey of Employees) 결과, 실제 사용한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들의 40%가 6주에서 12주 사이, 31%가 6주 미만, 29%는 12주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의료휴가제도

미국에서는 FMLA에 의하여 가족휴가 외에 의료휴가(Medical Leave)도 쓸 수 있다. 의료휴가는 근로자가 자신의 심각한 병환이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병환을 위하여 쓰는 휴가이다. 의료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휴가기간은 연간 12주로 제한되어 있고 무급이다. 따라서 가족 및 의료휴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휴가 적용 대상의 범위가 기존에 적용을

받지 못하던 일부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됐으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광범하지 않고 유급휴가도 아니었다.

1999년의 경우 민간부문 근로자의 47%가 유급의료휴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비율은 직업의 특성과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전문직 및 기술직, 기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9%만이 유급의료휴가를 받지 못한 것에 반하여 생산직 및 서비스직 근로자는 62%가 유급의료휴가를 받지 못했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1). 그리고 Heymann(2000)의 연구에 의하면 유급의료휴가를 받지 못한 부모는 유급의료휴가를 받은 부모보다 아픈 자녀를 위하여 집에 머무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녀보육을 위한 보조금(grant or subsidy)

미국은 1996년 ‘개인책임및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을 계기로 자녀보육 지원을 위한 연방기금운용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녀보육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세 가지 기금운용(funding) 흐름인 자녀보육발전 구역보조금(Child Care Development Block Grant), IV-A위험노출아동보호(Title IV-A At-risk Child Care), IV-A기금운용(IV-A Funding)이 하나의 새로운 구역 보조금인 ‘자녀보육및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으로 통합되었다.

CCDF를 통하여 자녀보육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이고 그 부모 중 한 명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재학중 또는 훈련중이거나 보호 서비스(protective service)가 필요한 상태여야 한다.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은 해당 가구가 속한 주의 소득 중앙값(median)의 85% 정도가 되어야 하나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이 가구 소득 한계점을 더 낮출 수도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

CCDF는 세 가지의 별도 기금운용 체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자녀보육과 관련된 것은 재량이 허용되는 기금으로 ‘개인책임및 근로기회조정법’ 제정 이전의 자녀보육발전구역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의회가 동 보조금의 일정한 용도에 대한 구성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자녀보육의 질적 향상에 1억 7,150만달러, 영아 및 유아의 보육에 9,930만달러, 교육 및 기술 지원, 연구에 990만달러, 자녀보육 자원 및 연결, 학령기 자녀보육, 자녀보육정보 시스템구축에 1,900만달러가 할당되었다.

CCDF를 통하여 자녀보육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상 가구에 대하여는 바우처(voucher)와 같은 증권이나 자녀보육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녀의 부모는 각 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자녀보육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정 자녀보육 서비스 공급자에는 가족이나 친구, 법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가정 내 자녀보육, 법적으로 인가된 가정 내 자녀보육 또는 자녀보육 기관이 포함된다.

주정부는 CCDF 운용체제하에서 부모가 자녀보육을 위하여 최소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가구의 소득, 가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아래의 가구나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다. CCDF의 규정은 이 비용이 자녀의 부모가 광범하고 다양한 자녀보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기에 적절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건강·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동 비용이 가구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해왔으나 실제로는 지역마다

다르고 거의 모든 주정부가 이 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주정부가 보육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금액도 주에 따라 다양한데 건강·인적서비스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주 내에 책정되고 있는 여러 보육 서비스 가격의 75%를 차지하는 시장 가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의 주들이 따르고 있지는 않다.

2000년의 경우 약 170만 명의 자녀가 CCDF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의 74% 정도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 보육서비스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감독을 받지 않는 보육서비스, 주로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보육을 받았다.

미국의 통계청(Census Bureau)의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자료에 의하면 1997년의 경우 자녀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가구 중 아주 적은 수의 가구만 보육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이나 기타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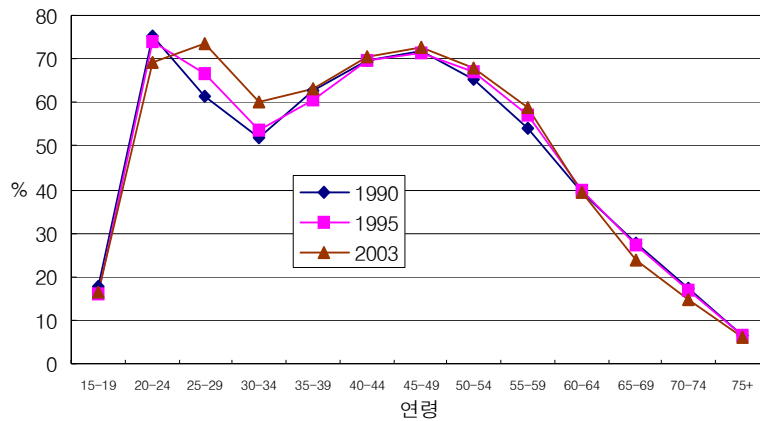
2. 일 본

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부도 4]), 20대 중반에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시기인 30대 초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후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전형적인 M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M자 부분의 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고 있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역U자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을 보면, 20~30대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소폭이나마 증가한 데 비해, 40대 이후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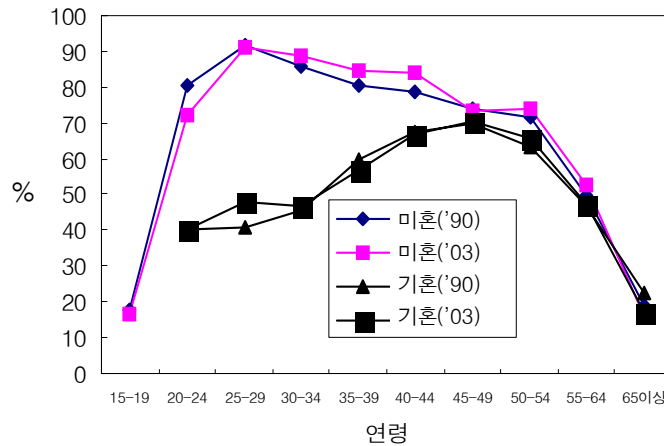
[부도 4] 일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혼인상태로 나누어 추이를 살펴본 것이 [부도 5]이다. 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대 중반 이후부터 30대에 걸쳐 혼인상태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미 [부도 4]의 M자형 노동공급곡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며, 출산 및 자녀보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미혼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약간 증가하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도 5] 혼인상태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2004), 『平成15年版 女性労働白書』, 財団法人21世紀職業財団

나.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아동수당

현재 일본에는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제도가 있다. 먼저 아동수당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자녀가 9살³¹⁾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둘째 아이까지는 월 5천엔,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이다.

당해연도의 수입이 아동수당제도가 지정하고 있는 한도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1년 동안은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정지된다.

31) 2004년까지는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6살까지였으나, 2004년 법률 개정으로 9살(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여기서 소득액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공제후의 소득액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후생연금에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있다³²⁾. 소득 한도금액은 <부표 1>과 같다.

<부표 1> 소득한도액

부양친족 수	국민연금가입자	후생연금가입자
0	301	460
1	339	498
2	377	536
3	415	574
4	453	612
5	491	650

자료 : <http://www.town.miyota.nagano.jp/fukusi/jidout02.htm>

아동부양수당은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모자 세대 등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급요건을 보면

- ① 부모가 혼인을 해소한 아동
- ② 아버지가 사망한 아동
- ③ 아버지가 정부가 정한 장애 상태에 있는 아동
- ④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동

32)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자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동일한 소득한도액이었음을 밝혀둔다. 본문에 예는 나가노 현 미yota 시의 소득한도액이다.

- ⑤ 아버지로부터 1년 이상 유기(遺棄)된 아동
- ⑥ 아버지가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 ⑦ 어머니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동
- ⑧ 아버지, 어머니가 불명확한 아동(고아 등)

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동경도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대상 아동이 1인인 경우 전액은 월 4만 1,880엔이며, 일부지급은 9,880~4만 1,870엔이다. 대상 아동이 2명일 경우 첫 번째 아동의 지급액에서 5천엔을 가산하며(전액일 경우 4만 6,880엔), 대상 아동 3인 이후는 3천엔씩을 가산한다.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지적장애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월 5만 900엔과 3만 3,900엔의 두 종류가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 ① 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 ② 대상 아동의 장애 정도가 수당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③ 대상 아동이나 부모 또는 양육자가 국외로 진출한 경우
- ④ 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자가 대상 아동을 돌보지 않을 경우
- ⑤ 대상 아동의 양육자가 대상 아동과 별거할 경우
- ⑥ 대상 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공적연금을 받게 될 경우
- ⑦ 기타

2) 육아휴가

1972년 ‘근로부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11조에서 육아휴업의 실시 및 기타 육아에 필요한 편의를 사업주가 제공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법률상에서 ‘육아휴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업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과할 뿐이었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한 남녀 근로자에게 자녀가 1살이 될 때까지 휴업 내지는 단시간 근무의 권리가 있다고 육아휴업의 권리를 보장한 것은 1991년에 성립된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육아휴업법)이 제정되고부터이다. 동법은 1992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상용근로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육아휴업급부에는 육아휴업기간중에 지급되는 ‘육아휴업기본급부금’과 육아휴업 후 직장에 복귀한 경우에 지급되는 ‘육아휴업자 직장복귀 급부금’ 2종류가 있다.

급부금의 지급요건을 보면 1)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업을 취득한 일반 피보험자일 것, 2) 육아휴업 개시일 전 2년간 임금지불 기준일수가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3) 각 지급단위기간³³⁾에 육아휴업에 의한 휴업일이 20일 이상일 것, 4) 각 지급단위기간에 휴업 개시시와 비교하여 80% 미만의 임금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등이다.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먼저 ‘육아휴업기본급부금’의 경우 각 지급단위 기간별로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임금 월액의 30% 상당액이 지급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급단위기간중의 임금액이 임금 월액의 1) 50% 이하인 경우는 휴업개시시의 임금 월액의 30% 상당액을 지급하며, 2) 50% 초과 80% 미만인 경우는 임금액에 급부금을 더한 금액이 휴업개시시 임금 월액의 80% 상당액에

33) 휴업 개시일에서 익월 휴업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 1개월.

도달할 때까지 지급하며, 3) 80% 이상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³⁴⁾.

‘육아휴업자직장복귀급부금’의 경우 휴업개시시 월 임금액의 10%에 육아휴업기본급부금이 지급된 월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액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휴업 개시시의 월 임금액이 25만엔이었고, 육아휴업기본급부금이 10개월분 지급된 경우의 직장복귀급부금액은 25만엔이다(=25만엔 × 0.1 × 10).

육아휴가 사용실태를 보면, 1992년부터 1996년 동안의 경우 30세 미만의 기혼여성 16%, 30~34세 기혼여성의 19%만이 육아휴가를 사용했다. 나머지 기혼여성 중 46%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가를 쓰기보다는 완전히 직장을 그만두었고, 15%는 직장 분위기가 육아휴가를 쓰기 어려워 휴가를 쓰지 않았다. 1999년의 경우 기혼여성의 56.4%, 기혼남성의 0.42%만이 육아휴가를 사용했다. 당시 육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 동료나 고용주의 불승인이었다.

여성근로자가 육아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직장환경을 줄이기 위하여 2001년 11월에 육아휴가법이 부분적으로 개편되었다. 개편 내용은 고용주가 육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전 시간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로의 강등, 일시해고, 직급강등을 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004년 육아휴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유기계약 노동자)는 대상 외’로 하고 있는

34)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휴업개시 시점에서 월 임금액이 25만엔인 경우의 지급액은 ① 지급단위기간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25만엔 × 0.3= 7만 5천엔, ② 임금이 16만엔(50~80%) 지급되는 경우는 80%인 20만엔이 상한이므로 월 4만엔이 지급, ③ 임금이 20만엔 이상(80% 이상)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되지 않음.

데 2005년부터는 ‘육아휴업을 취득하더라도 고용이 계속되리라 예상되는 일정 범위³⁵⁾의 기간(期間) 고용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현재는 육아휴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자녀가 1살 이상이 되더라도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자녀가 병으로 인해 간호휴가가 필요한 경우, 현재는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는 ‘1년에 5일을 한도로, 질병이나 상처를 입은 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3. 영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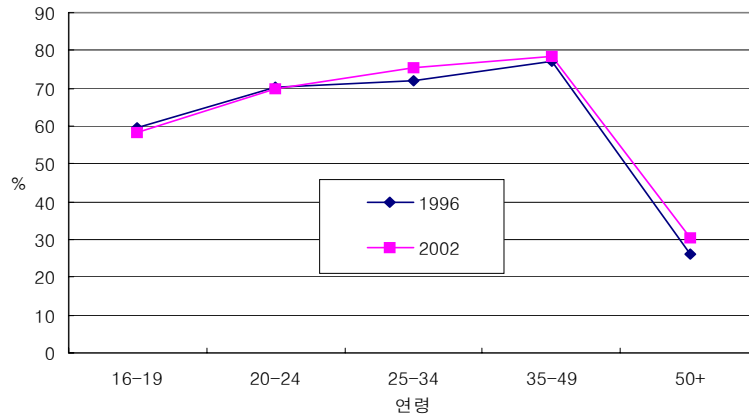
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영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패턴은 [부도 6]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하여 범위가 넓은 연령구간 설정으로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가능성이 드러나지 못하긴 했지만, 명확한 역 U자형을 띠고 있다.

영국은 유럽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2002년의 여성 취업률은 69%로 1992년의 65%보다 증가하였다. 부양자녀를 둔 어머니인 여성의 취업률은 1990년에 57%에서 2000년에는 65%로 증가하여 아버지 취업률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근로파트너가 있는 여성과 고학력의 여성에 집중되었다.

35) 여기서 일정 범위는 다음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① 동일 사업주에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 ② 자녀가 1살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자녀가 2살이 되는 날까지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이 신청 시점에서 이미 명백히 밝혀진 경우는 제외함)

[부도 6] 영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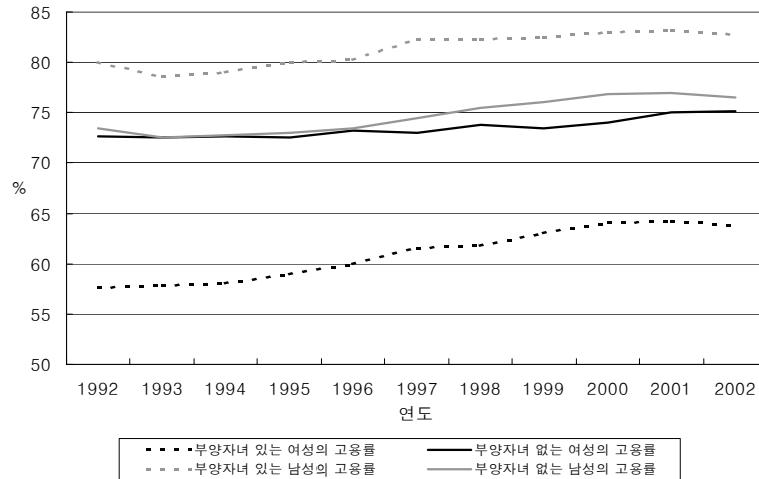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가장 큰 취업률의 증가는 보육할 자녀가 있는 여성층에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대별 취업률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여성의 취업률 패턴은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의 가장 높은 고점(약 80%) 후 30세에 가장 낮은 저점(약 40%)을 보인 다음, 40대 후반에 다소 낮은 고점(약 60%)을 그리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비하여 1998년의 여성 취업률 패턴은 고점이 약 70%, 저점이 50%로 파동을 치되, 1970년대 중반보다는 파동의 변화폭이 줄어들어 남성의 취업률 패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도 6]에서 보는 것처럼 부양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employment rate)은 부양할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보다 여전히 낮았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부양할 자녀가 있는 쪽의 고용률이 부양할 자녀가 없는 쪽의 고용률보다 높은 것과 반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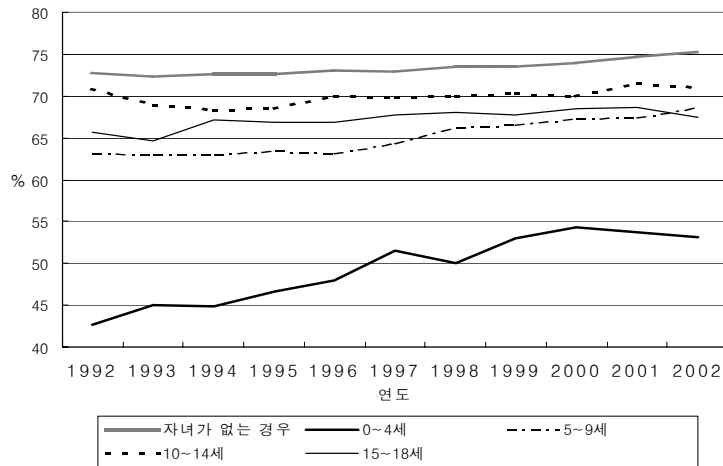
[부도 7] 영국의 자녀 유무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추이



자료: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Enhancing Choice and Support for Parents*, Jan. 2003.

자녀가 있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아버지들과 비교할 때 육아책임에 있어 불공평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무급의 노동에 2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들의 취업형태와 소득전망에 심각하면서 불공평한 효과를 가진다. 자녀의 연령별로 여성의 고용률을 나타낸 [부도 8]을 보면, 6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고용률은 6살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자녀가 없는 어머니들의 고용률보다 낮다. 그러한 격차는 1992년 이후 2002년까지 조금씩 감소되어 왔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6살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120만 명이 그들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8] 영국의 자녀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추이



자료: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Enhancing Choice and Support for Parents*, Jan

나. 자녀보육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 자녀세액공제

영국은 2003년 4월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로서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 (Working Tax Credit)를 도입하였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둔 가구를 지원하는 기존의 세제 및 급여금(benefit)제도의 몇 가지를 통합한 것으로서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를 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1년에 도입되어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약 500만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었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Children’s Tax Credit)도 이 자녀세액공제에 포함되었다. 부양할 자녀를 둔 약 118만 가구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던 자녀수당(Child Allowances)과 가족보험(Family Premium) 또는 소득 관련 구직

자수당(Income-Related Jobseeker's allowance, JSA)도 이 자녀 세액공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서 퇴직연금이나 무능력자급여금 또는 중증장애수당 또는 유족급여금 또는 질병치료수당을 받는 약 17만 가족에게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던 국민보험급여금(National Insurance Benefits)에 대한 자녀추가급여(Child Additions)는 2003년 4월을 기준으로 더 이상 새로이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자녀급여금(Child Benefit)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면서도 가계수입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원금으로 부양자녀를 둔 700만의 모든 가구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동 지원제도는 2003년의 세제개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주된 자녀 보육자에 대하여 소득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연령이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이민자가 아니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양할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은 등록된 자녀 보육자 또는 승인된 보육자로부터의 보육만 포함되고 혈육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가정 내의 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혈육관계에 있는 자가 자녀보육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세액공제의 공제액은 가구 요소(family element)로서 연간 545파운드(주당 약 10.45파운드)와 부양자녀 요소로서 자녀 1인당 1,445파운드(주당 약 27.75파운드)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가구 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녀의 출생 당해 연도에는 두 배로 증가될 수 있고, 부양자녀 요소의 금액은 자녀가 장애자로서 '장애자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받고 있을 경우 더욱 높아진다.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이 1만 3,230파운드 미만인 가구의 경우 세액공제액 구성에 의한 완전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1만 3,23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7%만큼 부양 자녀요소의 금액이 줄어드는데, 감소한도는 부양자녀 요소의 금액이 0파운드가 되어 가구 요소의 금액만 적용받게 될 때까지이다(이러한 경우는 자녀가 1명인 가구이면 연간 총소득이 1만 7,135파운드, 자녀가 2명이면 연간 총소득이 2만 1,040파운드임).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5만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6.7%만큼 가구 요소의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연간 총소득이 5만 8,134파운드인 가구의 경우 가구 요소의 금액이 0파운드가 되어 부양자녀 요소의 금액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 중에 90%가 자녀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게 되고, 50%가 부양자녀 요소와 가구 요소 모두에 걸친 공제액을 적용받으며, 40%가 가구 요소에만 해당되는 공제액을 적용받게 됨을 의미한다.

2) 근로세액공제

2003년 4월에 도입된 새로운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 중 자녀세액공제 외의 나머지 공제제도인 근로세액공제는 일부 근로자 부모의 일정한 자녀보육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자녀가 있거나 없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근로세액공제도 부분적으로 자녀보육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양할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주당 16시간 근로하는 134만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제도였던 기존의 ‘근로가구세액공제’ (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는 새로운 제도인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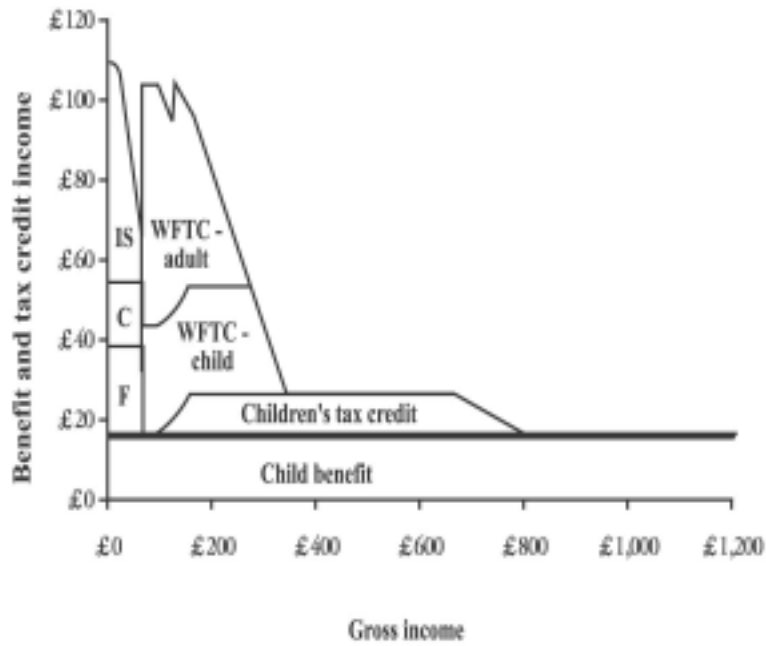
근로세액공제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자녀가 없는 미

혼인 자의 경우 연간 1,525파운드(주당 약 29.3파운드), 자녀가 있거나 없는 부부와 편부모는 연간 3,025파운드(주당 약 58.15파운드)의 공제액이 적용되고,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620파운드(주당 약 11.90파운드)의 보너스 금액이 적용된다.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가구 구성원 중 성인인 자 모두 근로자이거나 병환중, 또는 장애인인 가구는 승인된 자녀보육비용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지원액은 기존의 제도였던 WFTC하에서의 자녀보육세액공제에서와 같이 자녀보육비용 최대금액(16세 미만인 자녀가 1명인 경우 주당 135파운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주당 200파운드) 미만인 자녀보육비용의 70%이다. 근로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지만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는 주당 16시간 이상만 근로를 하면 된다. 그밖에 장애가 있는 자 또는 50세가 넘어 다시 근로를 시작한 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다.

연간소득이 5,060파운드 미만인 가구는 이상의 모든 근로세액공제 공제액을 구성별로 해당사항이 있다면 모두 적용 가능하나 연간소득이 5,060파운드를 넘는 가구의 경우는 그 초과금액의 1파운드당 37%씩 공제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미혼인 자는 연간소득 1만 857파운드,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나 편부모는 연간소득이 1만 3,230파운드, 전 시간 근로를 하면서 자녀가 있거나 없는 부부 또는 편부모는 연간소득이 1만 4,911파운드가 될 때 적용할 모든 공제액이 없게 된다. 자녀보육 비용으로 인정되는 연간 최대한도의 비용(1만 430파운드)을 지출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연간소득 3만 4,586파운드에 대하여 근로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가구지원제도의 구조는 [부도 9]와 [부도 10], [부도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도 9] 영국의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위한 기준
(2003년 4월 이전)의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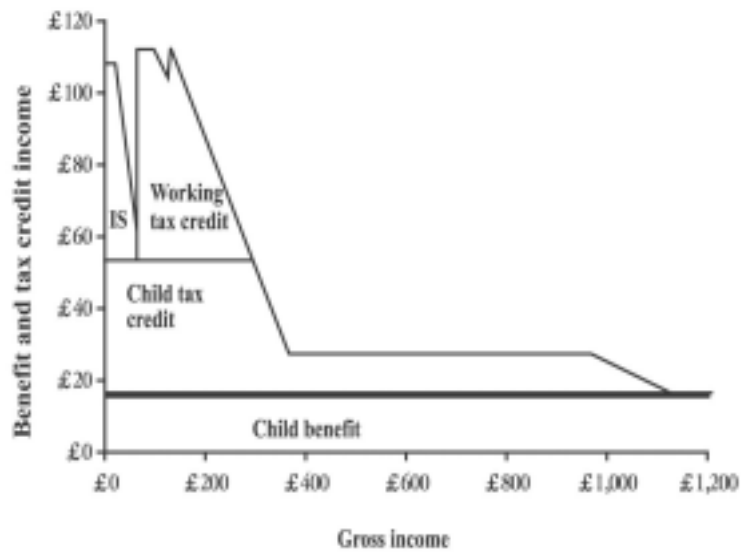
(단위: 주당 파운드)



- 주: 1. IS는 성인수당(adult allowance), F는 가족보험(Family Premium), C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 또는 소득관련 JSA에 있어서의 자녀수당(child allowance)임.
2. 위 그래프는 WFTC와 자녀세액공제(Children's Tax Credit)에 대하여 2003년 4월의 가정된 공제율을 사용함.
3. 위 그래프에 자녀보육세액공제(Childcare Tax Credit), 주택급여금(Housing Benefit), 지방세급여금(Council Tax Benefit)은 표시되지 않았으며, 자녀 출생 후 첫 해에 지급되는 추가지원은 무시됨.
-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he New Tax Credits*, Briefing Note No. 35, 2003, <http://www.ifs.org.uk/bns/bn35.pdf>.

[부도 10] 영국의 새 세액공제제도(2003년 4월 이후)하의 자녀 1명을 둔 가구를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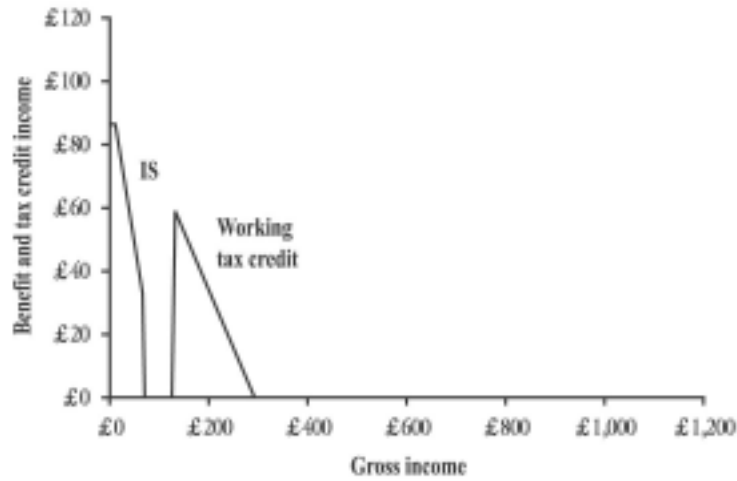
(단위: 주당 파운드)



- 주: 1.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는 연간 기준제도이나 위 그래프는 주간 제도로 취급하여 그려짐.
 2. 대상 가구가 최소임금(주당 67.20파운드)을 받으면서 16시간 근로하고 주당 126파운드에 해당하는 30시간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함.
 3. 위 그래프에 자녀보육세액공제, 주택급여금, 지방세급여금은 표시되지 않았으며, 자녀 출생 후 첫 해에 지급되는 추가지원은 무시됨.
-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he New Tax Credits*, Briefing Note No. 35, 2003, <http://www.ifs.org.uk/bns/bn35.pdf>.

[부도 11] 영국의 새 세액공제제도(2003년 4월 이후) 하의 자녀가 없는 부부를 위한 지원제도

(단위: 주당 파운드)



- 주: 1. 근로세액공제는 연간 기준제도이나 위 그래프는 주간 제도로 취급하여 그려짐.
- 2. 대상 가구가 최소임금(주당 67.20파운드)을 받으면서 16시간 근로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 자격을 잃고 30시간의 최소임금 근로로 근로세액공제(주당 126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함.
- 3. 위 그래프에 주택급여금, 지방세급여금은 표시되지 않았음.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The New Tax Credits, Briefing Note No. 35, 2003, <http://www.ifs.org.uk/bns/bn35.pdf>.

다.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자녀급여금

‘자녀급여금’(Child Benefit)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여부나 보조금 또는 수당을 위한 자산조사와 관련이 없다. 자녀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16세 미만의 자녀, 전 시간 학업중인 16~18세의 자녀, 직업훈련원(Careers Service) 등에서 근로하거나 훈련중인 16세 또는 17세의 자녀가 포함된다.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자녀급여금액은 첫째 자

녀에 대하여 주당 16.50파운드, 그 다음 자녀 각각에 대하여 주당 11.05파운드이다.

2) 출산수당

영국은 출산여성이 ‘법정출산금’ (Statutory Maternity Pay, SMP)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근 근로경력과 소득기록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그 출산여성(임신여성 포함)에게 26주간에 걸친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을 지급한다. 이 출산수당은 사회보험 및 플러스구직센터(Jobcentre Plus Office)로부터 지급된다.

임신여성 또는 출산여성이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법정출산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재는 근로자가 아니나 최근 고용된 기록이 있거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근로와 관련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신여성 또는 출산여성은 출산을 한 날이 포함된 주 이전까지의 66주간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 66주 중 적어도 26주는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 하고, 66주 중 13주 동안의 평균주당소득이 적어도 30파운드는 되어야 한다. 출산수당의 주당 금액은 출산수당 표준금액 또는 출산여성의 평균주당소득의 90% 중 더 적은 금액이다.

3) 후견인수당

‘후견인수당’(Guardian’s Allowance)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를 돌보는 자, 즉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급여금이다.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한 경우의 자녀를 돌보는 자도 후견인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견인은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부모의 행방을 알지 못하거나 자녀의 부모가 이혼했거나(일정한 조건이 추가됨) 자녀의 생존한 나머지 부모가 최소한 2년 이상 수감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 병원에 억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후견인수당도 자녀급여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여부나 보조금 또는 수당을 위한 자산조사와 관계 없이 자격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 후견인수당의 금액은 주당 11.55파운드이나 후견인이 자녀에 대하여 무능력급여금(Incapacity Benefit) 같은 국민보험급여금(National Insurance Benefit)을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인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 후견인이 소득지원(Income Support)이나 소득 관련 구직자 수당,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있어도 추가로 그 위에 후견인수당을 받을 있다.

4) 출산휴가

영국에서 출산여성이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는 ‘보통출산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추가출산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가 있다. 보통출산휴가는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휴가로서 휴가기간은 26주이다. 동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주어진다. 추가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주 이전 14번째 주부터 시작하여 26주간의 지속적 고용을 유지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만 주어지는 것으로 휴가의 기간은 보통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출산여성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그들의 근로기간과 평균소득을 근거로 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고용주로부터 26주간에 걸친 법정출산금(SMP)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1) 출산예정일이 속한 주 이전 15번째 주까지 적어도 26주간 고용되어 근로를 지속하였으며, 2) 그 26주간의 고용기간 중 8주 동안의 평균 주간소득이 적어도 국민보험부담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에서의 저소득 기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출산급여금의 금액은 첫 6주 동안은 출산여성의 평균 주간소

득의 90%이고, 나머지 주에는 법정출산급여금 표준금액과 출산여성의 평균 주간소득의 90%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의 자격요건을 보면, 첫째,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어야 하고, 둘째, 자녀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이거나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남편 또는 동거인이며, 자녀의 출산예정일 이전 15번째 주까지 26주간 고용되어 근로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은 1주 또는 2주 중 선택 가능하며 이 기간에 포함된 날은 연속적이어야 한다. 휴가기간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또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선택한 날이나 주부터, 또는 출산예정일이 속한 주의 첫 날 이후의 선택한 날로부터 시작하되, 자녀의 실제 출생일로부터 56일 이내에 시작되어야만 한다. 다만 자녀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생될 경우 출산 예정일이 속한 주의 첫 날로부터 56일 이내에 휴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받게 된 휴가의 기간은 출생한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다.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출산휴가 기간 동안 법정출산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여성의 법정출산금 표준금액으로 적용된다. 단, 주간 평균소득이 국민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제한선(Lower Earnings Limit) 아래일 경우 법정출산금이 아니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지원(Income Support)을 받을 수 있다.

5) 육아휴가

영국은 출산휴가 외에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를 돌볼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인 부모가 육아휴가도 쓸 수 있다. 단, 육아휴가를 받기 위해서 부모는 현재 직장에서 최소한 1년간 지속적

으로 고용되어 근로해야 한다. 휴가기간은 자녀 1명당 총 13주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18주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인 부모는 육아휴가기간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것이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의 업무와 같은 조건의 유사한 다른 업무에 복귀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라. 기타 자녀보육 지원제도(탄력근무제)

2003년 4월 6일부터 6살 미만의 자녀,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인 부모는 탄력근무(Flexible Working)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러한 신청을 신중히 고려할 의무를 가진다. 단, 자녀의 부모는 탄력근무를 신청한 날까지 적어도 26주간 고용이 유지된 채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탄력근무를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탄력근무를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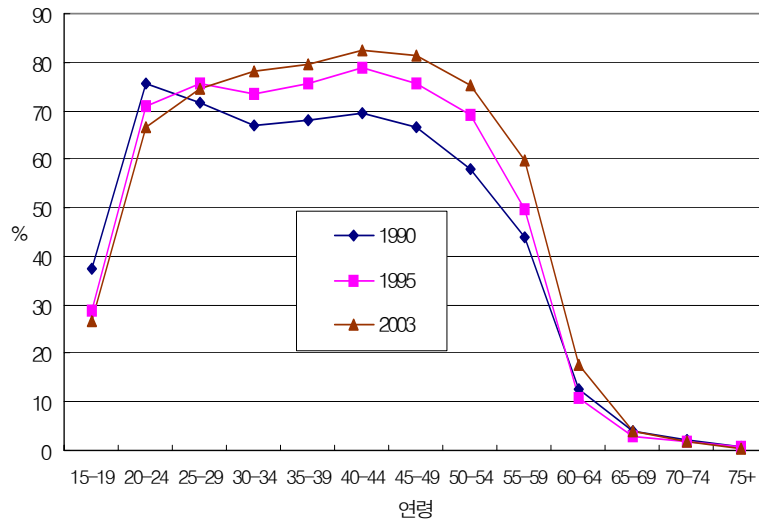
탄력근무의 권리는 근로자인 부모와 그 고용주 양자의 요구를 절충 및 합의하여 결정된다. 탄력근무의 내용은 연간근로시간, 압축근로시간, 근무시간자유선택, 재택근무, 근무분담, 근로시간 수의 변경, 근로시간대의 변경, 자율당번, 교대근무, 근무시차제 등을 포함한다.

4. 독 일

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2003년 독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하여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부도 12]), 1990년의 경우 약한 M자형 곡선을 보였으나 1995년 이후 20대에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역U자형 패턴을 띠고 있다.

[부도 12] 독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주: 1990년은 구 서독의 통계임.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나. 자녀보육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 소득세 자녀소득공제 및 보육비소득공제

소득세 자녀소득공제 금액은 3,534.05유로³⁶⁾이고 보육비소득공제 금액은 1,551.26유로이다. 보육비소득공제는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인 자녀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단, 자녀급여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자녀급여금(독일은 소득세 세액공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s) 대상인 소득이 모두 면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자녀소득공제와 보육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만 이상 두 가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6) 2004년 현재 1유로는 우리나라의 1,434원 정도임.

2) 소득세 교육소득공제

재학중이거나 직업기술 수련중인 자녀가 있는 부모는 소득세 교육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동 공제는 이미 소득세 자녀소득공제와 가능할 경우, 보육비 소득공제 또는 자녀급여금을 받고 있는 부모에 한한다. 공제금액은 숙소가 본인 가족의 집 이외의 곳인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연간 920.33유로, 숙소가 본인 가족의 집인 1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하여 연간 1,227.10유로, 숙소가 본인 가족의 집 이외의 곳인 1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하여 연 2,147.43유로이다.

공공기금에서 받는 교육지원보조금이 있다면 이 금액은 소득세 교육소득 공제금액과 상쇄된다. 또한 자녀 자신의 소득이 연간 1,840.65유로를 넘는 경우 부모의 교육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한다.

다.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자녀급여금

독일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급여금(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자녀급여금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세액공제의 형태로 지급된다. 자녀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의 나이는 자녀가 고용되지 않은 상태이면 21세까지이나 재학중이거나 직업기술 수련중일 경우는 27세까지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다. 단, 자녀가 18세가 넘어 연간 6,902.44유로가 넘는 자녀 자신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급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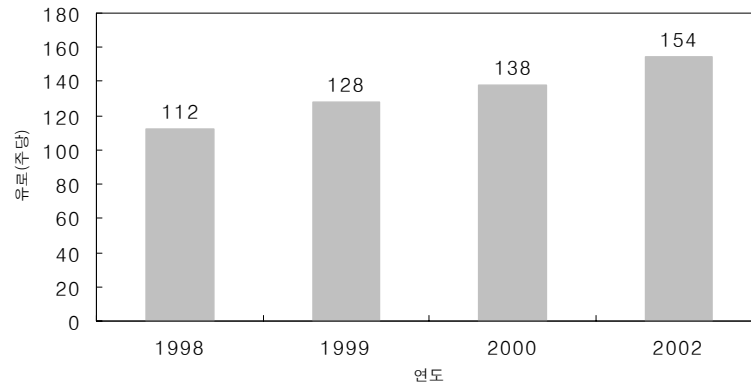
독일의 자녀급여금 제도는 2001년 초에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자녀를 두고 있는 전체 가구 중 자녀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이 1987년 85%에서 1999년 50%로 매우 낮아져 자녀급여금 제도의 수혜 가능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도개편

으로 자녀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의 연간 가구 소득 상한선이 자녀를 둔 일반 가구에 대하여 1만 6,470유로(+9.5%), 자녀를 둔 편부모에 대하여 1만 3,498유로(+11.4%)로 높아졌다. 단, 이 상한선은 자녀가 첫 6개월을 지낸 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자녀의 첫 6개월에 대한 상한선은 일반 부모의 가구에 대하여 5만 2,130유로, 편부모 가구에 대하여 3만 8,350유로로 자녀의 첫 6개월 이후 때보다 높다. 그리고 일반 부모의 가구와 편부모 가구 각각 추가로 생긴 자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자녀급여금의 금액도 2,454유로(+14%)로 높아졌다. 이 금액은 2003년에 다시 3,139유로로 높아졌다.

자녀급여금액은 2004년 현재 자녀가 1명에서 3명까지의 경우 1인당 154유로,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79유로이다. 이 금액은 주마다 다를 수 있어서 생활비가 낮은 주에서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연방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자녀급여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자녀 1명 및 2명에 대한 자녀수당 금액은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도 13]).

한편 자녀급여금은 부모 중 자녀를 돌보는 쪽에 지급된다. 자녀가 기혼인 부모 또는 동거중인 커플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그들은 그들 중 누가 자녀급여금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도 13] 독일의 자녀수당 금액 추이(자녀 1명 및 2명)



자료: Germany,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Annual Economic Report for 2004*, 2004

2) 자녀보육을 위한 휴가제도

독일의 출산휴가제도는 1952년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한 ‘모성보호법’(Maternity Protection Act)에 근거하고 있으며 독일의 여성은 동 법에 근거하여 14주의 기간 동안 고용의 지속이 보장되는 유급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인 14주의 기간 중 8주는 출산 후로 잡아야 하고, 조산이나 쌍생아 출산시는 12주를 출산 후로 잡아야 한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가입된 여성이나 사회보험에 가입된 남성의 부인 또는 딸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 동안 법정 건강기관에 의하여 출산급여금이 지급된다. 단, 출산 전 10주와 4주째 사이까지 12주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출산급여금 금액은 출산여성의 평균 순소득 전액이다. 이 출산급여금은 과세되지도 않고 사회보장분담금과도 관련이 없다. 출산급여금의 최고한도는 하루 13유로이다. 출산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출산여성에게는 77유로가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으로 지급된다.

여성의 출산휴가 외에 자녀를 둔 부모에게 따로 육아휴가(Parental Leave)가 주어진다. 휴가기간은 총 3년이다. 육아휴가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이며 여성의 출산휴가에 이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가 제도는 아버지의 저조한 육아휴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에 자녀급여금 제도와 함께 개편이 단행되었다. 이 개편으로 육아휴가를 자녀의 부모가 되는 여성과 남성이 3번까지 교대로 쓸 수 있었던 것이 부모 모두가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부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고용된 직장이나 현재 직장 고용주의 동의하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주당 19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주당 15~30시간으로 정의되는 시간제 근로자인 부모도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직원수가 1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에 국한된다. 고용주는 불가피한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한 근로자의 육아휴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로써 부모는 이전 근로시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은 전체 기업의 13% 또는 자영업과 공무원을 제외한 사업장의 75%에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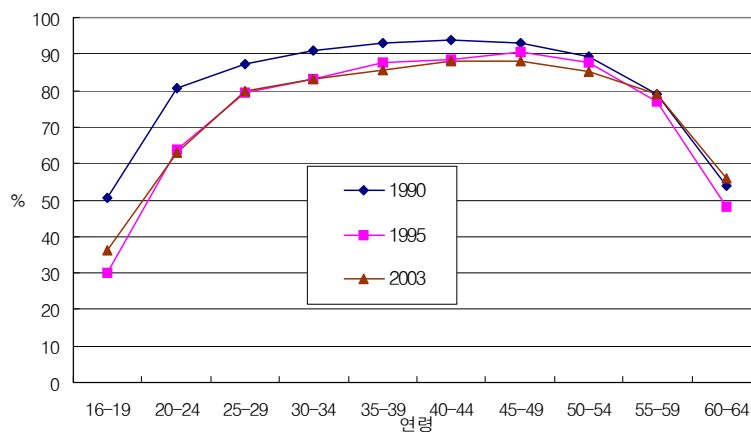
그리고 아픈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쓸 수 있는 휴가도 있다. 근로자인 부모는 12세 미만의 병환중인 자녀에 대하여 진단서를 구비하여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한 1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총소득의 70%(순소득에 대하여는 최대 90%)에 해당하는 질병급여금(Sickness Benefit)이 지급된다. 편부모의 경우에는 최대 50일까지 자녀 1인당 근로일 기준으로 20일 동안 지급된다.

5. 스웨덴

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스웨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부도 14]), 20대와 30대, 40대 초반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후반이 되어도 20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1990년 이후, 특히 2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 및 자녀양육 시기인 20대 후반 및 30대에 걸쳐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큰 노동시장 퇴출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스웨덴의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기에 좋은 여건이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부도 14] 스웨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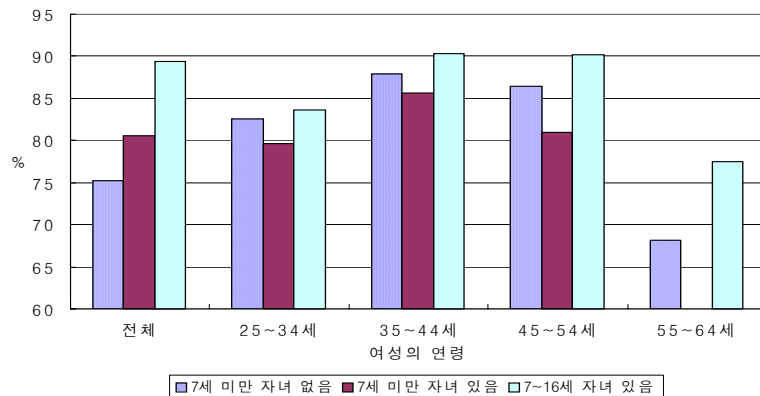


자료 : ILO, <http://laborsta.ilo.org>.

한편 스웨덴에서 자녀의 유무 및 연령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도 15]), 여성 전체적으로는 7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여성,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7~16세의 자녀가 있는 여성 순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즉, 자녀가 있되, 자녀가 집중적인 보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령의 자녀인 경우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 집중적인 보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며,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가장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25~34세, 35~44세, 45~54세 모두 7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집단의 여성보다 제일 낮았다. 이상 세 집단 중에서도 특히 출산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25~34세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았다³⁷⁾. 이상과 같은 특징은 어린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도 15] 스웨덴의 자녀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2002년)



자료: Statistics Sweden,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04.

37) 55~64세 연령층은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어 제외하였음.

나.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출산육아현금급여

‘출산육아현금급여’(Parental Cash Benefit for the Birth of a Child)은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한 자녀 1인당 총 480일(2002년 전에 출생한 자녀는 450일)에 대하여 주어진다. 480일 중 첫 390일의 출산육아현금급여는 부모의 소득손실과 관련된 것이며 그 최저금액은 1일 120SEK³⁸이다(200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360일에 최저금액이 1일 60SEK).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모두 1일 60SEK가 지급된다.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경우 부모 각각은 출산육아현금급여가 지급되는 총 일수의 1/2씩에 대하여 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출산육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소득의 100%, 75%, 50%, 25%(이상 2002년 적용), 12.5%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동 급여금의 보상수준은 1998년 1월 1일 이래로 질병현금급여(Sickness Cash Benefit)의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의 80%였으며, 2002년의 경우 최고금액이 월 1만 9천SEK 미만이었다.

2002년 기준으로 출산육아현금급여 수령 현황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수가 지속적으로 동 급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금 수령자 수 50만 6천명 중 여성이 58%, 남성이 42%이다.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급여금 수령자인 여성의 37%와 남성의 56%가 35세 이상이었으며, 4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급여금을 받은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았는데 이는 나이가

38) SEK는 Swedish Krona로 2004년 현재 1SEK는 우리나라의 156원 정도임.

많은 남성일수록 젊은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 급여금을 받는 일수의 추이를 살펴보면([부도 16] 참조),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은 일수 동안 급여금을 받는다. 2002년의 경우 전체 동 급여금이 지급된 총 일수 중 여성이 84%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1991년 전후에 여성의 급여금 지급일수가 많은데 이는 이때 태어난 자녀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급여금 지급일수는 1992년에 최고점을 이룬 후 출산율의 하락과 함께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부도 16] 스웨덴의 출산육아현금급여금 수령일수의 추이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출산육아현금급여금의 2002년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총 급여금액 141억SEK 중 여성에게 지급된 것이 82%, 남성에게 지급된 것이 18%이다(<부표 2> 참조).

<부표 2> 스웨덴의 출산육아현금급여금 지급 현황(2002년)

(단위: 명, 일, SEK)

연령	수령자 수		평균 수령일		연간 평균수령금액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	1,649	53	165	55	20,926	9,044
20~24	18,797	3,386	158	38	40,343	14,744
25~29	63,556	24,860	134	31	46,714	13,765
30~34	102,460	63,837	112	29	43,253	13,155
35~39	76,545	67,372	91	27	34,355	12,074
40~44	26,226	32,712	69	26	23,606	11,205
45~49	5,528	12,875	44	26	12,523	10,344
50~54	504	3,904	41	28	9,823	10,983
55~	22	1,457	50	33	11,393	11,853
합계	295,287	210,456	109	28	39,002	12,381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2)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은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근로를 잠시 중단하고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는 12세 미만이다. 단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는 16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동 급여금은 자녀 1인당 연간 60일 동안 지급되며, 일정한 조건하에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일을 쉬고 집에 머무는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다.

장애인인 자녀(기능적장애인을 위한 지원및서비스법(Act on Support and Service)의 대상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16~21세(경우에 따라 21세 이상)가 될 때까지 동 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나이가 15세 이하면서 장애인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1인당 연간 10일의 접촉일(contact days)을 가질 수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6~11세의 모든 자녀는 부모의 학교나 청소년 레크리에이션센터에의 방문 목적으로 연간 1일의 접촉일을 할당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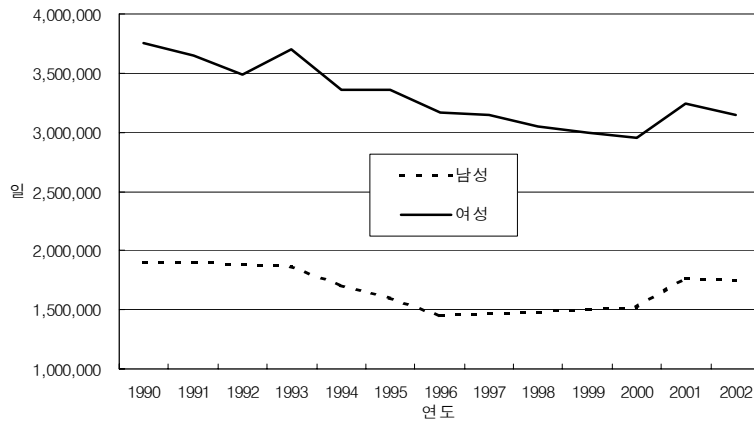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도 출산육아현금급여금과 마찬가지로 지급 수준이 다양하다. 1997년의 지급수준은 질병현금급여금의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의 75%였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 80%로 유지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 수령 현황을 보면, 총 69만 2천명이 동 급여금을 신청했는데(접촉일수 제외) 이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로, 출산육아현금급여금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 수령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는 출산육아현금급여금의 경우와 유사해서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남성이 여성보다 수령자수가 많았다.

2002년도의 부모의 취학전 교육기관 또는 학교 방문을 위한 접촉일수를 살펴보면, 총 접촉일수는 11만 1천 일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 중 약 30%가 남성에 해당하며, 접촉일이 가장 많은 달은 1월과 6월 및 7월이다.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을 받는 일수의 추이를 살펴보면([부도 17] 참조), 2002년의 경우 전체 일수(접촉일수 제외) 중 여성이 사용한 일수가 64%이다. 남성의 일수는 1991년 이후 몇 년간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00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태어난 어린이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육아현금급여금의 수령일수가 감소하다가 최근 1998년 정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에 동 급여금의 수령일수가 감소한 것은 간호가 필요한 어린 자녀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도 17] 스웨덴의 일시적육아현금급여 수령일수의 추이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일시적육아현금급여의 2002년 지급현황은 <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지급된 총급여액 32억SEK 중 여성에게 지급된 것이 60%, 남성에게 지급된 것이 40%이다.

<부표 3> 스웨덴의 일시적육아현금급여 지급 현황(2002년)

(단위: 명, 일, SEK)

연령	수령자 수		평균 수령일		연간 평균수령금액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	53	15	7	5	2,766	2,828
20~24	5,678	2,302	10	8	4,830	5,017
25~29	39,936	21,383	9	7	5,199	5,261
30~34	104,656	67,886	9	7	5,155	4,971
35~39	132,748	93,302	8	6	4,746	4,494
40~44	79,299	58,580	7	5	4,167	4,052
45~49	31,746	28,790	6	5	3,639	3,637
50~54	7,630	9,928	5	5	3,136	3,491
55~59	2,972	2,924	3	5	2,047	3,355
60~	1,297	680	3	4	1,795	2,804
합계	406,015	285,790	8	6	4,638	4,441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3) 임신부현금급여금

임산부현금급여금(Pregnancy Cash Benefit)은 일을 지속할 수 없어서 휴식을 취하게 된 임산부에게 지급된다. 동 제도는 1980년에 신체적으로 무리한 업무를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이후 작업환경에 의한 또는 임산부에게 있을 위험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여성에게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사회보험국(Social Insurance Office)은 고용주가 임산부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체적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만 임신부현금급여금을 지급한다. 임신부현금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마지막 임신 2개월 기간 중 최대 50일 동안 동 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1월 1일 이래로 보상수준은 질병현금급여금의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의 80%로 유지되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 임신부현금급여금의 최대금액은 월 1만 9천SEK 미만이었다.

이상과 같은 임신부현금급여금은 2002년의 경우 2만 2,545명의 여성에게 3억 7,500만SEK가 지급되었다. 연령별 임신부현금급여금의 수령자수와 평균수령일 및 연간평균수령액은 <부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표 4> 스웨덴의 임신부현금급여금 지급 현황(2002년)

(단위: 명, 일, SEK)

연령	수령자 수	평균 수령일	연간 평균금액
~19	41	41	12,809
20~24	2,826	39	15,331
25~29	8,481	39	16,484
30~34	7,502	38	17,188
35~39	3,133	38	16,961
40~44	537	39	16,942
45~49	25	31	14,800
합계	22,545	38	16,642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4) 자녀수당

자녀수당(Child Allowance)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되었다. 동 수당은 ‘기초자녀수당’, ‘확대자녀수당’, ‘대가족지원금’으로 구성된다.

모든 부모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하여 자녀가 16세가 되는 해의 1/4분기까지 기초자녀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후 이어서 자녀가 의무교육기관이나 그와 동등한 교육기관에 다니는 동안에는 확대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초자녀수당 또는 확대자녀수당 또는 3세 이상 자녀를 위한 학습보조금을 받는 부모는 대가족지원금도 받는다. 모든 자녀수당은 비과세이다.

자녀수당은 2001년 1월 1일에 자녀 1인당 월 850SEK에서 950SEK로 인상되었다. 대가족지원금은 세 번째 자녀에 대하여 월 254SEK, 네 번째 자녀에 대하여 월 760SEK, 다섯 번째 자녀와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월 950SEK이다. 2002년의 경우 자녀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약 210억 SEK였다. 자녀수별 자녀수당은 <부표 5>와 같다.

<부표 5> 스웨덴의 자녀수당

(단위: SEK)

	자녀수당 월액	대가족지원금	합계	연간 합계
자녀 1명	950	-	950	11,400
자녀 2명	1,900	-	1,900	22,800
자녀 3명	2,850	254	3,104	37,248
자녀 4명	3,800	1,014 ¹⁾	4,814	57,768
자녀 5명	4,750	1,964 ²⁾	6,714	80,568
5명 초과 모든 자녀	950	950	1,900	22,800

주: 1) 1,014 = 254 + 760

2) 1,964 = 1,014 + 950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5) 자녀간호수당

자녀간호수당(Care Allowance)은 부모가 아프거나 기능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가 최상의 조건에서 자라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자녀가 16세 미만이고 질병, 학습장애, 기타 다른 기능장애로 인해 최소한 6개월 동안 특별한 보호와 주의를 요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하여 자녀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질병 또는 기능장애가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질병 또는 기능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부모의 자녀간호수당에 대한 권리는 간호와 주위에 필요한 총액뿐 아니라 추가된 비용까지를 기초로 한다.

자녀간호수당은 전액지급률(full benefit rate)을 기준으로 100%, 75%, 50%, 25%가 지급될 수 있다. 전액 자녀간호수당은 연간 기초금액의 2.5배로 2002년에는 월 7,896SEK였다. 자녀간호수당은 과세가 되며 연금(pension)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단, 추가비용은 비과세이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보통의 전액급여금보다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상이 더 클 수 있다. 1998년 1월 1일부터 부모는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만 필요하더라도 자녀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자녀간호수당은 추가적인 비용의 규모에 따른 기초금액의 36% 또는 62.5%이다.

2002년의 경우 자녀간호수당으로 약 총 19억SEK가 지급되었으며, 이 중 91%가 여성에게 지급된 것이고 남성에게는 겨우 9%가 지급되었다. 동년 기준으로 연령별 자녀간호수당 수령현황을 보면 <부표 6>과 같다.

<부표 6> 스웨덴의 자녀간호수당(2003년)

(단위: 명, SEK)

연령	수령자수(부모)		월 평균금액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4	168	2	4,932	3,948
25~29	1,408	67	4,632	4,773
30~34	5,421	340	4,606	4,060
35~39	9,305	919	4,550	3,918
40~44	7,010	988	4,589	3,874
45~49	3,734	681	4,568	3,789
50~54	1,100	302	4,661	4,204
55~	211	151	4,675	4,152
합계	28,357	3,450	4,584	3,946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6) 어린이연금

어린이연금(Child Pension)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가 사망한 어린이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17세가 될 때까지 동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수급자가 학생이면서 확대자녀수당 또는 학자금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20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로부터 지급되는 어린이연금은 사망한 부모 각자에 대하여 최소한 연간기초금액의 25%가 지급되는데, 2002년의 경우 월 790SEK이었다.

추가연금제도에 의하여 자녀는 사망한 부모 각각의 추가연금(ATP)의 30%를 지급받는다. 만일 자녀에게 형제가 있으면 부모의 추가연금의 20%가 각 형제에게 추가된다. 총 합계액은 자녀간에 동일하게 배분된다.

자녀 1인에 대한 총 어린이연금(기초연금과 추가연금)은 항상 최소한 사망한 부모 각각의 연간기초금액의 40%여야 한다. 이 금액

은 2002년의 경우 월 1,200SEK이다.

2002년에 총 약 9억 8천만SEK가 어린이연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중 48%가 여자인 자녀에게, 52%가 남자인 자녀에게 지급되었다. 2002년에 지급된 어린이연금의 수령자수와 월평균금액을 자녀 연령별로 보면 다음 <부표 7>과 같다.

<부표 7> 스웨덴의 어린이연금(2003년)

(단위: 명, SEK)

연령	수령자수		월 평균금액	
	여자	남자	여자	남자
0~4	372	391	2,512	2,462
5~9	1,984	2,028	2,576	2,531
10~14	5,112	5,476	2,663	2,660
15~19	6,714	7,273	2,746	2,752
합계	14,182	15,168	2,686	2,682

자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Social Insurance in Sweden 2003*, 2003.

7) 생계보조금

생계보조금(Maintenance Support)은 1997년 2월 1일에 도입된 자녀양육을 위한 제도로써 함께 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부모를 지원하고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합리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보조금은 과거 제도였던 생계유지비 선지급제도와 입양자녀를 위한 특별수당을 대체한 것이다. 동 보조금은 이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는 이혼을 하였어도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생계유지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혼한 부모 중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한 쪽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생계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합의나 법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위한 수준이 결정될 때는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전반적인 재정수단이 고려된다.

다음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 생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진 한 쪽 부모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② 생계유지비가 월 1,173SEK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보조금이 보조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 ③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④ 한 쪽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가 고아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⑤ 자녀가 독신부모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

생계보조금의 최고액은 자녀 1인당 1,173SEK이다. 연장가능한 생계보조금은 확대자녀수당 또는 학자금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지면서 학업을 계속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며, 그 기간은 자녀가 20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이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한 쪽 부모는 차후에 나머지 한 쪽 부모에게 지불된 생계보조금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부분적으로라도 갚아야 한다. 상환 수준은 해당 부모의 최근 소득세신고서상 소득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그 비율은 또한 부모의 자녀수도 기준으로 한다.

만일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재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일시적 문제의 경우는 부채가 발생하며 이후 반드시 이 부채를 사회보장당국에 상환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한 쪽 부모가 지불의무를 거절하는 때에도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8) 부성출산휴가

부성출산휴가(Paternernity Leave)는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을 지켜 보고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과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자녀 1인당 10일간 일시적육아현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 일시적육아현금급여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부성출산휴가는 자녀가 태어난 지 또는 입양으로 보호가 시작된 지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998년 1월 1일부터 보상수준은 질병현금급여의 자격요건이 되는 소득의 80%로 유지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부성출산휴가로 지급된 일시적육아현금급여의 총액은 5억 2천만SEK이고 이 중 200만SEK가 여성에게 지급되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부성출산휴가를 받은 아버지 수의 추이를 보면 출산자녀가 있는 전체 아버지 중 부성출산휴가를 받은 아버지의 비율이 86%로 정점을 이룬 1990년 이후 출산율의 감소로 부성출산휴가를 받은 아버지의 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1999년부터 약하게 증가해오고 있다. 2002년에 부성출산휴가를 받은 아버지의 비율은 7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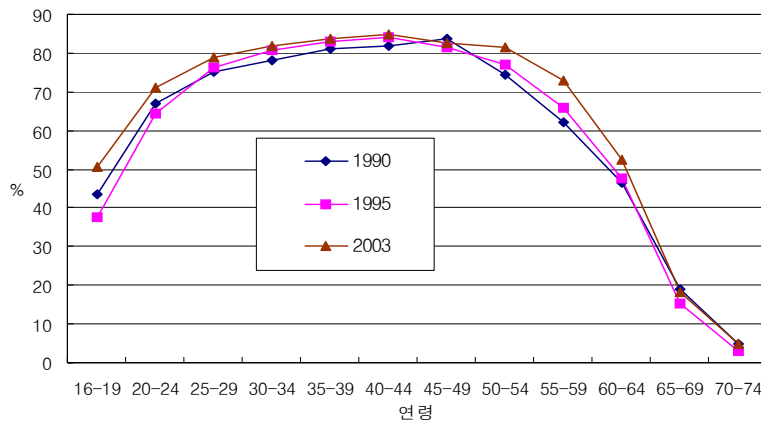
6. 노르웨이

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1990년 이후 노르웨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하여 노르웨이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40대 전반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다 40대 후반이 되면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후반이 되어도 20대 전반과 비슷한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패턴이 스웨덴과 흡사하다. 그러나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하락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노르웨이는 40대 중반까지는 미약하나마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르웨�훁도 자녀의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부도 18] 노르웨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나. 자녀보육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 부양가족 소득공제(Tax Allowance for Dependants)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는 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부양자는 소득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금액은 2000년의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1,820NOK³⁹⁾이다.

39) NOK는 Norwegian Krone로 2004년 현재 1NOK는 우리나라의 174원 정도임.

2) 양육비용 소득공제(Tax Allowance for Child-care Expenses)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양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용으로서의 증빙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양육비용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자녀가 1명일 경우 2만 5천NOK,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만NOK이다. 이 한도는 부부 또는 동거인(공동으로 자녀를 둔 경우)에 대하여는 부부 공동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동 소득공제는 배우자간 또는 동거인간 상호 동위가 특별히 없는 한, 소득이 더 높은 부모에게 적용된다.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특별히 더 많은 보호나 관심을 요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12세가 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인 가구는 과세대상계급 1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 1인이거나 부양자가 미혼인 가구는 과세대상계급 2로 분류되는데, 2000년 기준으로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금액은 과세대상계급 1은 2만 7,700NOK, 과세대상계급 2는 5만 5,400NOK이다.

다.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자녀급여금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자녀급여금(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자녀급여금 지급기간은 자녀가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녀가 18세가 되기 직전의 달까지이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게 되면 자녀급여금의 지급은 중단된다.

원칙적으로 노르웨이에서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녀는 자녀급여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노르웨이인의 자녀는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자녀급여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급여금은 자녀가 새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지급되므로 부모는 따로 자녀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자녀가 출생한지 6개월이 지나서 하거나 부모가 현재 부양하고 있는 자녀 외에 추가적으로 부양할 자녀가 생긴 경우에는 자녀급여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급여금은 부모 중 어머니 쪽으로 지급된다.

자녀급여금 금액은 국회에 의하여 결정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첫째 및 두 번째 자녀와 세 번째 및 그 이상의 자녀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Finnmark 및 North Troms의 몇 개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특별보충급여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1~3세의 어린 자녀에 대하여는 ‘어린자녀보충급여금(young child supplement)’이 지급된다. 0~3세의 자녀를 둔 미혼부양자는 현재 부양하고 있거나 이진급여금(Transitional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의 자녀 외에 또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자녀급여금에 해당하는 ‘추가적어린자녀보충급여금’(additional young child supplement)을 받을 수 있다. 이 추가급여는 자녀가 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녀가 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된다. 이상 여러 가지 자녀급여금의 금액은 <부표 8>에 정리하였다.

<부표 8> 노르웨이의 자녀급여금(2000년)

(단위: NOK)

일반 자녀급여금	월 금액	연간 금액
첫째 및 둘째 자녀	829	9,948
셋째 및 넷째 이상의 자녀	912	10,944
보충 자녀급여금		
Finnmark 및 North Troms 거주 자녀	316	8,792
어린자녀보충급여금(1~3세)	657	7,884
추가적어린자녀보충급여금(0~3세)	657	7,884

자료: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Handbook Q-0867E, The Right of Parents of Small Children in Norway, 2000.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혼부양자는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 외에 또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자녀급여에 해당하는 ‘추가적 자녀급여(additional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즉, 1명의 자녀를 부양해도 자녀급여 금액은 자녀 2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단, 미혼부양자가 결혼 또는 동거를 하거나 최근 18개월 중 최소 12개월간 같은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면 추가적자녀급여에 대한 자격은 정지된다.

2) 유아현금급여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유아현금급여제도는 현금급여법(Cash Benefit Act)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금급여의 신청은 아이의 첫 돌에서 세 번째 생일이 도래하는 달까지 하여야 한다. 부모가 100% 육아휴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유아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시간계정제도(time account scheme)⁴⁰⁾를 이용하는 부모는 육아휴가급여와 유아현금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유아를 입양한 부모는 유아가 첫 돌을 지낸 경우에는 육아휴가급여 기간에 해당하는, 입양 후 39주가 지난 후부터 입양유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일시육아보조금(lump sum grant)을 지급받는 부모는 자녀가 첫 돌이 될 때까지 유아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입양으로 일시육아보조금을 받는 부모는 입양아가 첫돌이 지났다면 입양 후 39주가 지난 다음달부터 유아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유아현금급여는 자녀수에 따라 지급되며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주정부 보조금을 받는 보육원(day care center)에 전일제 탁아를

40) 시간계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 출산(입양 포함)휴가급여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하지 않는다면 유아현금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만약 주당 33시간 미만 탁아를 한다면 탁아시간만큼 축소된 유아현금급여금을 받게 된다. 보육원에의 탁아시간에 따른 유아현금급여금 금액은 다음 <부표 9>와 같다.

<부표 9> 노르웨이의 유아현금급여금(2000년)

(단위: %, NOK)

보육원의 주당 탁아시간	현금급여금 비율	연간 금액
보육원 탁아 하지 않음	100	36,000
8시간 이하	80	28,800
9~16시간	60	21,600
17~24시간	40	14,400
25~32시간	20	7,200
33시간 이상	0	0

자료: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Handbook Q-0867E, The Right of Parents of Small Children in Norway, 2000.

유아현금급여금은 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며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아동보호법(Children's Act) 35조 두 번째 문단에 명시된 바대로 부모 양쪽이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아이에게 두 개의 가정을 제공키로 한다면 유아현금급여금을 부모 양쪽이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부모 양쪽이 유아현금급여금을 나누어 받기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한 쪽에게 유아현금급여금 전액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유아현금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가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유아현금급여금 수혜자격은 아이가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를 하게 되면 소멸된다. 유아현금급여금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양육되는 아이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3) 출산및입양급여금

출산및입양급여금(Parental and Adoption Benefits)은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에 근거한 급여금제도로써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의 육아휴가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할 자녀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가 기간 동안 일을 쉬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육아휴가금액은, 만약 완전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계정제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일 경우는 단축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또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경우 고용된 상태로 동 급여금 지급기간 개시 직전 10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연금대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경우도 고용된 상태로 동 급여금 지급기간 중 아버지 명목에 해당하는 기간 개시 직전 10개월 중 최소 6개월 동안 연금대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상 연금대상의 근로소득은 최소한 국민보험 연간기본금액의 50%(2000년 현재 2만 4,545 NOK)는 되어야 한다.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는 기간은 고용된 기간으로 간주된다.

출산및입양급여금의 지급기간은 출산및입양급여금이 임금의 80% 기준으로 지급되면 52주, 100% 기준으로 지급되면 42주이다. 입양의 경우는 각각 차례대로 49주, 39주이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또는 자녀를 입양하기 전에 동 급여금의 지급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에는 동 급여금의 지급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증가되는 기간은 임금의 80%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추가된 자녀 1인당 7주, 임금의 100%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추가된 자녀 1인당 5주이다.

출산및입양급여금 금액은 육아휴가를 받는 부모의 소득에 근거하

여 계산된다. 출산휴가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부모 소득의 한도는 2000년의 경우 29만 4,540NOK(국민보험 기본금액의 6배)이다.

국민보험법이 개정되어 어머니가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아버지도 자신의 권리에 근거하여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자녀출산 또는 입양 후 자녀 어머니의 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집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육아휴가를 쓸 수 없다. 그러나 자녀 어머니가 근로를 하거나 전일제 기준으로 공인된 교육을 받거나 전일제로 근로와 공인된 교육받는 것을 동시에 한다면 자녀 아버지는 자신이 획득한 권리와 선택한 급여금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는다. 그리고 자녀 어머니가 병환 또는 상해, 병원 입원에 의하여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가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의 어머니가 출산 또는 입양 후 시간제 근로를 한다면 아버지의 출산및입양급여금 금액은 어머니의 근로시간 감소에 비례해서 축소 지급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전일근무 또는 전일근무의 75% 이상에 해당되는 일을 한다면 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한 임금 대비 기준비율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출산및입양급여금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출산및입양급여금은 간호급여금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전 4주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직전 4주간 소득이 연간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25% 이상 편차가 발생하면 출산및입양급여금은 직전 3년간 과세목적으로 신고된 소득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자녀의 어머니가 실업현금급여금을 받다가 출산및입양급여금으로 전환하게 될 때의 급여금 계산은 출산 직전 10개월 중 급여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의 6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및입양급여금 계산은 과세산정이 끝난, 최근 3년간의 연금산출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및입

양급여금 금액은 출산및입양급여금 지급기간 동안 연간 순소득의 65%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최대한도는 국민보험 기본금액의 6배 기준이 적용되며, 52주간의 출산및입양급여금의 최저금액은 29만 4,540NOK(국민보험 기본금액의 6배) 금액의 80% 수준이다. 간호급여금을 민영보험(voluntary insurance)에서 최대한도로 수혜를 받는 자영업자도 민영보험 가입이 출산 또는 입양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순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육아휴가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부모는 출산및입양급여금 기간을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규정에 의거해서 출산 3주전 휴가는 어머니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어머니가 이 기간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주간의 휴가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산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6주는 어머니가, 4주는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육아휴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때 근무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에 의거, 아버지나 어머니는 각자에게 부여된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용주가 동의하는 경우 그러한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급여금 지급기간인 42주 또는 52주의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가는 13주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을 부모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출산 전 12주부터 휴가를 쓸 수도 있고,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 부모가 만나질 또는 교대 격주 근무의 방식으로 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만 예외로 하면 입양시 휴가에도 동일한 방식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입양시 4주는 반드시 아버지가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은 어머니와 나누어서 사용이 불가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

우, 아버지에게는 4주간의 육아휴가가 할당된다. 만약 할당된 4주의 육아휴가 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어머니는 전일제 근로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근무해야만 한다. 부모가 육아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 근무환경법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우선해서 각자에게 할당된 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는 출산 후 6주가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양인 경우 아버지는 육아휴가기간 언제라도 할당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의 동의하에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휴가 기간을 몇 일간씩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 육아휴가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동의를 한 경우 아버지는 20주 동안 주당 1일씩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어머니가 잔여 4일(주당)을 육아휴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휴가를 시간계정 협약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없다.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4주간의 육아휴가는 육아휴가 기간의 마지막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육아휴가 기간 중 출산및입양급여금은 출산이나 입양 전의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된다. 이럴 경우 특정가정의 경우 소득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는 할당된 휴가를 압축해서 짧게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임금대비 출산및입양급여금 지급비율을 50%로 선택한 경우 아버지는 2주간의 육아휴가를 받음으로써 소득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전일 근무시간의 75%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아버지는 자신의 임금대비 출산및입양급여금 지급비율에 상당하는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부모들은 80%의 급여금을 받는 장기 육아휴가와 100%의 급여금을 받는 단기 육아휴가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가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육아휴가를 사용할 때 이런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몇 아버지는 할당된 육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를 어머니에게 이전시키는 경우도 있다.

육아휴가 급여금의 신청은 국민보험청(national insurance office)에 하여야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의 적용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아버지가 육아휴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반드시 직장에 복귀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육아휴가 기간 중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출산및입양급여금의 50% 이상을 초과해서 수혜받을 수 없다.

시간계정제도(국민보험법 14장, 근로환경법 3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서는 부모가 육아휴가와 근무시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간계정은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으면서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축소선택이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시간계정 기간은 부모가 근무시간과 육아휴가를 적절히 조합이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시간계정기간은 짧게는 12주부터 길게는 104주(2년)로 다양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계정제도하에서 총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근무시간과 육아휴가 시간의 조합이 가능한 기간의 선택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간계정기간중에 부모는 전일 근무시간의 50%, 60%, 75% 또는 90%의 시간은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휴가를 사용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종업원이 더 많은 근무시간을 택하면 육아휴가를 위한 시간계정기간은 더 길어진다. 전일 육아휴가를 줄이더라도 출산및입양급여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출산및입양급여금 수혜기간을 늘려서 소득의 상실 없이 근로시간과 육아시간을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시간계정제도는 출산및입양급여금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피고용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반일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실업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 시간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계정을 동시 사용하는 것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이 가능하다. 단, 부모 양쪽이 동시에 시간계정을 사용할 경우 출산및입양급여금 기간은 짧아진다.

시간계정에는 출산 전 마지막 3주와 출산 후 어머니에게 할당되는 처음 6주 및 아버지에게 할당되는 4주의 육아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52주를 선택하는 경우 시간계정제도에서는 39주를 사용할 수가 있고 42주를 선택하는 경우 29주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산한 신생아 자녀가 질환이 있거나 조숙아인 경우 출산 후 남아 있는 육아휴가급여금 기간은 자녀가 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경과가 연기된다. 이는 부모가 가능한한 집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육아보조금

출산및입양급여금 수혜 자격이 없는 여성은 일시금 형태의 육아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출산 또는 입양을 하는 모든 여성은 국민보험의 한 형태로 보조금 수혜를 받게 되며 보조금 금액은 3만 2,138NOK 이다. 보조금 금액은 국회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다.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쌍둥이 출산 또는 2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어머니가 육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어머니가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출산 또는 입양 후 병환이 있게 되면 아버지는 임금 대비 출산및입양급여금 지급비율이 80%이면 39주간 출산및입양금

여금을, 임금 대비 출산및입양급여금 지급비율이 100%이면 29주간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는 여성의 경우 급여금이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출산및입양급여금 대신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주정부학자금대출기금(State Educational Loan Fund)으로부터 출산보조금(maternity grant)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도 육아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출산을 집에서 하는 경우 부모는 1,765NOK의 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으며, 해외입양의 경우 부모는 2만NOK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5) 육아휴가

육아휴가(leave of absence)에 대한 권리는 근로환경법 3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부모들은 출산 및 입양급여금과 유사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몇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다.

출산및입양급여금 기간 외에 부모들은 자녀 각각에 대해 1년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시간계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추가적인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부모 양쪽에 개별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 중 한 쪽이 시간계정을 사용한다면 다른 한 쪽에서 1년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지게 되는 경우 각각의 자녀 1인당 2년간 총 3년 내에서 추가적으로 무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어머니가 직업이 없고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2년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육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아이가 1살이 되기 전까지는 육아휴가에 대한 권리를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육아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부모로서의 양육권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산및입양급여금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어머니의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가족과 가정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는 출산과 관련하여 2주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휴가는 출산 전 또는 후, 또는 산모와 아이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하는 날로부터 2주간 사용할 수 있으나 병원으로부터 퇴원한 날로부터 2주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만약에 부모가 동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권리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다. 2주간의 무급휴가는 입양한 아버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육아휴가에 대한 주요한 권리를 요약,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 1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출산 후 6주간의 산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아버지가 출산과 관련하여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국민보험제도에 의해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는 부모가 1년간 추가적인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출산 후 1년간의 휴가 외에 자녀 각자에 대해서 1년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입양을 한 부모는 아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3년간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6) 간호휴가

12세 미만의 부양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부모 각각은 연간 10일까지 유급으

로 간호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는 연간 15일까지 쓸 수 있다. 미혼인 부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간 20일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연간 30일까지 쓸 수 있다. 부모 중 한 쪽이 전적으로 자녀를 돌볼지라도 부모 양쪽이 허가된 자녀접근권리의 비율만큼 간호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다. 2000년 기준으로 간호휴가급여금은 부모의 연간소득이 29만 4,540NOK(국민보험 기본금액의 6배)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된다. 이 한도를 넘는 소득은 국민보험체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근로자인 부모는 자녀를 매일 돌보는 사람(다른 한 쪽 부모나 부모, 또는 보육교사)이 아픈 경우에도 상기한 경우와 같이 유급 간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일수는 자녀가 아픈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다.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사람은 연간 20일까지 간호휴가를 쓸 수 있다. 당해 근로자가 미혼일 경우는 연간 40일까지 가능하다. 또 병원에 장기입원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병원에 머무는 경우, 입원 8일째 되는 날부터 간호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가 퇴원 후에 지속적인 간호와 주의를 받아야 한다면 자녀의 퇴원 후에도 간호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치명적이거나 매우 심각한 상태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은 그러한 자녀를 위하여 병원이나 집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 경우 간호휴가를 쓸 수 있다. 정신지체인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가 18세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인 부모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교육과정을 듣기 위해 일을 쉴 경우 휴가 및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의 교육수당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라. 기타 자녀보육 지원제도(단축근무제)

단축근무(shorter working)의 권리는 근로환경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자녀의 부모 모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바람과 필요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축근무는 단축근무로 인하여 해당기업이 큰 지장을 받지 않아야만 가능하다. 근로환경법에 따르면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급 전액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단축근무 형태는 일일 근무 시간 단축, 주간 근로일수 단축, 일정기간 휴무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일정기간 휴무는 예를 들어 긴 방학기간과 관련되어 택할 수 있다.

단축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4주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 번에 2년까지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승인받은 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이전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단축근무를 하는 동안의 승인받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초과근무(overtime)가 아니라 잔업근로(extra work)로 간주된다. 그러나 잔업근로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는 자녀를 보육원에서 데려와야 하는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고정된 시간에 일을 중단해야 하는 때가 있다. 근로자는 그렇게 자녀의 보육에 영향을 주는 초과근로 또는 잔업근로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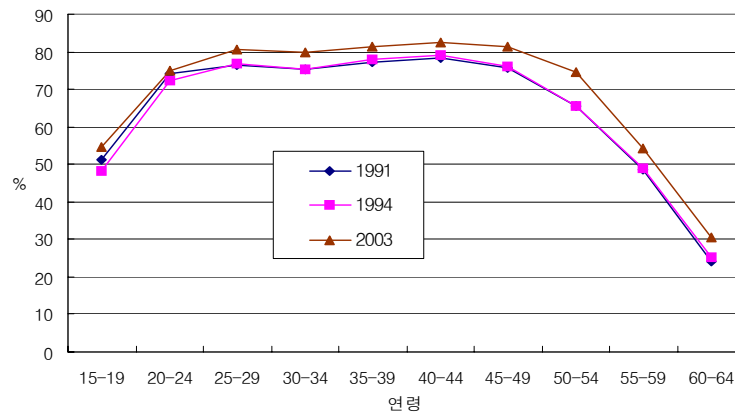
7. 캐나다

가.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1990년대 이후 캐나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하여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부도 19]), 20대에 급격히 상

승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 전반에 약간 감소했다가 상승한 후 다시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으로는 55~59세의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주요국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다른 주요국의 경우 55~59세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한 것과 비교된다.

[부도 19] 캐나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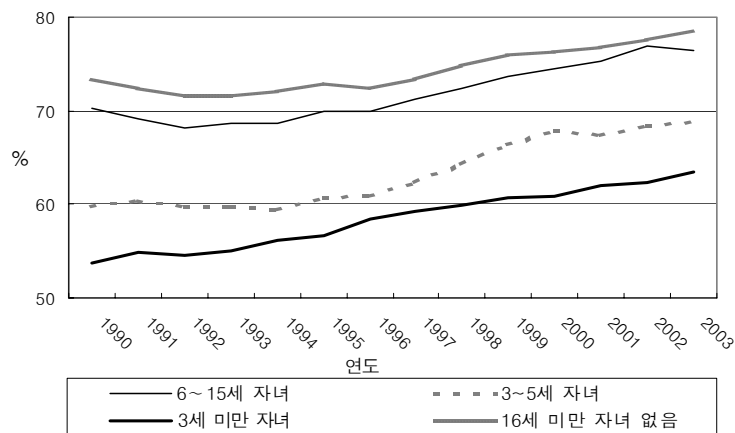


주: 연령구분이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비교가 가능한 연도인 1991년, 1994년, 2003년을 비교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자녀연령별 여성의 취업률([부도 20])을 통하여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취업률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여성, 6~15세 자녀를 둔 여성, 3~5세 자녀를 둔 여성,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순으로 높아 자녀의 연령이 어린 여성일수록 취업을 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 1990년부터 2003년 사이에 모든 자녀연령대의 여성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완

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자녀보육이 여성의 취업에 장벽이 되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부도 20] 캐나다의 자녀연령별 여성의 취업률 추이



자료: Statistics Canada, Women in Canada: Work chapter updates 2003, Mar. 2004.

나.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1)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캐나다는 1998년부터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을 통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는 가구의 순소득과 자녀의 수 및 연령에 근거하여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단위 비과세 급여금으로서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이전에 연방정부가 추진한 자녀양육지원제도의 변천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18년 자녀과세면제(Child Tax Exemption):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과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

그러나 소득세 부담이 없는 가구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음.

- 1945년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부양할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게 지급됨.
- 1973년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가족수당 금액이 기존의 가족수당 금액의 3배로 증가되고, 생활비용에 연동되며, 과세되는 것으로 바뀜.
- 1978년 환급가능자녀세액공제(Refundable Child Tax Credit): 가구소득별로 과세대상을 구분지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최대금액, 중산층 가구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감소된 금액, 고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액이 없도록 함.
- 1993년 자녀조세급여금(Child Tax Benefit): 환급가능 및 환급불가 자녀세액공제와 가족수당을 통합하여 자녀수와 가구소득수준에 근거한 월단위 급여금으로 전환함. 그리고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제공했는데 이는 후에 ‘근로소득지원(Working Income Supplement)’으로 개칭됨. 1993년에 연방정부가 근로소득지원을 포함한 자녀지원급여금에 지출한 비용은 총 51억달러임.
- 1998년 국가자녀급여금(National Child Benefit, NCB) 지원: 국가자녀급여금이 근로소득지원을 대체하면서 도입되어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한 부문으로서 모든 저소득 가구에 제공됨. 캐나다 정부는 국가자녀급여금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 제도 시행으로서 국가자녀급여금 지원에 연간 8억 5천만달러를 추가적으로 할당함. 이는 이미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으로 제공된 51억달러에 추가적으로 할당된 것임.

1998년 및 1999년, 2000년, 2003년의 정부예산과 2000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가자녀급여금 지원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기본급여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당하였다. 이 결과,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에 대한 정부의 총 비용은 2007년까지 매년 10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제도는 두 가지의 주요한 부분인,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기본급여와 국가자녀급여금의 추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가 있으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는 단순 월급여금의 형태로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기본급여와 국가자녀급여금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액은 가구 순소득과 자녀의 수 및 연령에 근거하여 정해진다(<부표 10> 참조). 2002년 7월과 2003년 7월 사이 동안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순소득이 2만 2,397달러 미만이면 4,682달러(2003년 7월과 2004년 7월 사이 동안은 5,055달러)에 해당하는 최고 급여금 수준을 받는다. 순소득이 2만 2,397~3만 2,960달러인 가구는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기본급여의 최고금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자녀급여금 추가급여는 동 소득구간 내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한다. 그리고 순소득이 3만 2,960~7만 9천달러인 가구는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기본급여만 받게 되고, 그 금액은 동 소득구간 내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부도 21] 참조).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제도하에서는 국가자녀급여 추가금액을 받는 모든 가구는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기본급여의 최고수준을 받는 셈이다.

2001년 7월과 2002년 6월 사이의 기간 동안 전체 자녀가 있는 가구의 82%인 약 580만 명의 자녀를 둔 320만 가구들이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기본급여를 받았다. 국가자녀급여금의 추가금액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에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외에 또 지급되는 추가지원이다. 동 기간 동안 전체 자녀가 있는 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의 자녀를 둔 150만 가구들이 국가자녀급여금을 받았다.

<부표 10> 캐나다 자녀조세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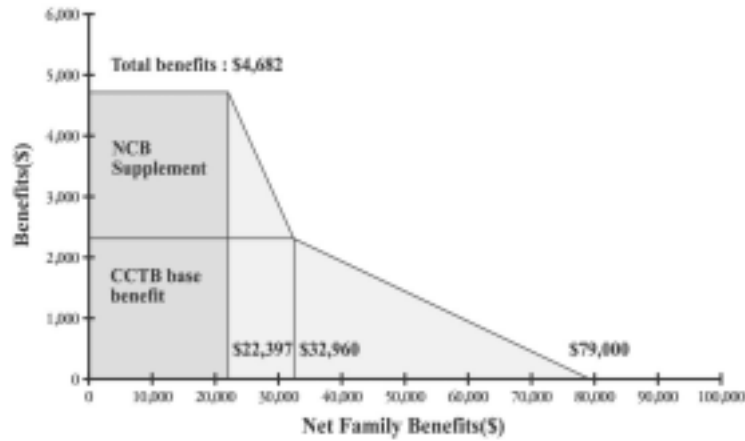
(단위: 달러, %)

	2002년 7월 ~2003년 7월	2003년 7월 ~2004년 7월	2004년 7월 ~2005년 7월
기본급여(CCTB)	1,151	1,169	1,208
자녀 3명 이상 보충액	80	82	84
7세 미만 자녀 보충액	228	232	239
가구순소득 제한선	32,960	33,487	35,000
기본급여 감액률			
• 자녀 1명	2.5	2.5	2
• 자녀 2명 이상	5	5	4
추가급여(NCB)			
• 첫 자녀	1,293	1,463	1,511
• 둘째 자녀	1,087	1,254	1,295
• 셋째 이상 자녀(각각)	1,009	1,176	1,215
가구순소득 제한선	22,397	21,529	22,615
추가급여 감액률			
• 자녀 1명	12.2	12.2	12.2
• 자녀 2명	22.5	22.7	22.7
• 자녀 3명 이상	32.1	32.6	32.5

자료: Canada Revenue Agency(<http://www.cra-arc.gc.ca>)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제도하에서 자녀를 둔 가구들은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기본급여와 국가자녀급여금의 추가급여로서의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1997년 7월 이전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최대급여 금액은 2,540달러였고, 근로소득 지원이 국가자녀급여금 제도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서 재구성된 1997년 7월에는 3,050달러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국가자녀급여금의 증가로 2003년 7월의 최대급여금액은 5,055달러로 추정된다([부도 22] 참조).

[부도 21] 2002년 7월~2003년 6월,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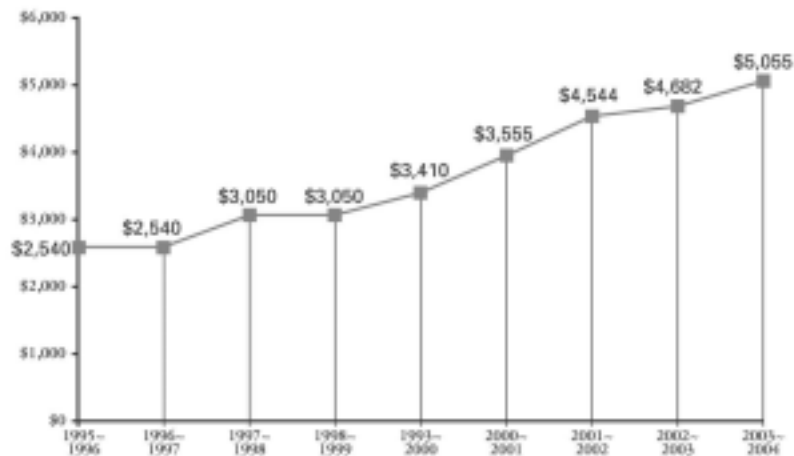
주: 위 그래프의 급여금에 자녀보육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7세 미만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추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동 추가급여는 1996~1997년에 자녀 1인당 213달러였고 2003~2004년에는 232달러로 증가함.
 자료: <http://www.nationalchildbenefit.ca>,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 Report: 2002, Jul. 2003.

국가자녀급여금제도는 각 가정들이 근로를 통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자 했던 제도 자체의 목적을 달성해나가고 있다. 캐나다 전 지역에서 국가자녀급여금제도를 통하여 최소임금을 받는 고용과 사회보험지원간의 차이를 늘려나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사회보험지원보다는 근로에 대한 유인을 더 크게 하고 있다.

국가자녀급여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7년에는 사회보험지원 대신 전시간근로의 최소임금을 받는 고용을 선택한, 자녀 2명을 둔 편부모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8%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1998년 국가자녀급여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에는 사회보험지원 대신 고용을 선택하면서 가처분소득이 2%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 상승한 것이다. 국가자녀급여금제도가 이러한 가처분소득 증가에 72% 기여했다.

[부도 22] 1995~1996년과 2003~2004년 사이 동안 2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연방정부 자녀급여금 최고수준의 추이

(단위: 2004년도 가치기준 달러)



주: 위 그래프의 급여금에 자녀보육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7세 미만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추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동 추가급여는 1996~1997년에 자녀 1인당 213달러였고 2003~2004년에는 232달러로 증가함.

자료: <http://www.nationalchildbenefit.ca>, The National Child Benefit Progress Report: 2002, Jul. 2003.

2) 자녀특별수당

자녀특별수당(Children's Special Allowance)은 지방 또는 준주(準州)의 자녀복지당국의 보호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캐나다관세및국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이 지급하는 수당이다.

동 수당의 지급금액은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기본급여금액과 국가자녀급여금의 추가금액을 합친, 캐나다자녀조세급여금의 최고금액을 반영한 금액이다. 지방 또는 준주의 관할당국은 자녀의 생계유지비로 자녀복지당국에 할당될 국가자녀급여금의 추가금액 증가를 승인하거나 추가금액을 보충할 선택권을 갖는다. 국가자녀급여금의 추가금액 증가액을 보충하는 관할지역에서 그 금액은 국가자녀

급여금의 목적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재투자기금에 포함된다. 2001~2002년의 경우 재투자기금 총액의 1.7%인 1,140만달러가 자녀 특별수당 보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모성출산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17주 동안 기본적으로는 무급인 모성출산휴가(Maternity Leave)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모성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전 52주 동안 또는 예전의 출산휴가 신청일로부터 현재까지 600시간 동안 근로를 했어야 함을 말한다. 휴가기간은 캐나다의 앨버타 주에서는 15주, 퀘벡 주 및 사스카체완 주(Saskatchewan)에서는 18주이다.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출산휴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로부터 16 또는 17주 전에도 시작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일로부터 17~18주 후에 끝날 수도 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출산휴가의 연장도 가능하다. 출산휴가가 끝나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여성근로자는 보통 이전과 같은 직책 및 업무로 돌아가게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임금과 기타대우가 이전의 업무에서와 같은 업무를 할당받게 된다.

연방정부법과 퀘벡주법의 관할을 받는 지역에서 임신여성이나 육아를 담당하는 자녀의 어머니인 근로자는 현재의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근로자 자신이나 그들의 태아 또는 자녀를 위협하게 할 수 있을 경우, 그들의 고용주에게 업무 변경이나 자리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여성근로자는 바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연방정부 관할하에서 고용주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휴가 신청의사를 이유로 그 여성근로자를 퇴사, 일시해고, 강등시킬 수 없고, 또한 여성근로자의 승진이나 훈련을 거부할 근거로 임신사실

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고용보험 출산및입양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급여금 지급기간은 최대 15주까지이며 이 중 출산 전은 8개월까지 가능하다. 어떤 고용주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출산및입양급여금과 여성근로자의 실제 월급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보충하는 실업급여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4) 육아휴가

육아휴가(Parental Leave)제도는 부모 중 한 쪽 또는 모두에게 그들의 새로 태어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녀의 어머니가 육아휴가를 쓸 경우는 보통 모성출산휴가에 바로 이어 써서 휴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아버지는 육아휴가를 받아 그들의 새로 태어난 자녀나 출산한 아내를 돌보기 위하여 일을 쉴 수 있다. 아버지의 육아휴가는 1990년대에 부성출산휴가를 대체한 것으로서 휴가기간이 긴 부성출산휴가로도 볼 수 있다.

캐나다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 부모는 12주에서 52주까지의 기본적으로는 무급인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캐나다의 어떤 지역에서는 부모 각각이 자격만 된다면 모두 육아휴가를 쓸 수 있으나 앨버타, 브런스윅(Brunswick), 유콘(Yukon), 그리고 연방정부의 관할지역과 같은 지역에서는 육아휴가 법정최고기간 한도 내에서 두 부모가 육아휴가를 나눠 써야 한다.

부모가 고용근로자일 경우 육아휴가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육아휴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휴가가 끝나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보통은 이전과 같은 직책 및 업무로 돌아가게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금과 기타대우가 이전의 업무에서와 같

은 업무를 할당받게 된다. 무급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 부모는 육아휴가 기간에 고용보험 육아휴가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육아휴가가 여러 면에서 강화되었다. 우선 육아휴가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10주에서 35주로 증가되어 모성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합친 총 유급휴가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육아휴가급여금의 자격요건이 되는 연간 근로시간도 기존의 7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육아휴가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35주 기간은 한 쪽 부모가 모두 채워도 되고, 양 부모가 기간을 나누어도 된다. 단, 양 부모의 교체가 있을 때는 일정한 휴지기가 요구된다. 급여금액은 주 413달러의 최고한도 내에서 고용보험에 등록된 평균소득의 55%이다. 그리고 제한된 수이긴 하지만 몇몇 근로자 부모는 고용보험 육아휴가급여금과 실제 월급과의 차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보충하는 실업급여금을 받는다.

고용보험적용조사(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Survey)와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후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가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에 고용보험법 개정 전이라면 육아휴가급여금을 받지 못했지만 법 개정 이후 받게 된 부모의 수가 월평균 4,900명(이 중 여성이 4,700명)이었다. 이들은 법 개정 이전에 근로시간이 연간 600~700시간이었던 사람들이다. 동 법의 시행으로 모성출산휴가 또는 육아휴가를 받은 출산여성의 비율이 2000년 54%에서 2001년 61%로 증가하였다. 2001년의 경우 출산 관련 급여금을 받지 못한 여성의 비율은 39%였는데 그 배경을 보면 23%는 근로하지 않은 경우이고,

12%는 육아휴가급여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이거나 자격요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5%는 자영업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모성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받는 여성의 경우 집에 머무는 기간은 2000년 6개월에서 2001년 10개월로 증가했다. 이는 동 휴가로 인한 급여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 여성이 2000년과 2001년 모두 집에 머무는 기간이 4개월인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2001년의 경우 모성출산휴가나 육아휴가로 급여금을 받은 여성의 대부분은 휴가기간이 9개월 이상이었지만 그 여성들의 4분의 1은 8개월 이내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실질적인 휴가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관련된 요인은 아버지들이 육아휴가를 받게 되는 것, 어머니인 여성의 직업이 임시적인 점, 적은 근로소득을 들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평균 육아휴가급여금을 받는 아버지의 수가 2002년 7,900명으로 2000년 1,600명의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유급 육아휴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아버지의 비율도 2000년 3%에서 2002년 10%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아버지가 육아휴가를 쓰는 경우의 대부분은 휴가기간이 몇 일 정도이고 몇 주 단위의 휴가기간은 거의 없다.

<국문요약>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원종학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안을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비용을 명시적으로 설명변수에 넣은 여성노동공급 함수를 추정하고, 추정결과 및 추정결과를 사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추정결과를 보면, 먼저 보육비용과 여성의 시장참여는 1) 자녀의 보육비용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노동공급시간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의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으며, 3) 전일제든 시간제든 노동시장 참여에 보육비용의 부담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전일제의 경우가 탄력성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용과 근로시간을 추정한 결과로부터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녀의 보육비용 부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여성의 노동참가에 관한 추정으로부터, 1)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탁아모와 어린이집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3~5세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여성은 탁아모를 어린이집보다 선호하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은 장시간의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나 보육형태

를 선호하며, 일하는 어머니를 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탁아모를 방과 후 보육형태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여성노동공급을 제고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실시한 결과, 1) 정부의 보육료 보조금 지급은 기혼여성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2) 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은 우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 기혼여성을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성의 노동공급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과, 3)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도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4)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보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탁아모 제도가 필요하며, 5) 기혼여성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탁아모를 고용하여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의 보육을 수행하는 탁아모 제도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재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 저렴하게 수행되고 있는 비공식적인 탁아모를 대체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의 전체적인 수준에 그다지 큰 효과를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he Government Policy for Women's Labor Supply and Childcare Costs

Kim, Hyunsook · Weon, Jonghak

We analyze the effects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supply decision and working hours. For this purpose, we estimate married women's labor supply function including child care costs using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and multi logit model based on control function approach, first and then simulate child care subsidy effects on their labor supply

The main results are ; 1) the child care costs has negative impacts on the labor participation and weekly working hours of married women, 2) the younger her children are, the bigger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elasticity of child care cost, 3) the child care costs has larger negative impact on full-time worker rather than part-time working mom, 4) especially, when her child's age is below 5, child care costs decrease labor participation rates and weekly working hours, substantially.

When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om and her demand for child care facilities, we find that 1)

working moms with younger than age 2 prefer nursery school and in-house nanny to kindergarten and private learning academy, 2) working moms who have children with age 3~5 prefer in-house nanny to nursery school, nursery school to kindergarten and private learning academy, 3) Even working moms who have children with younger schoolers (age 6~9) demand nanny and nursery school for after school program.

The simulation results of child care subsidy are ; 1) the government's child care subsidy stimulates married women's labor supply, 2) the primary target of government policy should be low income married women with a child younger than age 5, 3) after school program is important for maintaining married women's job, 4) working moms prefer nursery and private nanny who provide child care with long hours and relatively cheap price. 5) the government training program for professional nanny will help married women's job participation, but it may replace widespread private nanny system, mainly served by grandparents and relatives living together, which provides very cheap and long child care.

<著者略歴>

金賢淑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元鍾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히토츠바시(一橋)대학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4-04

여성인력공급과 조세·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김현숙·원종학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팩시밀리: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 지 사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의 2004

ISBN 89-8101-778-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9,000원